발 간 등 록 번 호
12-1071800-000020-01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최효미·박은정·엄지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 간 등 록 번 호
12-1071800-000020-01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저 자 최효미, 박은정, 엄지원

연 구 진
연구책임자 **최 효 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박 은 정**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엄 지 원** (육아정책연구소 전문연구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발간등록번호 12-1071800-000020-01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발행일 2020년 5월
발행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소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정부서울청사 8층)
전화 02) 2100-1221
팩스 02) 2100-1208
홈페이지 https://www.betterfuture.go.kr
인쇄처 (주)승림디엔씨 02) 2271-2581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본 보고서는 육아정책연구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 둡니다.

제 출 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5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목차

요약 1

Ⅰ. 서론 2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3
2. 연구내용 및 방법 ····· 25

Ⅱ. 연구의 배경 29
1. 선행연구 개관 ····· 31
2. 다자녀 가구 현황 ····· 43
3.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 49
4. 소결 ····· 52

Ⅲ.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관 55
1.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및 정책방향 ····· 57
2.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 60
3.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 92
4. 소결 ····· 99

Ⅳ. 해외 다자녀 가구 지원 사례 103
1. 프랑스 ····· 106
2. 독일 ····· 118
3. 스웨덴 ····· 126
4. 싱가포르 ····· 133
5. 일본 ····· 138
6. 소결 ····· 144

Ⅴ. 다자녀 가구의 정책적 요구 151
1. 심층면담 개요 ····· 153
2. 다자녀 가구의 장점 및 양육 시 어려움 ····· 155
3.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의견 ····· 158
4.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165
5. 소결 ····· 166

Ⅵ. 정책 제언 171
1. 기본 방향 ····· 171
2. 다자녀 아동수당(가칭) 지원 ····· 173
3. 세제 지원 확대 ····· 177
4. 지원 대상 연령 조정 필요 사업 ····· 179
5. 지원 대상 기준 하향 조정 필요 사업 ····· 182
6. 다자녀 가구 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187
7.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다양화 ····· 189
8.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190
9. 다자녀 카드 전달체계 개선 ····· 191
10.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및 법적 기반 마련 ····· 192

참고문헌 195

표 목차

〈표 Ⅰ-2- 1〉 심층면담 표집 목표 ····· 26
〈표 Ⅱ-1- 1〉 선행연구 다자녀 가구 정의 기준 및 근거 ····· 32
〈표 Ⅱ-2- 1〉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 43
〈표 Ⅱ-2- 2〉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중 ····· 43
〈표 Ⅱ-2- 3〉 지역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중(2018년 기준) ····· 44
〈표 Ⅱ-2- 4〉 OECD 주요국의 출생순위별 출생아(2017년 기준 자료) ····· 45
〈표 Ⅱ-2- 5〉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현황(2018년 기준) ····· 47
〈표 Ⅱ-2- 6〉 2세대 및 3세대 가구의 가구원수별 비중(2015-2018) ····· 47
〈표 Ⅱ-2- 7〉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와 자녀수(2016-2018) ····· 48
〈표 Ⅱ-3- 1〉 자녀수별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2019년 기준) ····· 49
〈표 Ⅱ-3- 2〉 자녀수별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비중(2019년 기준) ····· 50
〈표 Ⅱ-3- 3〉 자녀수별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2019년 기준) ····· 51
〈표 Ⅲ-2- 1〉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 61
〈표 Ⅲ-2- 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액 ····· 65
〈표 Ⅲ-2- 3〉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제도 세부요건 ····· 68
〈표 Ⅲ-2- 4〉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69
〈표 Ⅲ-2- 5〉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 70
〈표 Ⅲ-2- 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72
〈표 Ⅲ-2- 7〉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 72
〈표 Ⅲ-2- 8〉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 73
〈표 Ⅲ-2- 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73
〈표 Ⅲ-2-10〉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 74
〈표 Ⅲ-2-11〉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경감 ····· 75
〈표 Ⅲ-2-12〉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 76
〈표 Ⅲ-2-13〉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 77
〈표 Ⅲ-2-14〉 다자녀가구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78
〈표 Ⅲ-2-15〉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 78
〈표 Ⅲ-2-16〉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지원내용 ····· 80
〈표 Ⅲ-2-17〉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할인 내용 ····· 82

〈표 Ⅲ-2-18〉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월별 요금 감면금액 ····· 84
〈표 Ⅲ-2-19〉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다자녀 행복 서비스) ····· 86
〈표 Ⅲ-2-20〉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내용 ····· 87
〈표 Ⅲ-2-21〉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 ····· 89
〈표 Ⅲ-2-2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 ····· 90
〈표 Ⅲ-2-2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다자녀) ···· 91
〈표 Ⅲ-3- 1〉 지자체별 저출산 지원 정책 지원 분야(2019년 기준) ····· 92
〈표 Ⅲ-3- 2〉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지원 분야(2019년 기준) ····· 94
〈표 Ⅲ-3- 3〉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지원 방법(2019년 기준) ····· 95
〈표 Ⅲ-3- 4〉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지원 내용 및 점증 지원 여부 (2019년 기준) ····· 96
〈표 Ⅲ-3- 5〉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점증 지원 여부 및 자녀수 (2019년 기준) ····· 97
〈표 Ⅲ-3- 6〉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예산(2019년) ····· 98
〈표 Ⅲ-4- 1〉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 100
〈표 Ⅳ-1- 1〉 프랑스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8~2017년) ····· 108
〈표 Ⅳ-1- 2〉 프랑스의 출산·입양 지원금 연소득 상한선 기준 ····· 111
〈표 Ⅳ-1- 3〉 프랑스의 기초수당 연소득 상한선 기준 ····· 112
〈표 Ⅳ-1- 4〉 프랑스의 가족수당 연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 구간 ····· 112
〈표 Ⅳ-1- 5〉 프랑스의 가족수당 월 지급액 ····· 113
〈표 Ⅳ-1- 6〉 프랑스의 가족보조금 연소득 기준 ····· 113
〈표 Ⅳ-1- 7〉 프랑스의 자녀교육 분담 수당 자녀 연령 기준 및 지급 기간 ····· 115
〈표 Ⅳ-1- 8〉 프랑스의 어머니 모성 휴가 기간 ····· 115
〈표 Ⅳ-1- 9〉 프랑스의 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 연소득 기준 ····· 117
〈표 Ⅳ-1-10〉 프랑스의 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 월 급여액 ····· 117
〈표 Ⅳ-2- 1〉 독일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0~2017년) ····· 120
〈표 Ⅳ-3- 1〉 스웨덴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0~2017년) ····· 127
〈표 Ⅳ-3- 2〉 스웨덴의 아동수당 및 다자녀 아동수당 월 지급액 ····· 130
〈표 Ⅳ-3- 3〉 스웨덴의 출생순위별 보육료 부담금(2017년 기준) ····· 133
〈표 Ⅳ-4- 1〉 싱가포르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0~2018년) ····· 135
〈표 Ⅳ-4- 2〉 싱가포르의 아동 발달 계좌 정부 지원액 ····· 137
〈표 Ⅳ-5- 1〉 일본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0~2017년) ····· 140

〈표 Ⅳ-5- 2〉 일본의 아동수당 월 지급액 ····· 143
〈표 Ⅳ-6- 1〉 5개국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 146
〈표 Ⅴ-1- 1〉 다자녀 가구 심층면담 면담자 특성 ····· 153
〈표 Ⅴ-1- 2〉 자녀수 및 맞벌이 여부별 심층면담 대상자 ····· 154
〈표 Ⅴ-1- 3〉 자녀별 출생순위별 연령 ····· 154
〈표 Ⅴ-5- 1〉 다자녀 가구 심층면담 내용 요약 ····· 166
〈표 Ⅵ-1- 1〉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방안 ····· 172
〈표 Ⅵ-2- 1〉 다자녀 아동수당 지원 대상아 수: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 176
〈표 Ⅵ-3- 1〉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 정책 조정(안) ····· 179
〈표 Ⅵ-4- 1〉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연령 조정(안) ····· 181
〈표 Ⅵ-5- 1〉 다자녀 가구 지원 자녀수 조정(안) ····· 186
〈표 Ⅵ-6- 1〉 다자녀 가구 일가정 양립 지원 ····· 189

그림 목차

[그림 Ⅱ-2-1] OECD 주요국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2017년 기준 자료) ····· 45
[그림 Ⅱ-3-1] 자녀수별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 (2019년 기준) ····· 51
[그림 Ⅲ-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대 자녀수에 따른 대책방향 ····· 58
[그림 Ⅲ-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패러다임 전환 ····· 59
[그림 Ⅳ-1-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7년) ····· 107
[그림 Ⅳ-2-1] 독일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7년) ····· 119
[그림 Ⅳ-3-1]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7년) ····· 127
[그림 Ⅳ-3-2] 스웨덴 어머니의 둘째아~넷째아 출산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추이(1961-2012년) ····· 128
[그림 Ⅳ-4-1]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5~2018년) ····· 134
[그림 Ⅳ-5-1]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5~2017년) ····· 139
[그림 Ⅵ-2-1] 다자녀 아동수당(가칭) 지원 체계 ····· 175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만혼화 현상과 더불어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다자녀 가구의 형성을 막는 주요 원인이 됨.

□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즉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자녀수가 적은 가구에 비해 누려야 할 경제적 지원을 더 적게 받고 있어, 아동 권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육아 가구의 상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의 설계가 요구됨.

○ 또한, 다자녀 가구의 특성에 맞춘 지원 방안의 설계 및 지원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육아 부담의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나. 연구 내용 및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다자녀(혹은 유자녀) 가구 지원 정책 분석, OECD 주요 국가의 다자녀 가구 현황 및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지원 정책을 실시 중인 해외 사례 분석,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관한 정책 수혜자들의 요구 등을 살펴보아,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 및 현행 지원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2. 연구의 배경

가. 선행연구 개관

□ 다수의 선행연구가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하고 있음.

○ 통상 인구대체율 2.1을 근거로 하며,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

수와 기대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 등이 2명 내외인 것을 감안하였고, 정부 다자녀 정책 수혜대상이 보통 세 자녀 이상인 점 등이 근거임. 다자녀 기준 자체를 쟁점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 일부 연구에서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할 필요성(박경자·전혜정·김은영 외, 2008)을 제안하거나,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기존의 세 자녀 이상의 지원정책을 장기적으로 두 자녀, 한자녀 가정으로 점차 확대하여 한 자녀 및 무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 바 있음(정은희·최유석, 2013).

□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연구에서 다자녀가구는 대체로 특유의 행복감과 자긍심을 가지며, 본인 의사에 반해 출산한 경우는 불행감이 보고됨. 장점은 자녀들이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며 부부간의 잦은 대화와 친밀감이 상승된다는 점이며, 단점은 부부갈등의 심화, 경제적 어려움, 양육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부담감, 개별 자녀에게 온전한 케어를 해주기 어려운 점 등이 꼽힘.

○ 연구결과 부모의 연령이 낮고,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으며, 부부가 자녀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았으며, 한 자녀 및 무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녀교육비 부담 완화방안, 취업여성을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과 아버지 대상 정책의 활성화가 요청됨.

□ 다자녀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에서 다자녀 가구는 지출부담의 완화 내지는 경감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았고, 이러한 정책이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며, 다자녀 지원 정책의 혜택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우며, 혜택의 폭도 제한적이라고 인식함.

○ 개별정책별로는 출산장려금이 다자녀 출산에의 긍정적 요인이 되나, 지역별 편차로 인한 불만이 있어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전기요금 감액 및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정책은 다자녀가구의 지출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며, 다자녀 출산이 주택면적과 주택소비 모두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녀수에 따른 주택지원 정책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종합하면 다자녀는 대체로 인구대체율 등을 준거로 '세 자녀 이상'으로 정의되고 있음. 다자녀가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정책지원 대상으로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에 대한 재논의와 정립이 필요함. 또한 정책대상자인 다자녀가구는 양육관련 지출비용의 경감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다자녀가구 지

원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아 지속적인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제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나. 다자녀 가구 현황

□ 국내 자료 중 다자녀 가구의 비중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으로, 다자녀 가구 현황은 주로 연도별 출생아 중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음.

□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둘째아 이상의 출생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포착됨.

○ 둘째아 이상 비중은 2010년 49.3%(231,663명)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45.3% (147,910명)에 그침.

○ OECD의 다른 국가들과 출생순위별 출생아 현황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쉽게 알 수 있음(OECD Family Database, 2020. 1. 28 인출).

다.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은 총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자녀가 1명일 때 86만6천원이지만, 3명 이상일 때는 184만9천원까지 상승함.

○ 반면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자녀가 1명인 경우 평균 83만3천원이지만,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2만3천원으로 감소함.

○ 결국 자녀가 많을수록 가구의 총 양육비용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아동당 지출하는 양육비용은 감소하여, 아동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한명인 가구에 비해 충분한 양육지원을 받지 못함을 엿볼 수 있음.

3.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관

가.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및 정책방향

□ 법령상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의 일반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함(법제처·찾기

쉬운생활법령정보, 2019. 6. 15: 4).

□ 2015년 말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 기대 자녀수에 따른 대책방향을 각 자녀 수 별로 무자녀가구는 한 자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 한자녀 가구는 두 자녀를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두 자녀 가정은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가 우대 받는 사회가 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첫째아 수를 늘리고, 취약한 둘째아 출산 장애요인을 해소,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높은 셋째아 출산 확산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설정함.

□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계속 떨어져 출산장려 위주의 저출산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짐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17. 12)', '저출산 핵심과제('18. 7)'를 발표하며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출산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하였음.

나.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 현행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현황을 의료비 지원, 육아용품비용지원, 주거안정지원, 세액공제, 교육비 지원, 보육 및 돌봄서비스 지원, 공공요금할인, 교통 관련 할인, 기타지원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대상이 2020년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또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다자녀(2명 이상)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주거 안정 지원 사업으로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지원, 금리우대 지원 등이 있으며, 주거안정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모두 3자녀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자녀 가구에 국한한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지원하는 기본공제[1]가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자동차의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운영

1) 본고에서 기본공제라 함은 소득세법 제59조의 2 자녀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의미함(이하 동일).

중임. 단,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는 일몰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음.

○ 더불어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등이 확대됨.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적용(2자녀 이상) 등의 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됨.

○ 공공요금 할인 제도가 다자녀 가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지원 제도로,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이 있음.

○ 이 외에 교통 관련 지원으로 공공건물의 주차요금 할인과 코레일 공사의 기차요금 할인 지원 등이 있음. 2019년에는 기차요금 할인이 KTX는 3자녀에서 2자녀 기준으로 완화됐으며, SRT는 3자녀 기준으로 열차편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렸음.

○ 기타 2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표 1〉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의료비 지원	육아용품비용지원	주거안정지원	세액공제	교육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금리우대 ·전세자금보증(특례)	·기본공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국가장학금 지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보육 및 돌봄	**공공요금 할인**	**교통관련 할인**	**기타지원**	
·어린이집 우선입소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전기요금 감액 ·상하수도 요금할인 ·도시가스 요금할인 ·에너지 복지요금	·주차요금 할인 ·기차요금 할인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다.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 2019년 기준 지자체의 저출산 지원 정책은 총 2,120개에 달하며, 출산 지원이 830개(39.2%), 육아지원 631개(29.8%), 임신 전후 지원 459개(21.7%) 순으로 많음.

○ 지자체의 저출산 지원 정책 총 2,120개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은 총 513개(24.2%)에 해당함.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지원 분야가 출산(임신전후 사업 일부 포함)과 육

아 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지원 방법을 살펴보면, 전체 513개 중 현금 지원이 408개(79.5%)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서비스 지원 35개(6.8%), 현물 지원 32개(6.2%), 바우처 지원 31개(6.0%) 순임.

○ 다자녀 가구 지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금 지원 정책은 주로 출산장려금 혹은 출산 축하금 등임.

○ 지역별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지원 방법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대다수 지역에서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 한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에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지원 수준도 높아지는 점증 지원 방식을 가진 정책은 44.6%인 229개 사업임.

○ 점증 지원 방식의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167개로 대부분이며, 2명인 경우 47개 사업,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0개 사업 등임.

○ 반면, 점증 지원 방식이 아닌 다자녀 가구 지원의 경우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녀수는 3명인 경우가 191개로 약 80%에 달하며, 2명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47개 사업임.

4. 해외 다자녀 가구 지원 사례

가. 프랑스

□ 프랑스는 가족수당이나 가족보조금 등 2명 또는 3명 이상의 다자녀를 기준으로 한 지원 제도뿐만 아니라, 현금 지원, 휴가 제도, 보육 서비스 등 보편적 지원 제도 내에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 가족 및 아동 관련 현금지원 중 출산·입양 지원금과 기초수당은 자녀수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차등 적용됨. 가족수당은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수 및 소득구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 지급하며, 가족보조금은 만 3세 이상 만 21세 미만 부양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됨.

○ 프랑스의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자녀교육분담수당은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가능한 자녀 상한 연령 및 지급 기간이 연장됨. 모성 출산휴가 기간도 출산 예정인 자녀를 포함한 자녀수 및 쌍생아 수에 따라 차등 부여됨.

○ 보육료 지원은 자녀수 및 한부모 여부에 따라 연소득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보육방식 자유 선택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프랑스의 가족분할계수를 적용한 세대 단위 과세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감세 효과를 가짐.

나. 독일

□ 독일은 다자녀 가구를 3자녀 이상 가족으로 지칭해왔으나,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들에서는 자녀수 증가에 따라 점증적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독일의 아동수당은 셋째아부터 증액된 수당을 지급함. 추가아동수당은 수급기준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완화하는 방식으로 산정하여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주고 있음.

○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부모수당 중 다자녀 가구 혜택은 쌍둥이 부모수당과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이 있음.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은 기본 부모수당에 해당하는 자녀 이외에 추가 자녀로 인정되는 자녀를 함께 양육할 경우 지급됨.

○ 독일 연방정부는 다자녀 가구에게 보육료 감액 지원을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주정부에 따라 지원 정도가 상이함. 최근에 무상보육이나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한 주들이 있음.

○ 2018년 도입된 주택아동수당은 연가구소득 상한선 이하이면서 아동수당 수급자격을 가진 자가 자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임. 연가구소득 상한선은 자녀수에 따라 상승함.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최대 10년간 연 1,200유로 보조금을 지급함.

다. 스웨덴

□ 스웨덴은 보편적인 제도 내에서 다자녀 혜택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함. 즉, 다자녀 아동수당,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 다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기존의

제도에 추가적인 지원 장치를 도입하여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둠.

○ 스웨덴의 다자녀 아동수당은 만 16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에게 지급되는 추가적인 아동수당임.

○ 스웨덴의 부모휴가 제도에서 다자녀 지원은 쌍둥이 수에 따른 부모휴가 지급기간 연장과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가 있음.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는 첫째 출산 이후 오히려 급여가 줄어들어 부모휴가급여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24개월 이내에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첫째 출산 시기 임금을 기준으로 부모휴가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 스웨덴의 보육료는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비율이 차등 적용됨. 넷째 자녀 이상은 보육료 전액 면제임.

라. 싱가포르

□ 싱가포르는 아동 및 가족 지원 정책을 포괄하는 정책으로 M&P Package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아동 발달 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유럽 국가들과 다소 다른 대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음. 또한 싱가포르는 다자녀 지원 제도로 조세 지원 방식을 강화하였다는 점이 두드러짐.

○ 싱가포르의 출산 축하금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셋째아 이상부터 증액하여 지급됨.

○ 아동 발달 계좌는 자녀 교육 및 의료비 지출을 위한 예비비를 저축하도록 정부가 일정 예치금을 지원하는 특별 저축 계좌임. 정부가 첫 예치금을 지급한 이후 부모의 저축액과 매칭하여 추가로 지원 해주는 방식임. 정부 지원액은 첫째아·둘째아에 비해 셋째아 및 넷째아는 2배, 다섯째 이상은 3배 증액됨.

○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각 자녀 당 받는 부모 세금 환급액이 증가함. 또한 일하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일하는 어머니 자녀 감세 제도도 자녀수의 증가에 따라 각 자녀당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율이 증가함.

마. 일본

□ 일본은 다자녀 지원 제도가 크게 발달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으나, 아동수당

제도에 셋째아부터 아동수당을 증액하여 지급하고 최근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변화는 관찰됨.

○ 일본의 아동수당은 연소득 960만엔 이하의 가구이면서 중학교 졸업 이전 아동을 둔 부모 또는 부모 지정자를 대상으로 함. 아동수당은 자녀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며, 셋째아 이상부터는 증액된 아동수당을 지급함.

○ 2019년까지는 일정 소득상한선 이하일 경우 다자녀 보육료를 감면하는 제도가 있었으나, 2019년 5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을 위한 양육지원법이 통과되어 자녀수에 상관없이 무상 보육이 실시됨.

바. 시사점

□ 대부분의 국가들이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지원보다는 자녀수 증가에 따른 점증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화하고 있음.

○ 프랑스는 자녀수 증가에 따른 점증적 지원 확대가 기본적으로 가족정책에 내포되어 있으며, 독일도 최근 도입한 추가아동수당이나 주택아동수당 등의 제도에서 2자녀 이상 또는 자녀수 증가에 따른 지원을 강화함. 스웨덴의 다자녀 아동수당도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도 자녀수 증가에 따라 확대됨. 싱가포르의 세제 제도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지원이 확대됨.

□ 보편적 지원 제도 내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를 추가하는 제도적 설계를 모색하여야 함.

○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은 보편적인 수당 제도 내에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지급이나 추가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다자녀 가구 지원 방식의 다양한 제도적 옵션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즉, 지급액을 증액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을 완화하거나 지급 기간을연장하는 방식의 다양한 혜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연소득 상한선을 자녀수 증가에 따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였고, 부모휴가의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명시적인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정책적 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자녀수 증가에 따른 보편적 제도 내 추

가 지원뿐만 아니라, 다자녀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다자녀를 명시하여 실시하는 제도가 있음.

○ 프랑스의 경우 가족수당 및 가족보조금은 다자녀 가구에게만 해당하는 지원 제도이며, 독일의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과 스웨덴의 자녀 아동수당은 다자녀 지원 제도임을 제도명에서 명시하고 있음.

5. 다자녀 가구의 정책적 요구

가. 심층면담 개요

□ 총 18개 가구, 6개 집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함. 지역과 자녀수를 고려하여 표집하였으며, 가구 내 영유아 자녀는 1명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표집함.

○ 결과적으로 초등이상, 중고등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연스럽게 표본에 포함되어 조사되었음.

○ 다자녀 카드 발급 기준으로 서울(2명), 세종(1명), 경북 및 대구 지역(3명)을 면접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각 지역에서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와 자녀가 2명인 가구를 고르게 섞어서 면담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 가구 심층면담에서 주로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자녀 가구 출산 동기, 다자녀 가구의 장점과 다자녀 양육시의 어려움.

○ 현재 거주 지역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도움 정도, 사유.

○ 현행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혹은 지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및 사유.

○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나. 다자녀 가구의 장점 및 양육시 어려움

□ 다자녀 가구의 대부분은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원만한 사회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혈연 관계의 가족의 필요성, 상호 작용을 통해 부모의 돌봄 필요가 감소하는 부분 등을 다자녀 가구의 장점으로 꼽음.

○ 반면,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을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으로 지목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교육비 부담에 대한 호소가 많음.

□ 2자녀 가구에게 셋째 이상의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대체적 부정적 반응이 높았으며, 그 이유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혹은 경력단절 등에 관한 우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음.

다.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의견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다자녀 가구의 체감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임.

○ 가장 인지 수준이 높은 정책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정책'임. 하지만, 지원액의 수준이 상한 등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만족도 혹은 수혜 체감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 볼 수 있음.

□ 한편, 출산 지원금 등의 지원이 자녀의 양육기 전반에 걸친 지원이 아닌 일시적 지원으로 효과의 지속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즉, 양육기 전반에 걸친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큼.

□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들은 육아지원 및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이 2자녀 이하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혜택 범위가 커지는 형태의 제도가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강하게 공감함.

○ 2자녀 가구들도 다자녀 가구 지원의 기준이 2자녀로 낮추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점증(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자의 자녀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 특히 양육비용의 부담이 자녀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데 반해, 다자녀 가구 육아 지원은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의 확장을 통한 교육비 지원을 강하게 희망하는 경향성을 보임.

□ 다자녀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지원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 맞벌이 다자녀 가구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를 강하게 희망함.

○ 자녀가 4명이상의 다자녀 가구 : 3명이상의 다자녀 가구부터 요구가 크게 증가하나, 특히 4명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희망함. 임대 주택 지원 뿐 아니라 금리 할인 등에 관한 높은 희망을 가지고 있음.

○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보육서비스에 대한 강화 요구.

○ 고학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다자녀 가구 :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편의성 제고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음.

라.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보이지만, 제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이 섞여서 나타남.

○ 지역사회 육아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러한 지원이 육아 부담 경감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긍정 응답이 높음.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출산율 제고 등의 목적이 아니라, 다자녀 가구의 육아 지원 혹은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에 있기를 강하게 희망함.

□ 한편 다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6. 정책 제언

가. 기본 방향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다자녀 가구 아동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어, 육아기 전반에 걸쳐 지원함.

□ 다자녀 가구 지원은 현행 지원 정책의 강화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전반적인 다자녀 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 다자녀 가구 지원은 비용지원의 경우 유자녀 가구 지원을 시작으로 하여, 자녀

수에 따른 점증 지원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고려.

□ 다자녀 가구 내에서도 가구 특성에 맞는 우선 지원 혹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표 2〉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방안 개요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방식	특기사항
비용 지원	아동수당	지원 연령은 장기적으로 점차 상향조정	출생순위를 고려하여, 둘째아 이상 점증 지원	체감도 제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됨
세제 지원	자녀세액공제	-	자녀수 증가에 따른 공제 금액 확대	세제 지원은 연1회 실시되어 수혜주기가 길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편에 속함.
	자녀 교육비 공제	-	공제 상한을 자녀수에 따라 점증되도록 조정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	지원 금액을 자녀수에 따라 점증 지원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	취등록세 감면이 아닌 자동차세 감면 등에 대한 고려 요함	
보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지원 기준연령을 막내자녀의 연령으로 조정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연령을 막내자녀의 연령으로 조정	배정 우선권 부여	-
	국가장학금	-	4자녀이상 가구 소득기준 완화	-
	학자금 융자	3자녀→2자녀로 지원 강화	-	-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령기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 자녀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특기교육 참여 보장, 교재비 혹은 급식비, 입학금 지원 등 검토	-
문화 지원	문화시설 이용	지원 기준연령을 막내자녀의 연령으로 조정 3자녀→2자녀로 지원고려	영유아 다자녀 동반 부모의 이용 요금 할인 등에 관한 검토 요함	이용편의서비스 지원 강화
	다자녀 카드 지원	막내자녀 기준 만 18세로 통일, 3자녀이상 지원 지자체는 2자녀이상으로 하향조정	-	전국 공통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됨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방식	특기사항
생활 지원	공공요금감면	3자녀→2자녀로 지원 고려	가구원수에 따라 점증 지원, 3자녀이상 가구 지원 상한액 인상	-
	대중교통요금 할인	2자녀 가구부터 지원	할인상한액 자녀수에 따른 차등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강화
주거 안정 지원	주택공급	-	자녀가 4명인 경우 추가 지원 (평수상한 조정, 우선공급 횟수 조정)	-
	금리우대/전세자금 보증	2자녀 가구부터 지원	-	-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활용가능 연령 상향조정(유자녀 가구 지원)	육아휴직급여를 자녀수에 따라 점증 지원	-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	자녀수에 따라 사용 상한 일을 연장	-

주 : -는 현행 제도에서의 특별한 수정을 요하지 않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나. 다자녀 아동수당(가칭) 지원

□ 아동수당 정책은 직접적 현금성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과 접목될 경우 다자녀 가구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아동수당은 전국 단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지원금 등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균질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음.

□ 현행 아동수당 지원금에 자녀의 출생순위를 고려하여 점증되는 형태의 추가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본고는 편의상 기존 아동수당 지원 체계와의 구분을 위해 다자녀 아동수당(가칭)이라고 지칭하고자 함.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아동의 출생 순위를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원금이 점증되는 형태의 지원금은 현행 아동수당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임.

□ 아동의 출생 순위를 고려한 아동수당 지원 체계(다자녀 아동수당 지원)는 [그림 1]과 같음.

[그림 1] 다자녀 아동수당(가칭) 지원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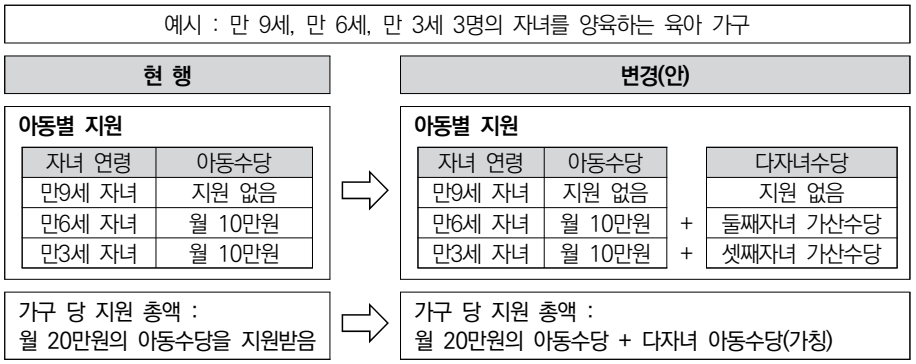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http://ihappy.or.kr/info/intro.php, (2020. 3. 20 인출).

다. 세제 지원 확대

□ 현재 육아 가구 대상 세제 지원은 자녀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자녀 장려금 제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 정책을 들 수 있음.

□ 다자녀 가구를 위한 세제 지원 정책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3〉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 정책 조정(안)

구분	현행	변경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출산 입양자녀공제)	- 20세이하 자녀 - 1명 연15만원, 2명 연30만원, 3명 연 60만원, 4명 연 90만원 - 3명이상 1명당 연 30만원 + 2인 초과 1명당 30만원 증액	- 2명 자녀부터 증액되도록 변경 - 2인 초과 1명당 점증하는 형태로 변경 - 예: 2명 연 35만원(1명 대비 +20만원), 3명 연 70만원(2명 대비 +35만원)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 고등학생 이하 자녀 - 교육비의 15%(1명당 연 300만원 상한)	- 자녀수에 따른 상한 조정 가능
자녀 장려금	- 저소득 가구 지원 - 지원 금액 또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 (1명당 50~70만원)	- 가구소득*자녀수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차등 지원되도록 제도 변경. - 즉, 자녀수에 따라 지원 대상 소득 구간 차등, 지원 금액 점증 지원
자동차 취등록세	- 18세미만 3자녀 이상 - 자동차 1대에 취등록세 면제	- 취등록세가 아닌 자동차세 감면 등으로 변경 고려

자료: 1) 소득세법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2)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취득세 경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 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라. 지원 대상 연령 조정

□ 현행 전국 공통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연령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보육 및 돌봄 서비스의 경우 영유아 자녀 혹은 아동기(만12세이하) 연령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만, 해당 지원 연령을 막내자녀 연령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원 대상자 확대 필요.

○ 다자녀 가구에게 아이돌보미 배정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원금 또한 자녀수에 의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등 공공 돌봄서비스 우선권 부여 강화

○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기도 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현행 제도사용 가능 연령이 만8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원 연령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표 4〉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연령 조정(안)

구분		현행	조정(안)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우선입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막내자녀 연령 기준으로 조정 (지원 대상 연령에 속한 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기타지원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막내가 12세 미만인 가족	- 막내자녀 연령 만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통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만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지자체	다자녀 카드 지원 사업	- 지자체별로 상이	- 막내자녀 연령 만18세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통일

자료: 1) 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2017).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연구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중심으로. p.113~115.
2) 생활플러스,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http://life.korea.go.kr/content/contentView.do?tlsSeq=466&svcId=140000000002&menuCode=010000&menuCode2=010100 (2020. 3. 3 인출).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1 (2020. 3. 3 인출).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2 (2020. 3. 3 인출).

마. 지원 대상 기준 하향 조정 필요 사업

□ 자녀수에 따라 점증 지원의 방식으로 지원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유자녀 가구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자녀수에 따른 지원 폭을 좀 더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

□ 점증 지원이 아닌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 지원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지원 대상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이하 가구로 낮아질 경우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범위가 크게 확장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 다자녀 가구 지원 자녀수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과 같음.

〈표 5〉 다자녀 가구 지원 자녀수 조정(안)

구분		현행	조정(안)
주거 안정 지원	주택특별공급	- 3명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현행 유지하되, - 자녀수가 4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장기전세 주택 우선공급	-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득/자산요건 충족 시	
	금리우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2자녀 지원으로 확대
	전세자금보증 (특례)	-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세액 공제	기본공제	- 자녀 수에 따라 차등 - 3자녀부터 지원 증가	- 2자녀부터 점증 지원되도록 조정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미혼대학생	- 4자녀이상 가구 소득기준 완화 - 다자녀가구 비율 할당 고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다자녀(3인 이상)가구는 소득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 2자녀 지원으로 확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소득구간 관계없이 혜택	- 2자녀 지원으로 확대
공공 요금 할인	전기요금 감액	-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2자녀 지원으로 확대하되, 가구원 수에 따라 점증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 기준 지원 상한액 인상
	상하수도요금 할인	- 지자체별 각기 다르게 적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 지역사업본부별 각기 다름	
	에너지 복지요금 (난방비 감면)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이상 또는 손(孫)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	

구분		현행	조정(안)
교통 관련 할인	기차요금 할인	- SRT 다자녀(3명 이상)가구	- 2자녀이상 가구로 확대
	대중교통 할인	- 지자체별 상이	- 3자녀이상 가구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이용요금 할인 신설
기타 지원	문화시설이용	- 제도별 상이	- 2자녀부터 지원하되, - 할인비용 점증지원

자료: 1) 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2017).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연구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중심으로. p.54~57.
2) 복지로, 다자녀가구 특례 전세자금보증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 welInfSno=15276 (2020. 2. 13 인출).
3) 정부 24,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4586 (2020. 3. 3 인출).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난방비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3 (2020. 3. 3 인출).

바. 다자녀 가구 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과 같이 아동 당 기간으로 동일하게 하되, 육아휴직 급여를 다자녀 가구 여부에 따라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봄직 함.

□ 또한,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가족돌봄 휴직과 휴가의 경우에는 자녀수를 고려하여 휴가일수를 연장해 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표 6〉 다자녀 가구 일가정 양립 지원

구분		현행	조정(안)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만8세이하(초등2학년이하) - 아동당 1년 이내	- 현행 유지하되, 육아휴직급여를 자녀수에 따라 점증지원(독일과 유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만8세이하(초등2학년이하) - 단축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35시간 이내 (1년 이내)	
가족돌봄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 직계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필요시 - 휴직은 최장 90일, 휴가는 최장 10일	- 자녀수에 따라 사용 기간을 연장(프랑스, 스웨덴과 유사)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단축	- 직계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필요시 - 단축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30시간 이내(1년 이내, 3년까지 연장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287&efYd=20200101# (2020. 4. 22 인출).

사.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다양화

□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가 증가하는 시기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

○ 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예능 수업 등) 등 사교육을 대체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다자녀 가구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다자녀 가구의 중고등학령기 자녀에 대한 교재비 지원 혹은 급식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일부 지자체가 다자녀 가구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 모니터링을 거쳐 전국적으로 제도 확장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봄 직 함.

아.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 지원 중에서도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지원이 요구됨.

○ 현재 저소득 가구 육아지원 정책의 상당수가 다자녀 가구 지원과 중첩되는 상황으로, 다자녀 가구이면서 저소득 가구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선별 기준에서 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해주는 등으로의 지원 강화가 가능함.

○ 한편, 한부모 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도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육아 지원을 강화하여 지원.

자. 지자체 사업의 중앙화 가능성 검토

□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특화사업이 아닌 모든 광역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으로는 다자녀 카드 지원 정책이 꼽을 수 있음.

○ 다자녀 카드 사업 자체는 현행과 같이 지자체 사업으로 유지하도록 하되, 다자녀 가구의 법적 정의를 명료화하여 다자녀 카드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국적으로 균질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차.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및 법적 기반 마련

□ 행정안전부의 원스톱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나 인지도가 낮으므로, 주민센터 및 유관 공공기관(보건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우편 알림 등을 통한 정책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이 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및 다자녀 가구 편의 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다자녀 가구의 법적 정의 및 다자녀 가구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구축이 미비한 바, 이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요구됨.

I

서 론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02 연구내용 및 방법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만혼화 현상과 더불어 출산·양육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은 출산을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다자녀 가구의 형성을 막는 주요 원인이 됨.

○ 출생아 중 출생순위가 둘째 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010년 49.3%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2018년에는 45.3%에 그침(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2020. 1. 14 인출).

○ 셋째아 이상 가구의 비중은 2010년에는 10.6%였으나, 2018년에는 8.6%에 그침(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2020. 1. 14 인출).

□ 자녀 양육을 위한 경제적 부담, 즉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많을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임. 자녀가 1명인 가구의 양육비용은 83만3천원이었으나, 자녀가 3명인 경우 176만1천원에 달함(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25).

○ 육아가구의 총 양육비용은 가구소득 대비 자녀가 1명일 때 19.6%, 2명일 때 30.2%, 3명이상일 때 40.5%에 달함(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26).

○ 즉,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육아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을 알 수 있음.

□ 한편,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자녀가 1명인 가구의 경우에는 83만3천원이지만,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52만1천원에 그침(최효미·강은진·조미라 외, 2018: 125).

○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는 자녀가 1명인 가구에 비해 총 양육비용이 2배 이상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지만, 자녀 당 양육비용은 더 적음.

○ 다자녀 가구의 자녀들이 자녀수가 적은 가구에 비해 누려야 할 경제적 지원을 더 적게 받고 있어, 아동 권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

□ 또한, 경제적 부담 뿐 아니라 부모의 시간 분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인적 자본 투자에서 나타나는 제한성과 불공평성의 문제가 있어 모든 아이에게 집

중적인 보살핌과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점 또한 다자녀 가구가 가진 한계라 볼 수 있음(문숙재·양정선·이성은, 2007: 55).

○ 이에 따라, 다자녀가구 부모들은 자녀에게 평범한 미래를 기대하며,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인적자본에 투자하긴 어렵지만 다자녀라는 가족구성에서 사회성, 협동, 독립성 등의 무형의 자산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문숙재·양정선·이성은, 2007: 55).

□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모든 아동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제도의 설계가 요구됨.

○ 현행 육아지원 제도는 대체로 아동 단위 보편지원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은 많지 않은 실정임.

□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거주 지역에 따라 지원 대상과 내용이 다른 특징을 보임(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 전면적인 무상 보육이 도입되면서 영유아 자녀에 대한 교육·보육비 지원은 아동 단위로 전환되며,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크게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됨.

○ 지자체가 지역의 다자녀 가구 유입 및 후속 출산 유인, 양육부담 경감 등을 위해 다자녀 가구 지원을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상황임.

○ 이로 인해 다자녀 가구 입장에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정책에 대한 인지가 낮고, 정보 습득 여부에 따라 수혜율이 달라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20)에 따르면, 다자녀 기준을 현행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로 완화에 대해 검토하는 계획이 제시되어 있음.

○ 현재 다자녀 가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불명확한 상태로, 지자체 조례 혹은 제도별 지원 대상에서 규정하는 기준을 준용하고 있는 실정임.

○ 다자녀 카드를 기준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 가구로 보는 지자체가 17개 중 9개 지역으로 가장 많고, 두자녀 이상으로 보는 지자체가 7개 지역, 세종시의 경우에는 한자녀 이상이면 모두 다자녀 카드를 발급하고 있음(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113).

○ 최근의 지역별 다자녀 가구 혜택이 큰 편차를 보이지 않고 균질적으로 시행되게 하기 위해 상위법 상에서의 다자녀 가구 지원을 규정하기 위한 입법발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혜숙 의원('19.3.11), 강훈식 의원('19.5.14),
- 「조세특례제한법」: 황주홍 의원('19.5.17),
- 「전기사업법」: 이찬열 의원('19.6.13) 등 다수.

□ 다자녀 가구의 특성에 맞춘 지원 방안의 설계 및 지원 대상자의 확대를 통해 육아 부담의 경감에 기여하고자 함.

○ 또한,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보고 무자녀 가구 대비 유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 내용

□ 다자녀(혹은 유자녀) 가구 지원 정책 분석

○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공공기관의 유자녀 지원정책 현황 분석

○ 현행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아동의 지원 대상 및 정책 부문에 따라 재분류하여 현황 분석

○ 특징적인 기초자치단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사례 검토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관한 요구 및 제도 개선 방안

○ 유자녀 가구 대상의 심층 면담을 통해 정책 대상자의 의견 수렴

□ 해외 사례 검토 및 분석

○ OECD 주요 국가의 다자녀 가구 현황 분석

○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지원 정책을 실시 중인 나라에 대한 해외 사례 수집 및 분석

-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 싱가폴의 육아 지원 및 가족 정책 사례 연구

□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 및 제도 개선 방안 모색 및 제안

○ 유관 부처 및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에 대한 쟁점 사항 도출 및 대안 모색

나. 연구방법

□ 문헌 연구

○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 관련 선행 연구 및 중앙부처 및 17개 시·도, 공공기관의 유자녀 지원정책 현황 자료 분석.

- 시사점이 있는 기초자치단체 사례 연구 포함

○ OECD 국가 다자녀 가구 현황 분석 및 해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사례 수집 및 분석

□ 다자녀 가구 심층 면담

○ 유자녀 가구 대상 심층 면담실시(총 18가구).

○ 지역별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역을 선정하고, 면담자 자녀수에 따라 자녀가 2명인 가구와 3명 이상인 가구를 표집.

- 모든 표본은 영유아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가구로 표집 하였으며, 이에 따라 영유아로만 구성된 가구와 초등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연스럽게 섞여서 표집되었음.

〈표 Ⅰ-2-1〉 심층면담 표집 목표

단위: 명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수			계
		1명 (세종)	2명 (서울)	3명 이상 (대구 경북)	
면담자 자녀수	2명	2	3	3	8
	3명 이상	4	3	3	10
전체		6	6	6	18

□ 전문가 자문 회의

○ 다자녀 가구 관련 선행 연구자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는 총 2회, 각 4명 내외 전문가로 구성하여 진행.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및 정책간담회 개최

○ 유관 부처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 지자체 사례 연구 등으로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와의 간담회 진행

Ⅱ

연구의 배경

01 선행연구 개관
02 다자녀 가구 현황
03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04 소결

Ⅱ. 연구의 배경

1. 선행연구 개관

가. 다자녀 기준

□ 많은 선행연구가 '3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하였음(권영인·최지은, 2015; 김용미, 2016; 문숙재·양정선·이성은, 2007; 박경자·전혜정·김은영 외, 2008; 박천규·이영, 2011; 방은령, 2014; 안새롬·송원호, 2014; 염주희·정승은·주영선, 2013). 최보람·문예영(2012)은 다자녀 추가공제 기준에 따라 2자녀 이상을 기준으로 삼기도 함.

○ 선행연구들은 보통 인구대체율 2.1[2]을 근거로 다자녀를 정의하거나,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가 2명 내외 인 것을 감안하였거나, 통상적인 정부 다자녀 정책 수혜대상이 세 자녀 이상인 점 등을 근거로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하고 있음(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33~34; 권영인·최지은, 2015: 86; 염주희·정승은·주영선, 2013: 36).

○ 다자녀 기준 자체를 쟁점으로 다룬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임. 다만 박경자·전혜정·김은영 외(2008: 120)에서 출산율이나 부모들의 자녀출산계획을 고려하여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할 필요성을 제안한 바 있음.

○ 정은희·최유석(2013: 26)은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기존의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제공하던 지원정책을 장기적으로 두 자녀, 한자녀 가정으로 점차 확대하여 한 자녀 및 무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피력함.

○ 또한 최효미(2017: 13)는 정책적으로도 다자녀 가구 지원의 법적 근거가 불

2)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구대체수준(replacement level)이 2.1이며, 일반적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인 사회를 저출산 사회로 보는데, 가임여성 한 명이 2명 정도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않고, 늘지도 않는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함(정지선·여은정, 2007: 138).

명확하여 개별 법령에 의거 산발적 지원이 이뤄지는 실정이므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다자녀 가구 지원 근거를 '3자녀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로 명시하고, 지원 대상의 확대[3] 등을 특례로 두어 다자녀 가구지원 확대의 근거 마련을 제안한 바 있음.

〈표 Ⅱ-1-1〉 선행연구 다자녀 가구 정의 기준 및 근거

다자녀 기준	문헌	근거
3자녀 이상	문숙재·양정선·이성은 (2007: 45~46)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수(2.4명), 가임기 혼여성 평균출생아수(1.7명)와 추가계획자녀수(0.2명)에 따른 기대자녀수(1.9명), 보건복지부 기대자녀수(2.0),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2.2명) 등을 바탕으로 함. - 평균 출산자녀수나 기대자녀수, 이상 자녀수를 초월하는 자녀수는 3명부터로 봄
	박경자·전혜정·김은영 외 (2008: xiv)	- 현재 정부 정책은 세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출산율이나 부모들의 자녀 출산 계획을 고려해 볼 때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정의하는 개념화 작업이 필요함.
	박천규·이영 (2011: 122)	-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특별 주택공급
	이윤수·이기영 (2012: 143)	- 보건복지부의 3자녀 이상이라는 다자녀 가정의 범위 참조
	염주희·정승은·주영선 (2013: 36)	- 국내 기혼 가정의 기대자녀수(2.2명), 셋째 출산 후 제공되는 각종 혜택으로 인해 세 자녀 가정과 다자녀 가정을 동일시하는 일반적 인식에 바탕을 둠.
	방은령 (2014: 56)	- 인구대체율 2.1명
	안새롬·송원호 (2014: 85)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기준(3자녀 이상 전기료 감액,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정책)
	권영인·최지은 (2015: 86)	- 인구 대체율을 근거로 했거나, 한국 기혼여성의 평균 출산 자녀수와 기대 자녀수,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자녀수를 기준으로 세자녀 이상인 경우를 다자녀로 정의함.
	김용미 (2016: 51)	- 인구대체율 2.1명, 국내 기혼 가정의 기대자녀 수가 2.2명이라는 점, 셋째아 출산 후 정부와 지자체 수준에서 각종 복지혜택이 제공되면서 세 자녀 가족과 다자녀 가족을 동일시하는 일반적 인식에 근거한 것
	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14)	- 결론적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의 대상을 3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자녀 연령이 18세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정함. - 다만, 지자체 중 다자녀 카드 지원 기준이 2자녀인 곳이 7곳, 1자녀부터 1곳이 있으며 후속 출산독려 등을 통한 출산율 제고를 위해 2자녀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음을 제시함.

3) 지원 대상의 확대라 함은 지자체별로 2명 이하, 1명일 경우에도 다자녀 가구 지원을 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

다자녀 기준	문헌	근거
2자녀 이상	최보람·문예영 (2012: 191, 195)	- 다자녀 추가공제 정책 기준

자료: 1) 문숙재·양정선·이성은(2007).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p.45~46.
2) 박경자·전혜정·김은영·김지현·장수지(2008).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가족부·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p.xiv.
3) 박천규·이영(2011). 다자녀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다자녀의 내생성 문제해결을 위한 도구변수의 이용. 국토계획, 46(3), p.122.
4) 이윤수·이기영(2012).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가족복지실천과 서비스 방향: 다자녀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8, p.143.
5) 염주희·정승은·주영선(2013). 다자녀 가정의 출산배경과 지원정책 욕구 분석에 관한 연구: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3(1), p.36.
6) 방은령(2014). 출산장려정책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셋 이상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17(1), p.56.
7) 안새롬·송원호(2014).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전기요금 감액,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7(4), p.85.
8) 권영인·최지은(2015). 다자녀의 부모로 살아가기. 세 자녀 부모의 다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과 역할 형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4), p.86.
9) 김용미(2016). 다자녀 출산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의 의미. 아동교육, 25(2), p.51.
10) 최효미·김아름·조숙인·윤지연(2017).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연구: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p.14
11) 최보람·문예영(2012). 출산장려세제의 실효성 검토와 개선방안: 다자녀 추가공제를 중심으로. 세무와회계저널, 13(4), p.191, 195.

나. 다자녀 출산, 양육, 자녀가치

□ 본 절에서는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연구의 동향과 다자녀가구의 출산동기, 양육방식, 출생순위에 따른 출산의도의 영향요인에 검토를 통해 다자녀 지원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다자녀 출산 및 양육에 관한 연구는 다자녀 출산 요인 및 인식(염주희·정승은·주영선, 2013; 이병호·박민근, 2017a; 김경화·이주연, 2012; 이영경·연희정·김은주, 2017)과 다자녀 출산 동기 및 양육 경험(방은령, 2014; 이윤수·이기영; 2012; 이혜경, 2011; 권영인·최지은, 2015; 문숙재·양정선·이성은, 2007)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며, 다자녀 가구의 가족관계(김용미, 2016), 한 자녀 가정과의 양육방식 비교(서안리·정영숙, 2009)에 관한 연구도 있음.

□ 문숙재·양정선·이성은(2007: 54~55)은 질적 연구를 통해 다자녀 가족에게 자녀의 의미는 인간과 신의 돈독한 관계를 규정짓는 상징, 나의 행복을 세상에

과시할 수 있는 존재, 나를 비춰보는 거울이라고 요약되어 전반적인 행복감과 자긍심이 나타난 반면, 걱정과 근심의 측면은 자의든 타의든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가게 되어 더 많은 관심과 배려 및 책임이 수반되며 자녀수 증가에 따른 가사노동의 양과 시간이 증가되었다는 측면임.

○ 또한 다자녀를 가진 동기는 계획을 하진 않았더라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적응하는데 있었으며, 일부 대를 잇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출산한 경우는 대다수 다자녀가정에서 보이는 특유의 행복감을 찾기 어려웠음(문숙재·양정선·이성은, 2007: 55).

○ 또한 다자녀 가족구성 자체를 훌륭한 학습의 장으로 인식하며, 한정된 수입과 부모의 시간 분배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인적자본 투자에서 나타나는 제한성과 불공평성의 문제가 있어 모든 아이에게 집중적인 보살핌과 관심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부모가 인식하고 있고, 자녀들도 부모가 자신만을 돌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일상을 일궈나가고 적절한 경쟁과 협력을 통해 성장하고 상승효과가 있다는 점이 발견됨(문숙재·양정선·이성은, 2007: 55).

○ 다자녀가구 부모들은 자녀에게 평범한 미래를 기대하며,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인적자본에 투자하긴 어렵지만 다자녀라는 가족구성에서 사회성, 협동, 독립성 등의 무형의 자산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음(문숙재·양정선·이성은, 2007: 55).

□ 박경자·전혜정·김은영 외(2008: vi)는 유자녀 기혼여성과 기혼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이상적인 자녀수'를 설문했을 때 과반수(51.0%)가 2명, 23.9%가 3명, 11.8%가 4명으로 응답함.

○ 자녀출산계획에 대해 72.9%는 '더 이상 출산하지 않겠다' 하였으나, '더 낳겠다'는 응답은 24.5%에 불과하였으며 '현재 자녀가 1명'이면 더 낳을 계획이 있으나 '2명 이상'은 대부분이 더 낳지 않겠다고 응답함.

○ 2자녀 이상을 둔 경우, 다자녀 출산 동기는 '아이에게 형제를 만들어 주려고'(91.6%)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아이가 좋아서'(43.5%), '아이가 생겨서'(35.7%) 순이었음. 2자녀 이상 둔 어머니는 '양육비가 많이 들어서'(77.5%), '과중한 사교육비'(64.9%), '육체·정신적 피로'(52.3%)의 이유로 더 이상 출산하지 않겠다고 응답함.

□ 이성용(2009: 66)은 출산순위별 출산증가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이데올로기,

경제적 상황, 사회경제적 특성 요인들이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이 출산순위에 따라 차이가 났음.

○ 예컨대 출산장려 분위기를 찬성하는 태도는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셋째아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즉,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은 셋째아 출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할 수 있으나,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에는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음(이성용, 2009: 66).

○ 따라서 합계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아 출산보다 첫째아와 둘째아 출산장려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출산순위에 따라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 차별화될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았음(이성용, 2009: 66).

□ 강혜진(2009: 22)은 다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도 전국 출산 및 출산동향조사' 사용하였음. 본래 다자녀 가구를 통해 출산의 긍정적 요인을 파악해 출산환경 조성에 적용하려 했으나 실제 조사결과는 다자녀 출산은 긍정적 요인보다는 저해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자녀 가정의 가정 내 역할 분담이 낮으며, 교육수준이 높고 취업모에게서 자녀출산이 저하되는 현상이 있었음(강혜진, 2009: 77).

○ 다자녀 임신은 무계획에 의한 경우가 많았으며, 둘째 출산 후 수술이나 배란일 조정으로 피임을 하나 배란일 조절실패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사례가 많았으며, 다자녀 출산 동기는 다르더라도 임신에서 출산으로 이어지는 결정적 동기는 부모의 가치관과 종교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됨(강혜진, 2009: 76).

○ 또한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정 내 가사노동 분담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몫으로 남는 경향이 있었고, 양육을 전담하는 여성일수록 추가자녀 출생에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으며, 추가자녀가 생기면 희생을 해야 한다고 인식함(강혜진: 2009: 76~77).

○ 면접 조사한 다자녀 가정은 대부분이 양육과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였으나, 아이 출산을 후회해본 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음(강혜진, 2009: 77).

□ 정은희·최유석(2013: 5)는 여성가족패널조사를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실제출산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연령이 낮고,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남편 또는 부부가 자녀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친모나 시모가 생존한 경우, 사교육비 지출수준이 낮으며, 자녀를 일찍 가져야 한다고 인식할수록 출산계획을 갖는 확률도 높게 나타남(정은희·최유석, 2013: 5).

○ 둘째자녀 출산요인은 출산계획에 대한 요인과 유사하였는데, 연령대가 낮고, 전업주부인 경우, 결혼만족도가 높고 자녀교육에 관해 남편의 참여가 높은 경우 출산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정은희·최유석, 2013: 5).

○ 사교육비 지출이 적을수록 둘째자녀를 출산할 확률이 높았음. 이러한 결과는 자녀출산이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닌, 우리사회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상황(비정규직 일자리 증가, 노동시장 문제, 부동산 문제 등), 자녀교육 문제 등과 직결된 문제로 일차적으로 첫째자녀 출산을 앞당길 인센티브 및 첫째자녀 출산과 양육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제언함(정은희·최유석, 2013: 26).

○ 기존의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제공하던 지원정책을 장기적으로 두 자녀, 한 자녀 가정으로 점차 확대하여 한 자녀 및 무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정은희·최유석, 2013: 26).

○ 또한 스웨덴의 스피드 프리미엄제도[4]처럼 둘째자녀 출산간격을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 등을 참고하여 둘째자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첫째자녀와 둘째자녀와의 출산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정은희·최유석, 2013: 26).

○ 더불어 취업여성은 둘째자녀 출산가능성이 전업주부보다 낮으므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지원이 필요하며, 남편의 자녀교육 의사결정참여가 둘째자녀 출산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을 고려하여 남편의 자녀교육 및 가사노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도 확대 등 아버지 대상 정책개발이 요청됨(정은희·최유석, 2013: 27).

○ 첫째자녀 사교육비 투자비용이 많을수록 둘째자녀 출산에 부정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보아 자녀교육비 부담 완화방안이 필요함(정은희·최유석, 2013: 27).

□ 염주희·정승은·주영선(2013: 35)은 세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하여 그 출산배경과 지원정책 욕구를 분석하였는데, 많은 수의 자녀를 원하여

4)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24개월 이내 추가 출산을 할 경우 첫째 자녀 출산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함(양정선, 2017: 72).

다출산을 하거나, 특정성별에 대한 선호로 셋째 출산을 했거나, 가족계획의 부재 또는 실패가 임신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됨.

□ 방은령(2014: 67)은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가정이 화목하고, 아이들을 좋아하거나 자녀에게 형제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자녀를 갖게 된 경우가 가장 많았음.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며, 양육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출산비와 보육비 중심의 출산장려정책은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벗어나기엔 많이 부족하다고 인식함(방은령, 2014: 67).

○ 또한 다자녀 가구는 출산장려정책의 효과를 실감하지 못하였으며, 불만이 많았는데 이는 어머니보다 아버지에게서 더 많이 나타났고, 아버지는 경제적 측면을, 어머니는 일과 양육의 양립이 가능한 정책지원을 희망함(방은령, 2014: 70).

□ 김용미(2016: 47)는 심층면담을 통해 다자녀 출산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의 의미를 분석하였는데, 다자녀 출산으로 부부간 대화가 많아지고 친밀, 화목해졌으나 양육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부부갈등이 증가한 측면이 지적되었으며, 형제자매관계는 형제 간 서로 의지하고 돌보는 관계가 되었고 손위 자녀는 부모의 양육협력자이면서도 형제간 질투와 경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 부모에게 자녀의 의미는 커다란 책임감과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형성되는 의미가 있으며, 다자녀가족은 자녀 중심적이고 안정적이지만 심리적, 경제적 양육부담이 큰 특징을 나타낸다고 분석함(김용미, 2016: 47).

□ 한편 김미숙(2015: 8)은 우리나라가 자녀에 대한 긍정적 자녀가치와 부정적 자녀가치가 모두 높아 다른 국가와 구별되는 양면적 특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자녀는 정신적 기쁨을 주지만 자녀양육이 경제적으로 부담되며 개인생활을 제한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음.

○ 또한 자녀가 부모 노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낮아 자녀에 대한 투자가 자녀를 위한 것이지 부모부양을 위한 것은 아님을 보여주었음(김미숙, 2015: 8).

다.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

□ 다자녀 지원정책과 관련한 연구는 다자녀가구 실태 및 정책방안을 개괄적으로 살펴보는 연구(이병호·최석현·민병길 외, 2017; 전혜정, 2009; 이병호·박민근,

2017b)와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효과에 관한 연구(안새롬·송원호, 2014),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에 관한 연구가 있고, 구체적인 제도로 좁혀 다자녀 추가공제 실효성 검토(최보람·문예영, 2012), 다자녀 가구 전기요금 감액,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안새롬·송원호, 2014), 다자녀가 주택소비 미치는 영향(박천규·이영, 2011) 등도 있음.

○ 초저출산 극복의 기제로 다자녀 지원 정책을 주목하고 다자녀 지원 정책의 실태나 효과성을 규명하거나, 출산장려정책과 조세지원 등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수임.

□ 정지선·여은정(2007: 137)은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으로 소득세법상 과세단위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개편을 주장하였고, 근본적인 방법으로 과세단위변경과 보충적인 방법으로서 공제액 인상 방안을 제시함.

○ 현행 근로장려세제[5]가 출산을 장려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확대 개편을 제안했으며, 출산과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출산 및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를 제안하였으며, 주택과 관련한 재산세는 다자녀 가구에 대해 일정 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음(정지선·여은정, 2007: 137).

□ 박경자·전혜정·김은영 외(2008: vi~vii)는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을 연구하였는데 설문조사 결과 자녀를 안심하고 기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64.8%), 사교육비 경감(54.3%), 안전한 자녀양육 환경 조성(53.3%)의 사회적 여건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또한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에 대한 어머니의 인지도는 '셋째 아이부터 양육수당 지급'이 가장 높았고(87.9%), 육아휴직(84.8%), 출산휴가(79.5%), 차등보육료 지급(78.8%), 예방접종 무상서비스(72.3%)순 이었으며, 다자녀 가족 지원 사업을 수혜한 어머니는 상대적으로 적어 예방접종 무료서비스가 69.0%로 가장 많았고, 임신 중 철분제 무료 지급(45.0%), 성인동반 3명 영유아 버스 무료 승차(40.3%), 차등보육료 지급(33.9%), 영유아 무료 건강검진(31.8%)순 이었음.

○ 향후 출산에 결정적 영향을 주는 지원책은 출산 후 직장 복귀 보장, 보육·육아시설 확충, 정부 보육비 지원, 공교육강화·사교육비 경감이 지적되었고, 전업주부보다 취업모에게 자녀 출산 및 양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도

5)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로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출산장려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지급대상이 자녀부양가구이므로 간접적으로 출산유도 효과가 있다고 보았음(정지선·여은정, 2007: 140).

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행 다자녀 우대사업에 대해 대체로 만족했으나 산모 도우미 파견과 둘째 혹은 셋째 자녀 이후 출산장려금 차등 지급에 대해 만족하지 못하였음.

○ 한편 FGI 결과에서는 자녀가 1명인 경우 영아는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초등학생은 사교육비 부담으로 둘째를 생각할 여력이 없었고,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거나 자녀양육부담 경감 지원이 확대되면 자녀출산 생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박경자·전혜정·김은영 외, 2008: ⅷ).

- 정부 지원 외에 재직기업에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출산축하금 지원, 산모 병원비 지급 및 공제 혜택으로 병원비 환급, 자동차 구입 시 자녀수에 따른 할인혜택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됨(박경자·전혜정·김은영 외, 2008: ⅷ).

□ 박경자·전혜정·김은영 외(2008)는 다자녀 우대정책의 방향이 경제적 지원(세금감면, 건강보험료 경감), 휴직·휴가제도(산전후 휴가기간의 조정, 아버지 유급 출산휴가)[6], 보육 및 교육 지원(영유아 보육·교육비 자녀수에 따른 차등지원, 다자녀 방과 후 프로그램 수강 보조비 지원, 다자녀 아동 도서 및 장난감 대여 서비스 지원), 기타(산모·신생아 도우미 제도 다자녀로 확대, 다자녀가족 카드의 실효성 확대, 그 외[7]) 정책을 제안하였음(박경자·전혜정·김은영 외, 2008: xii~x iii).

○ 또한 현행 다자녀 정책의 보완을 위해 과제 수나 종류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일관성 제고, 수혜자 체감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며, 다자녀 개념을 두 자녀 이상으로 개념화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출산장려금 등이 지자체별 차이가 많아 불만의 원인이 되므로 지자체별로 수혜자가 납득 할 수 있는 형평성 유지가 필요하고, 취업여부에 따른 정책 수혜자 특성에 맞는 사업의 개발과 수정, 저소득 집중정책에서 중산층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인구정책으로 다자녀 지원정책이 개발될 필요, 찾아가는 홍보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함(박경자·전혜정·김은영 외, 2008: x iv~x v).

○ 해당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이 이후 많은 부분 정책에 반영되었으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녀 수 기준의 재개념화, 출산장려금 등의 형평성 제고 등은 여전히 고려할 부분으로 사료됨.

---

6) 산전·후 90일 유급휴가를 보완하여 둘째 자녀부터는 산후 휴가기간을 5일씩 더 늘리는 방안, 아버지 출산휴가를 유급화하고 아버지 출산휴가 기간을 자녀 수에 따라 차등화 하는 방안

7) 다자녀 가족 자녀의 교복비 지원, 다자녀 가족 의료비 감면제도, 다자녀 가족에 가스비, 전화요금 감면, 전기료 감면 혜택 확대, 유류세 및 자동차세 할인, 다자녀 가족 차량에 대한 요일제 혜택 등

□ 박천규·이영(2011: 129)은 다자녀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다자녀 출산은 주택면적, 주택가격 측면 모두에서 주택소비를 줄이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자녀에서 2자녀, 3자녀로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 특히 2자녀에서 3자녀로 넘어갈 때 주택소비의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고, 주택면적은 2자녀인 경우 1자녀에 비해 증가하나 3자녀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수의 증가는 주택소비 감소의 원인이 되며, 그 감소효과는 3자녀 이상에서 컸음(박천규·이영: 2011: 129).

○ 3자녀 가구는 증가소득보다 증가생활비가 클 것이므로 자녀수가 늘면 주택소비를 감소하며, 3자녀 이상 가구에서 크게 주택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함(박천규·이영: 2011: 129).

○ 이는 정부가 시행중인 다자녀가구 특별 주택공급의 주 정책대상의 주택소비가 다른 가구에 비해 통계적으로도 불리한 상황에 있음을 나타냄(박천규·이영: 2011: 129). 또한 차가와 자가를 비교했을 때 전세가격 측면에서는 주택소비가 자녀수에 따라 큰 차이가 없었는데, 편의시설 접근용이성, 교통, 교육환경에 대해 차가 가구가 자가 가구보다 만족도가 높아, 이는 차가 가구는 주택소비의 감소요인이 발생했더라도 지속적으로 교통, 편의시설 등이 좋은 곳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편익을 향유하고, 생활비를 절감하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분석함(박천규·이영, 2011: 130).

□ 염주희·정승은·주영선(2013: 35)에서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다자녀 어머니가 바라는 사회적 지원은 보육·교육비 관련, 소득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았으며, 교육여건 개선과 사회복지시설의 질 향상과 같은 사회적 여건을 희망함. 바람직한 사회적 여건으로 사교육비 경감을 지적함(염주희·정승은·주영선, 2013: 72).

□ 안새롬·송원호(2014: 83)는 다자녀 지원정책 중 전기요금 감액과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정책에 대해 효과를 분석하였음.

○ 그 결과 다자녀 가구의 전기요금은 동일 전기량 사용에 대해 정책 이후 약 6,200원 정도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다자녀 가구는 전기요금 감면된 금액만큼 전기량 사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반응을 한 것으로 나타났음.

○ 또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정책은 시행 이후 새 자동차 구입이 0.1대 증

가, SUV 자동차는 약 0.097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소득별로는 전체 자동차에 대해 저소득층이 큰 혜택을 받았고, 고소득층은 SUV 자동차에 대해 큰 혜택을 받았음.

○ 이에 이상의 두 정책이 다자녀가구의 지출 부담을 줄이는데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음(안새롬·송원호, 2014: 107).

□ 고승연(2014: 18~19)은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을 분석하면서 다양화된 맞춤식 지원정책의 설계, 사회의 다각적 관심과 지원을 통해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부담감 완화를 지향해야 하며, 특히 다자녀(2명 이상) 가구에 대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함.

○ 다자녀의 경우 보육시설에 대한 의존도가 크며, 인근에 아이 맡길 곳이 없고 급할 때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 일·가정양립의 어려운 이유로 나타났으며, 다자녀의 경우 자녀의 연령별, 상황별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봄(고성연, 2014: 19).

□ 이병호·박민근(2017b: 17)은 그간 중앙정부가 유자녀가정에 대한 보편지원에 치중, 다자녀가정 지원은 주로 지자체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나 수혜자가 만족할 수준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함.

○ 이병호·박민근(2017b: 3)은 경기도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율이 2000년대 초반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현재 전국 평균 수준을 회복하였는데 이는 2000년대 중후반부터 다자녀가구 대상의 출산장려금, 양육비 지급 등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한 효과라고 보았음.

□ 이병호·박민근(2017a: 318)은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으로 출산장려금의 효과가 주효함을 주목하였는데, 경기도 31개 기초자치단체 데이터를 활용하여 출산장려금과 1인당 GRDP(Gross Regional Domestic Product: 지역내총생산) 변수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발견하였고, 기초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지출이 대략 2,270만원 늘어나거나 1인당 GRDP가 26만원 증가할 때 셋째아 이상 출생은 1명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음.

○ 이는 지역경제 발전은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저출산과 인구감소 위기를 겪는 지역에서는 출산장려금 정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음을 시사함(이병호·박민근, 2017a: 318).

□ 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2017: 12)에서 다자녀 가구 부모들은 연령과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문화, 교육, 교통에 대한 지원 요구가 강하며, 다자녀 양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지원을 선호하였음.

○ 또한 다자녀가구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며, 국민행복카드와 지자체별 다자녀 지원카드가 분절적으로 운영되어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등을 매개로 한 전달체계의 개선이 요구된다고 보았음. 또한, 지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중앙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공공서비스 부문에서 교통, 문화, 교육 및 돌봄, 주거분야 우대서비스 확대방안과 민간서비스 부문 방안을 제안함(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9~12, 15~23).

□ 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2017: 6)는 다자녀 가구의 서비스 이용 편의 제고 및 전국적으로 균질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전달체계로서의 전국 통합형 '다자녀 통합복지카드'의 도입을 제안함.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의 도입과 더불어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지원,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의 체감도 제고를 위한 문화생활 및 교육 관련 지원, 다자녀가구 고충 경감을 위한 주거 지원 등의 서비스 확장과 전달체계로서 다자녀 통합복지카드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법적 기반 마련 등을 제안함(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6).

□ 김나영(2018: 2)은 국외 아동수당 지급을 살펴보고 각 국가별 상황과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개선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고했으며, 특히 독일은 아동수당이 2018년 기준 첫째·둘째아 194유로, 셋째아 200유로, 넷째아 이상은 225유로가 지급되어 출생순위가 높아질수록 점진적인 아동수당 지급이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음.

○ 우리나라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출생순위를 고려한 아동수당 지급 모형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0~5세 지원과 선진국처럼 12세로 확대한 경우의 재정규모를 추계하였는데, 출생순위별로 차등지급하는 경우라도 재정소요에 있어 10년 간 큰 변동이 없다는 것을 보고하였음(김나영, 2018: 2~3).

- 또한 김나영(2018: 4)은 저출산 극복의 기제로 아동수당의 역할을 간과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추가출산 장려를 위해 출생순위에 따른 차등적 수당지급을 제안함.

2. 다자녀 가구 현황

□ 국내 자료 중 다자녀 가구의 비중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으로, 다자녀 가구 현황은 주로 연도별 출생아 중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고 있음.

□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둘째아 이상의 출생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포착됨.

○ 둘째아 이상 비중은 2010년 49.3%(231,663명)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45.3%(147,910명)에 그침.

○ 셋째아 이상 비중은 상황이 더 심각하여 2010년 10.6%(49,900명)였으나, 2018년에는 8.6%(28,164명)에 그침.

○ 현행 셋째아 이상에게 지원하는 정책이 둘째아로 지원 기준이 낮아질 경우 지원 대상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임.

〈표 Ⅱ-2-1〉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단위: 명

구분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미상
2010	470,171	235,473	181,763	43,782	6,118	3,035
2011	471,265	239,596	178,964	45,396	6,246	1,063
2012	484,550	248,933	183,991	44,217	6,363	1,046
2013	436,455	224,807	165,662	39,663	5,570	753
2014	435,435	225,393	165,331	38,226	5,486	999
2015	438,420	228,637	166,119	37,096	5,347	1,221
2016	406,243	212,932	152,729	34,684	4,952	946
2017	357,771	187,854	133,855	30,297	4,665	1,100
2018	326,822	176,850	119,746	25,246	2,918	2,062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 1. 14 인출).

〈표 Ⅱ-2-2〉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중

단위: %

출생순위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미상
2010	100	50.1	38.7	9.3	1.3	0.6
2011	100	50.8	38.0	9.6	1.3	0.2
2012	100	51.4	38.0	9.1	1.3	0.2
2013	100	51.5	38.0	9.1	1.3	0.2
2014	100	51.8	38.0	8.8	1.3	0.2
2015	100	52.2	37.9	8.5	1.2	0.3
2016	100	52.4	37.6	8.5	1.2	0.2

출생순위	전체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이상	미상
2017	100	52.5	37.4	8.5	1.3	0.3
2018	100	54.1	36.6	7.7	0.9	0.6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 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 1. 14 인출).

□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13.7%), 전남(13.2%) 등이며, 둘째아 출생아 비중이 높은 지역은 대구(39.7%), 경북(39.1%), 경남(38.4%), 광주(38.2%) 등임.

○ 서울의 경우 출생아가 경기 다음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지만, 첫째아 비중이 61.0%로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이 전반적인 출생아 수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음. 즉, 유배우 가정이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출산 가능성이 높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자녀를 한명만 출산한 후 중단하는 현상은 전반적인 신생아 감소의 주요 원인이라 볼 수 있음.

〈표 Ⅱ-2-3〉 지역별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중 (2018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총계	1아		2아		3아 이상		미상	
		수	%	수	%	수	%	수	%
전국	326,822	176,850	54.1	119,746	36.6	28,164	8.6	2,062	0.6
서울	58,074	35,406	61.0	19,070	32.8	3,136	5.4	462	0.8
부산	19,152	10,564	55.2	7,062	36.9	1,478	7.7	48	0.3
대구	14,400	7,337	51.0	5,716	39.7	1,191	8.3	156	1.1
인천	20,087	11,302	56.3	7,053	35.1	1,612	8.0	120	0.6
광주	9,105	4,646	51.0	3,474	38.2	894	9.8	91	1.0
대전	9,337	5,169	55.4	3,339	35.8	796	8.5	33	0.4
울산	8,149	4,471	54.9	3,024	37.1	648	8.0	6	0.1
세종	3,703	2,108	56.9	1,287	34.8	292	7.9	16	0.4
경기	88,175	46,885	53.2	33,255	37.7	7,600	8.6	435	0.5
강원	8,351	4,242	50.8	3,128	37.5	857	10.3	124	1.5
충북	10,586	5,565	52.6	3,763	35.5	1,157	10.9	101	1.0
충남	14,380	7,463	51.9	5,366	37.3	1,472	10.2	79	0.5
전북	10,001	4,875	48.7	3,808	38.1	1,240	12.4	78	0.8
전남	11,238	5,458	48.6	4,231	37.6	1,487	13.2	62	0.6
경북	16,079	8,076	50.2	6,293	39.1	1,593	9.9	117	0.7
경남	21,224	10,930	51.5	8,142	38.4	2,057	9.7	95	0.4
제주	4,781	2,353	49.2	1,735	36.3	654	13.7	39	0.8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출산순위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 1. 14 인출).

□ 반면, OECD 국가들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현황을 살펴보면,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비중이 한국에 비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음(OECD Family Database, 2020. 1. 28 인출).

○ 첫째아 출산율은 국가별로 약간 차이를 보이긴 하나, 50% 전후로 한국과 비교하여 다소 낮긴 하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님.

○ 하지만, 셋째아 이상의 출생아 비중이 10%이하인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Ⅱ-2-1] OECD 주요국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2017년 기준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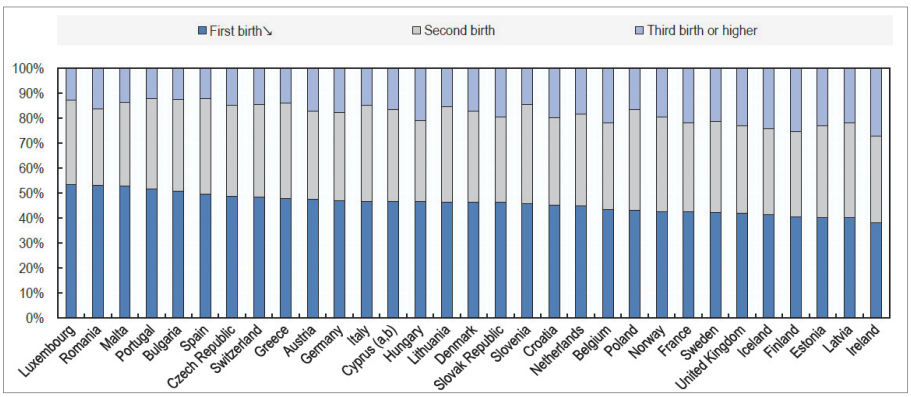

주: 1) 국가별 자료 출처 및 특기사항은 아래 자료 출처의 각주를 참조할 것.
2) OECD Family Database의 가장 최근 update 일시는 2019. 3. 6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F2.1 : Fertility rate, p.4에서 재인용 (2020. 1. 28 인출).

〈표 Ⅱ-2-4〉 OECD 주요국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2017년 기준 자료)

단위: %

국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국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Romania	53.6	30.4	16.0	Slovenia	45.5	39.2	15.4
Luxembourg	52.3	35.7	12.0	Netherlands	44.8	36.6	18.5
Portugal	51.1	36.4	12.5	Iceland	44.7	33.2	22.1
Malta	50.9	34.5	14.6	Croatia	44.5	34.8	20.7
Bulgaria	50.3	37.2	12.5	Lithuania	44.4	40.0	15.6
Spain	49.1	38.0	12.9	Norway	43.0	38.2	18.9
Czech Republic	48.0	37.2	14.7	Belgium	42.9	34.5	22.6
Switzerland	47.9	37.3	14.8	United Kingdom	42.7	35.0	22.3
Cyprus (a,b)	47.2	37.3	15.5	Poland	42.7	38.0	19.4

국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국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Austria	47.1	35.3	17.6	Sweden	42.5	36.7	20.8
Greece	47.0	38.6	14.4	France	41.7	35.8	22.5
Italy	46.6	38.5	15.0	Finland	40.7	34.2	25.1
Germany	46.5	35.3	18.2	Latvia	39.5	37.8	22.6
Hungary	46.4	32.9	20.7	Ireland	38.4	34.8	26.8
Denmark	46.3	36.9	16.8	Estonia	36.7	37.3	26.0
Slovak Republic	45.7	35.0	19.3	Turkey	36.3	32.4	31.3

주: [그림 Ⅱ-2-1]과 동일한 자료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F2.1 : Fertility rate, p.4에서 재인용 (2020. 1. 28 인출).

□ 한편, 출생아 기준이 아닌 가구 단위의 통계를 통해서 다자녀 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인구총조사 자료에는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현황이 보고되어 있으나, 세대별로 몇 명의 가구원인지를 구분할 수 없음. 따라서, 세대구성을 고려할 때 최대 자녀수가 될 수 있는 경우를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로 간주.

- 예를 들어, 2세대 가구이면서 가구원수가 4명인 가구의 경우 한부모 가구를 가정할 때 자녀가 3명인 가구이며 양부모 가구일 경우에는 자녀가 2명일 것임. 따라서 2세대 가구인 경우 가구원수가 4명인 가구부터 다자녀 가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현황을 파악함.

- 세대별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살펴본 다자녀 가구의 비중은 다자녀 가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최대치의 가구 수를 의미함.

○ 2세대 가구이면서 가구원수가 4명이상인 가구는 3,664,766가구로 전체 2세대 가구 중 39.5%에 해당함.

- 2세대 가구이면서 가구원수가 5명이상인 가구는 595,449가구로 전체 2세대 가구 중 6.4%임.

○ 3세대 가구이면서 가구원수가 5명이상인 가구는 477,494가구로 전체 3세대 가구 중 53.4%에 해당함.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다자녀 가구일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4,142,260가구(20.7%)임.

〈표 Ⅱ-2-5〉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현황 (2018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총계	가구원수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이상
계	19,979,188	5,848,594	5,445,691	4,203,792	3,396,320	849,167	182,886	52,738
1세대 가구	3,600,264	-	3,501,684	92,842	5,189	446	87	16
2세대 가구	9,288,450	-	1,651,901	3,971,783	3,069,317	533,537	52,525	9,387
3세대 가구	893,501	-	-	105,014	310,993	309,160	127,799	40,535
4세대이상 가구	8,012	-	-	-	540	2,197	2,475	2,800
1인 가구	5,848,594	5,848,594	-	-	-	-	-	-
비친족 가구	340,367	-	292,106	34,153	10,281	3,827	-	-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 2. 3 인출).

□ 2세대 가구와 3세대 가구의 연도별 변화를 살펴보면, 전체 가구 수 자체는 조금씩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가구원 수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임.

○ 가구원수가 3명인 2세대, 3세대 가구의 비중은 2015년 20.28%에서 2018년 19.88%로 감소하였으며, 4명인 가구 비중도 16.89%에서 15.36%로 감소.

○ 전체 2세대 가구 및 3세대 가구 중에서 가구원수가 3명이상인 가구의 비중은 2015년 40.51%에서 2018년 38.22%로 감소하였음.

〈표 Ⅱ-2-6〉 2세대 및 3세대 가구의 가구원수별 비중(2015-2018)

단위: 명, %

구분	총계	가구원수				
		3명	4명	5명	6명	7명이상
2015년	19,111,030	3,876,285	3,228,055	569,083	57,631	10,699
	(100.0)	(20.28)	(16.89)	(2.98)	(0.30)	(0.06)
2016년	19,367,696	3,930,669	3,201,031	565,503	56,678	10,353
	(100.0)	(20.29)	(16.53)	(2.92)	(0.29)	(0.05)
2017년	19,673,875	3,951,804	3,135,015	549,337	54,487	9,796
	(100.0)	(20.09)	(15.93)	(2.79)	(0.28)	(0.05)
2018년	19,979,188	3,971,783	3,069,317	533,537	52,525	9,387
	(100.0)	(19.88)	(15.36)	(2.67)	(0.26)	(0.05)

주: 전체 가구 수에서 2세대 혹은 3세대 가구이면서 해당 가구원수를 가진 가구의 비중을 산출. 가구원수가 1명 혹은 2명인 경우는 표에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주의를 요함.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 2. 3 인출).

□ 한편,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양육가구는 2016년 2,055,585가구에서 2018년 1,884,247가구로 급감함.

○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수별 비중을 살펴보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2016년 44.15%에서 2018년 43.60%로 감소, 3명인 가구의 비중은 2016년 11.49%에서 2018년 10.83%로 감소.

○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유아 자녀가 없는 가구 중에도 다자녀 가구는 있을 수 있으므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양육 가구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의 비중을 산출할 수는 없으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자녀가 3명 이상(혹은 2명이상)은 가구는 모두 다자녀 가구라 볼 수 있으므로,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통계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최소 값은 짐작해볼 수 있음.

○ 현재 다수의 정책에서 다자녀 가구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자녀가 3명이상인 영유아 양육 가구는 지속적으로 가구의 수 뿐 아니라 비중 자체도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임.

- 자녀가 2명인 가구의 비중도 유사한 경향성을 보임.

○ 반면, 자녀수가 1명인 가구의 수는 줄어들지만, 비중 자체는 조금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낮은 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1자녀 출산에서 중단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짐.

〈표 Ⅱ-2-7〉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와 자녀수(2016-2018)

단위: 명, %

구분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전체	자녀수		
		1명	2명	3명
2016년	2,055,585	911,876	907,476	236,233
	(100.0)	(44.36)	(44.15)	(11.49)
2017년	1,982,502	892,507	869,046	220,949
	(100.0)	(45.02)	(43.84)	(11.14)
2018년	1,884,247	858,600	821,521	204,126
	(100.0)	(45.57)	(43.60)	(10.83)

주: 영유아 자녀 가구는 만6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 2. 3 인출).

3.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

□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은 총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자녀가 1명일 때 86만6천원이지만, 3명 이상일 때는 184만9천원까지 상승함.

○ 반면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자녀가 1명인 경우 평균 83만3천원이지만,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2만3천원으로 감소함.

○ 결국 자녀가 많을수록 가구의 총 양육비용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아동당 지출하는 양육비용은 감소하여, 아동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한명인 가구에 비해 충분한 양육지원을 받지 못함을 엿볼 수 있음.

〈표 Ⅱ-3-1〉 자녀수별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2019년 기준)

단위: 만원, (가구)

구분		가구 생활비 총 지출액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사례수		(1,902)	(1,902)	(1,665)	(2,334)
전체 평균		332.6	126.5	92.6	66.0
총 자녀수	1명	304.5	86.6	83.3	83.3
	2명	339.8	138.2	97.9	63.2
	3명이상	377.5	184.9	94.9	52.3
	F	37.9***	245***	10.5***	79.1***

주: 영유아 가구는 영유아 자녀가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총양육비용은 자녀 모두에 대한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은 영유아 자녀 전체에 대한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자녀 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자료: 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48.

*** $p < .001$.

□ 자녀수별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이 생활비 혹은 가구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자녀가 1명인 경우 생활비 대비 총양육비용은 27.6%인데 반해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생활비에서 총 양육비용이 48.4%에 달함.

○ 가구소득 대비 총 양육비용은 자녀가 1명일 때는 19.5%에 그쳤으나, 자녀가 3명인 경우 2배가량 높은 39.7%에 달함.

○ 결국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소득 및 생활비의 상당 비중을 자녀 양육을 위해 투입할 수밖에 없음을 엿볼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가계경제의 압박이 가중됨을 짐작할 수 있음.

〈표 Ⅱ-3-2〉 자녀수별 영유아 가구의 양육비용 비중 (2019년 기준)

단위: %, (가구)

구분		생활비 대비 양육비용 비중			가구소득 대비 양육비용 비중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총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 총액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
사례수		(1,902)	(1,665)	(2,334)	(1,902)	(1,665)	(2,334)
전체		36.9	27.9	19.9	28.2	20.9	14.9
총 자녀수	1명	27.6	26.9	26.9	19.5	18.8	18.8
	2명	40.2	29.3	18.9	31.1	22.1	14.2
	3명이상	48.4	25.2	13.9	39.7	21.9	12.1
	F	468.4***	12.7***	372.2***	47.7***	4.9**	29.2***

주: 영유아 가구는 영유아 자녀가 1명이라도 포함되어 있는 가구를 의미하며, 총양육비용은 자녀 모두에 대한 양육비용, 영유아 양육비용은 영유아 자녀 전체에 대한 양육비용,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영유아 자녀당 양육비용을 의미함.

자료: 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49-50.

* $p < .05$, *** $p < .001$.

□ 비목별로 영유아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교육보육비와 식비에 대한 지출 규모가 큰 상황에서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됨을 알 수 있음.

○ 거의 모든 비목에서 총 자녀수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중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 영유아 양육비용 비중이 자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비목은 피복비로, 이는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 물러받기 등으로 인해 피복비의 절감이 발생하는 것에 기인한 효과로 추측됨.

○ 영유아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식비, 피복비, 보험비에서 총 자녀수에 따라 금액 자체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비목이었음.

- 이 경우 자녀수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자녀가 1명인 경우와 2명이 되는 경우에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

〈표 Ⅱ-3-3〉 자녀수별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 (2019년 기준)

단위: 만원, (%)

구분		전체	총 자녀수			
			1명	2명	3명이상	*F*
주요 비목별	식비	19.7 (23.5)	16.1 (22.7)	21.5 (23.5)	21.8 (25.5)	27.7*** (3.2*)
	피복비	7.5 (8.7)	6.3 (8.5)	8.2 (8.7)	8.0 (8.9)	16.1*** (0.5)
	보건의료비	4.5 (5.2)	4.0 (5.6)	4.7 (4.9)	4.7 (5.6)	2.4 (3.5*)
	교육보육비	29.5 (28.0)	27.1 (25.9)	30.6 (29.0)	31.2 (29.7)	2.0 (5.1**)
	여가 및 문화생활비	14.3 (15.3)	14.2 (17.0)	14.8 (14.9)	12.6 (12.2)	1.4 (16.7***)
	개인유지비	4.9 (6.0)	4.7 (7.0)	5.0 (5.5)	5.0 (5.6)	0.6 (8.6***)
	자녀를 위한 보험비	9.0 (10.6)	6.7 (9.2)	10.3 (11.3)	10.0 (11.4)	30*** (9.9***)

자료: 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50-56.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함.

* $p < .05$, *** $p < .001$.

[그림 Ⅱ-3-1] 자녀수별 비목별 영유아 양육비용 (2019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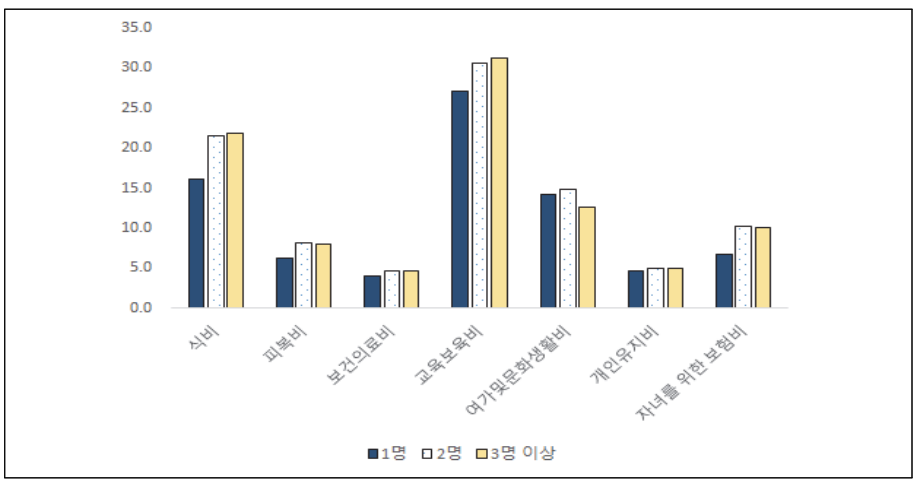

주: 〈표 Ⅱ-3-3〉과 동일한 그림임.

자료: 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Ⅱ). 육아정책연구소. p.50-56. 내용을 기초로 재구성함.

4. 소결

□ 다자녀 출산은 계획이든 무계획이든 출산과 양육을 수용하는 결정의 결과물이며, 대체로 다자녀가구라는 행복감과 자긍심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나 본인 의사에 반해 출산한 경우는 불행감이 보고되며, 장점은 자녀들이 협동심과 배려심을 배우고 부부간에 잦은 대화와 친밀감이 상승된다는 점이며, 단점은 부부갈등의 심화, 경제적 어려움, 양육에 대한 육체적·정신적 부담감, 개별 자녀에게 온전한 케어를 해주기 어려운 점 등이 꼽힘.

○ 자녀가치에 대한 연구를 참조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자녀가 정신적 기쁨을 주면서도 경제적 부담과 개인생활을 제한하는 존재로 인식된다는 점이 다자녀가구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또한 연령이 낮고, 결혼만족도와 남편의 가사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부부가 자녀교육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출산계획을 가질 확률이 높았으며, 한 자녀 및 무자녀 가정의 양육부담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제약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으며, 자녀교육비 부담 완화방안, 취업여성을 위한 일가정양립 정책과 아버지 대상 정책의 활성화가 요청됨.

○ 다자녀 가구의 정책적 욕구는 지출부담을 완화하거나 경감하는 정책에 대한 선호가 높고, 이러한 정책이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가져다주는 것으로 파악함. 다만, 다자녀 지원 정책의 혜택을 충족시키는 것이 어려우며, 혜택의 폭도 제한적으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한계점이 지적됨(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38).

○ 개별 정책별로는 출산장려금이 다자녀 출산에 긍정적 요인이 되나, 지역별 편차로 인한 불만이 있어 지역 간 형평성 제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전기요금 감액 및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정책은 다자녀가구의 지출부담 완화에 효과적이며, 다자녀 출산이 주택면적과 주택소비 모두를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자녀수에 따른 주택지원 정책은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종합하면 다자녀는 많은 선행연구에서 인구대체율 등을 준거로 '세 자녀 이상'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중앙정부 정책도 같은 기준을 준용하고 있음. 그러나 초저출산이 심화되고 인구감소가 표면화된 많은 지자체가 두 자녀 혹은 한 자녀부터도 지원정책을 파격적으로 제공하고 있고, 다자녀가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므로 정책지원 대상으로서 다자녀가구 지원 기준에 대한 재논의와

정립이 필요함.

○ 또한 선행연구 결과에서 정책대상자인 다자녀가구는 양육관련 지출비용의 경감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다자녀가구 지원정책 체감도는 높지 않아 지속적인 정책개선 노력이 필요하며,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제도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국내 자료 중 다자녀 가구의 비중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는 실정으로, 다자녀 가구 현황은 주로 연도별 출생아 중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음.

□ 전체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둘째아 이상의 출생율이 급감하는 현상이 포착됨.

○ 둘째아 이상 비중은 2010년 49.3%(231,663명)였으나,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8년에는 45.3%(147,910명)에 그침.

○ OECD의 다른 국가들과 출생순위별 출생아 현황을 비교해보면, 한국의 셋째아 이상 출생아의 비중이 매우 낮음을 쉽게 알 수 있음(OECD Family Database, 2020. 1. 28 인출).

□ 한편,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를 기준으로 자녀수별 비중을 살펴보면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가 2016년 44.15%에서 2018년 43.60%로 감소, 3명인 가구의 비중은 2016년 11.49%에서 2018년 10.83%로 감소.

○ 다자녀 가구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영유아 자녀가 없는 가구 중에도 다자녀 가구는 있을 수 있으므로, 영유아 자녀가 있는 양육 가구의 자녀수를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의 비중을 산출할 수는 없으나,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자녀가 3명 이상(혹은 2명이상)은 가구는 모두 다자녀 가구라 볼 수 있으므로,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통계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최소 값은 짐작해볼 수 있음.

□ 육아 가구의 양육비용은 총 양육비용을 기준으로 자녀가 1명일 때 86만6천원이지만, 3명 이상일 때는 184만9천원까지 상승함.

○ 반면 영유아 일인당 양육비용은 자녀가 1명인 경우 평균 83만3천원이지만,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52만3천원으로 감소함.

○ 결국 자녀가 많을수록 가구의 총 양육비용 부담은 급격히 증가하지만, 아동당 지출하는 양육비용은 감소하여, 아동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

가 한명인 가구에 비해 충분한 양육지원을 받지 못함을 엿볼 수 있음.

□ 비목별로 영유아 양육비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교육보육비와 식비에 대한 지출 규모가 큰 상황에서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교육보육비의 부담이 더욱 가중됨을 알 수 있음.

○ 거의 모든 비목에서 총 자녀수에 따라 영유아 양육비용의 비중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

III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관

01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및 정책방향

02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03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04 소결

Ⅲ. 국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개관

1.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및 정책방향

가. 법령상의 다자녀 가구 정의

□ 법령상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의 일반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함(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9. 6. 15: 4).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제1항: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를 다자녀 양육자로 정의함(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9. 6. 15: 4).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를 둘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함(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2019. 6. 15: 4).

나. 다자녀 지원 정책방향

□ 2015년 말에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발전사회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사회를 목표로 합계출산율을 2014년 1.21명에서 2020년 1.5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설정한 바 있음(대한민국정부, 2015: 41).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기대 자녀수에 따른 대책방향을 각 자녀 수별로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무자녀가구에는 한 자녀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자녀 가구는 두 자녀를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두자녀 가정은 세 자녀 이상 다둥이 가구가 우대 받는 사회가 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첫째아 수를 늘리고, 취약한 둘째아 출산 장애요인을 해소, 합계출산율 변화율이 높은 셋째아 출산 확산 전략을 추진

하는 것으로 설정한 바 있음(대한민국정부, 2015: 43).

[그림 Ⅲ-1-1]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기대 자녀수에 따른 대책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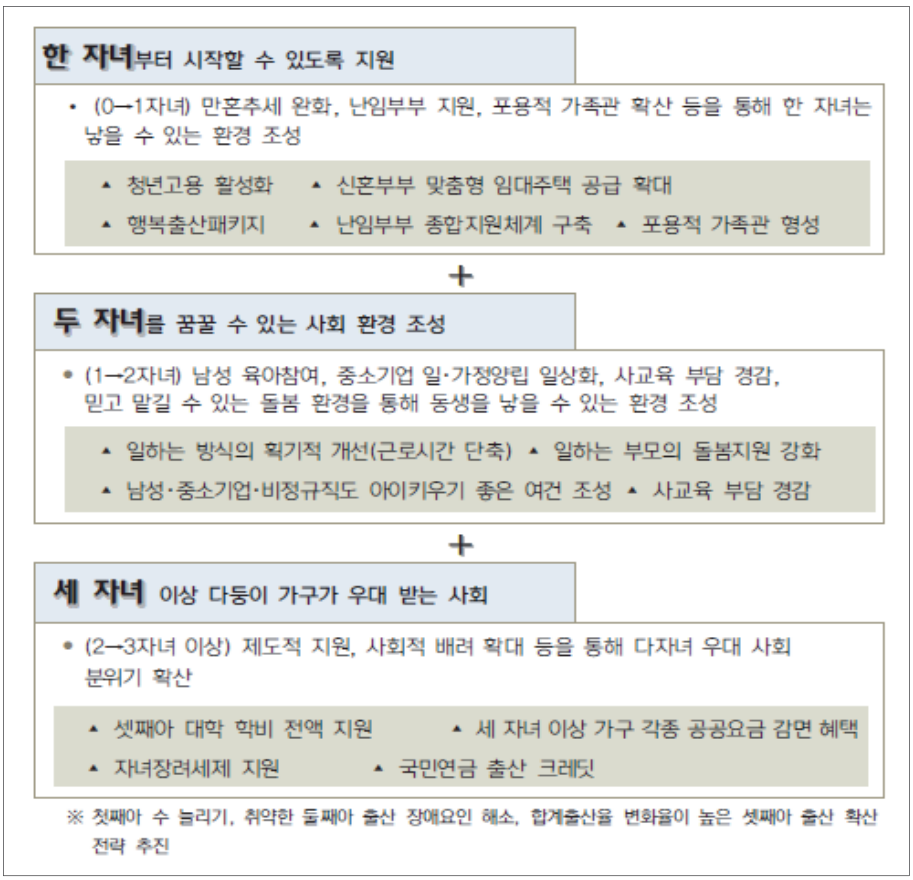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p. 43.

□ 그러나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최저치를 경신하였고, 출산 장려 위주의 저출산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여론이 커짐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산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17. 12. 26)', '저출산 핵심과제('18. 7. 5)'를 발표하며 출산율과 출생아 수를 목표로 하는 국가주도 출산정책에서 삶의 방식에 대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으로의 전환을 표방하게 되었고, 이는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을 반영한 것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8. 12. 7: 3;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2020. 3. 17 인출[8]).

○ 또한 가족관점에서는 기존에 결혼가족, 3자녀 이상 다자녀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아이 중심, 모든 형태의 가족 포용으로 전환되었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18. 12: 1).

○ 특히, 많은 가구가 다자녀 지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자녀 지원 확대를 위하여 다자녀의 기준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부터'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을 밝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2018. 12. 7).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재분배 등을 포함한 다자녀 기준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을 고려하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음(이데일리, 2020. 3. 25기사)[9].

[그림 Ⅲ-1-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패러다임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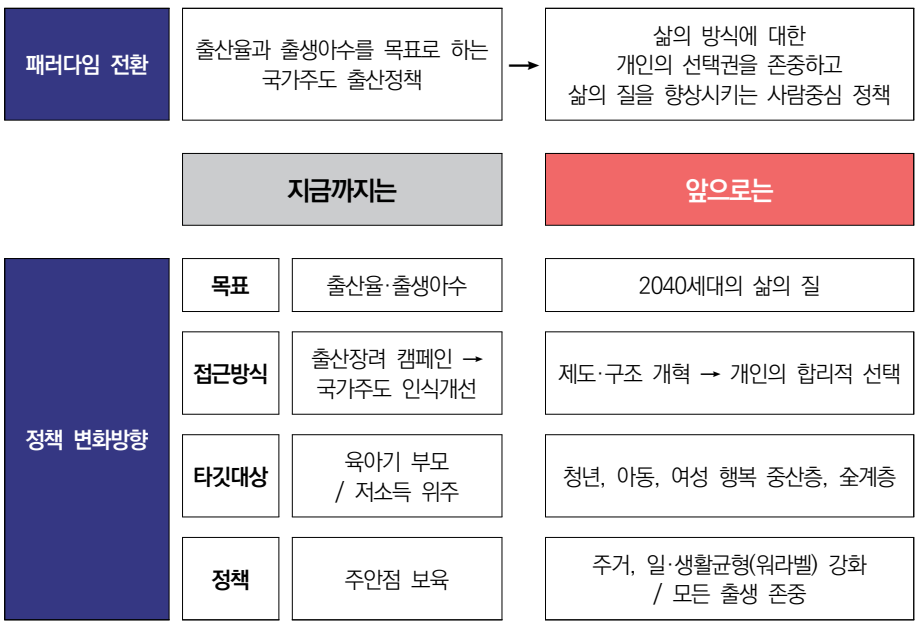

자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www.betterfuture.go.kr, (2020. 3. 17 인출).

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www.betterfuture.go.kr, (2020. 3. 17 인출).
9) 이데일리(2020. 3. 25기사). 서형수 "2~3자녀에 대한 지원 보강…차등 지원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604838, (2020. 3. 25 인출).

2.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지원 정책

□ 현행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 Ⅲ-2-1 참조).

○ 주거 안정 지원 사업으로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지원, 금리우대 지원 등이 있으며, 주거안정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모두 3자녀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자녀 가구에 국한한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지원하는 기본공제[10]가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자동차의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운영중임. 단,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는 일몰 사업[11]이라는 한계가 있음.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공공기관의 공공요금 할인 제도가 다자녀 가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지원 제도로,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이 있음.

○ 이 외에 교통 관련 지원으로 공공건물의 주차요금 할인과 코레일 공사의 기차요금 할인 지원 등이 있음. 기타 2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적용(2자녀 이상) 등의 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됨. 2019년에는 기차요금 할인이 KTX는 3자녀에서 2자녀 기준으로 완화됐으며(연합뉴스, 2019. 1. 24기사)[12], SRT는 3자녀 기준으로 열차편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렸음(한겨레, 2019. 5. 8기사)[13]. 또한 최근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대상이 2020년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또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다자녀(2명 이상)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더불어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등이 확대됨.

10) 본고에서 기본공제라 함은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의미함(이하 동일).
11) 시한이 정해진 사업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제도는 대체로 당해연도 연도말까지로 시한을 정해두고 지원하고 있음.
12) 연합뉴스(2019. 1. 24기사). 코레일, 다자녀 가족·임산부 등 KTX 운임 할인 확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98612 (2020. 4. 9 인출).
13) 한겨레(2019. 5. 8기사). SRT, 임산부·다자녀 등 30% 할인 열차편 확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52988 (2020. 4. 9 인출).

〈표 Ⅲ-2-1〉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의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근거 및 지원기관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 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 쌍둥이 포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내 긴급 수술·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로 입원·수술한 의료비1)	- 미숙아: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 이상아: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 질환 미숙아) 미숙아 출생체중별 최고 지원 금액(3~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최고 지원금액(5백만원)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신생아 -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 시,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첫째 쌍둥이 포함)	-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지원(AOAE 1만원, AABR 2만 7,000원) - 재검(refer) 판정 시 난청 확진 검사비 지원 - 난청 확진아 보청기 지원	모자보건사업안내
육아용품 비용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기저귀 - 영아(0~24개월)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수급가구 등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 사망, 특정질병 등 모유수유 불가능한 경우 등	-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영아별 지원 - 기저귀: 월 6만 4천원 - 조제분유: 월 8만 6천원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주거 안정 지원	주택특별 공급	- **3명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등인 경우 가구원수가 4명이상인 경우	- 건설량의 10%의 범위에서 한차례에 한해서 1세대 1주택 특별 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1항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10%의 범위에서 1세대 1주택 우선 공급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득/자산요건 충족 시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10%범위에서 1세대 1주택 기준 장기전세주택 우선 공급(20년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및 제18조, LH 청약센터, SH 서울주택도시공사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근거 및 지원기관
	금리우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주택구입자금이나 전·월세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저리로 대출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전세자금 보증(특례)	-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급한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 이내	- 보증한도: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 80%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보유주택가격 9억원 초과하지 않아야 함)	한국주택금융공사
세액 공제	기본공제	- 자녀 수에 따라 차등	- 자녀 1명 연 15만원 - 2명 연 30만원 - 3명이상인 경우 연 30만원과 2명 초과 1인당 연 30만원 합산	소득세법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둔 가구	-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감면신청을 하는 1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 **다자녀 가구(세 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미혼대학생 - 조건: 소득 8구간 이하, 국내대학, 국가장학금 1유형 성적 기준 충족 시	- 등록금 범위 내 연간 450만원 기준 (단, 기초~3구간 520만 원 한도로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원)	한국장학재단, 장학금규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교육기본법(제28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1조),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다자녀(3인 이상)가구**는 소득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이용	- 대출금액: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 대출금리: 2.0%(2020년 1학기 기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9조 제1항, 교육부고시 제2020-216호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 농어촌지역 주소로 6개월이상 거주한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지역 주소로 6개월이상 거주하며 농어업 종사 대학생 본인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소득구간 관계없이 혜택 - 성적기준: 직전학기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 융자금리: 무이자 - 등록금 전액, 생활비는 불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3조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근거 및 지원기관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우선입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100점 입소우선순위 점수 부여 - 단, 항목별 점수 합산결과 고득점자가 우선	영유아보육법 제28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8의3 제1호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구 중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만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우선적으로 제공	- 영아종일제, 시간제,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아이돌봄지원법 제13조의2 제7호, 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2 제2항
공공 요금 할인	전기요금 감액	-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월간 전기요금 30%할인(월 1만6천원 한도)	한국전력공사 약관 제67조제6항 제4호가목
	상하수도 요금 할인	- 지자체별 각기 다르게 적용	- 지자체 및 지역사업본부별로 할인 및 감면 혜택이 각기 다름 - (서울기준) 하수도사용료 20% 감면	각 지자체 및 지역사업본부별로 시행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지역사업본부별 각기 다름	- 지자체 및 지역사업본부별로 할인/감면혜택 상이 - (서울기준) 취사난방용 동절기 6천원 할인, 4~11월 1,650원 감면, 취사용 도시가스 월 420원 할인.	각 지자체 및 지역사업본부별로 시행
	에너지 복지요금 (난방비 감면)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이상 또는 손(孫)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	- 지원금액: 월 4천원 - 지원적용기간: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1/2이상 거주 조건) - 월 지원금액의 12개월치 일괄지급	한국지역난방공사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 열공급규정(한국지역난방공사 규정) 제46조
교통 관련 할인	주차요금 할인	- **다자녀 가구**	- 주차장 요금의 50% 할인	한국공항공사 소속 14개 국내 공항
	기차요금 할인	- 코레일멤버쉽 회원 중 **만25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회원(다자녀 가구 등록자)	-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 어른 운임 30% 할인	한국철도공사 내부방침
		- SRT 다자녀(3명 이상)가구	- 등록된 가족 중 최소 3명이상이 이용하는 경우 - 지정시간대 운임 30%할인	SRT 내부방침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원 근거 및 지원기관
기타 지원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 자녀수에 따라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안에 추가로 산입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 만12세이하, 만65세이상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막내가 12세 미만인 가족** - 등록장애인과 보호자 1인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용사증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장료 면제 (어른 1,000원, 청소년 700원, 어린이 500원)	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주: 1)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가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
2)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는 지역의 공동주택 거주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하는 제도

자료: 1) 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2017).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연구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중심으로. p.54~57.
2) 최효미(2017).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통한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방안. 〈표 1〉을 수정 보완함.
3)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p.199~200, 206, 210, 261.
4) 복지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041&welInfSno=237&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20. 2. 20 인출).
5) 복지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041&welInfSno=327&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20. 2. 20 인출).
6) 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50 (2020. 2. 13 인출).
7) 복지로, 다자녀가구 특례 전세자금보증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276 (2020. 2. 13 인출).
8) 정부 24,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4586 (2020. 3. 3 인출).
9) 생활플러스,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http://life.korea.go.kr/content/contentView.do?tlsSeq=466&svcId=140000000002&menuCode=010000&menuCode2=010100 (2020. 3. 3 인출).
1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1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1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1 (2020. 3. 3 인출).
1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2 (2020. 3. 3 인출).
1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난방비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3 (2020. 3. 3 인출).

가. 의료비 지원

□ 다자녀가구 대상 의료비 지원 정책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과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소득기준이 있는 정책이나 자녀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정책 모두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며 쌍둥이도 다자녀로 인정되는 정책임.

1)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2자녀)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및 선천성 장애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환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보건복지부, 2019: 193)

○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이며,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됨(보건복지부, 2019: 200).

○ 지원내용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의 수술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미숙아는 체중별 최고 1,000만원까지 지원되며, 선천성 이상아는 최고 500만원까지 지원됨(복지로, 2020. 2. 20 인출)[14]

〈표 Ⅲ-2-2〉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금액

구분	1인당 최고지원액			
	2.5kg 미만~2.0kg, 재태기간 37주 미만	1.5kg~2.0kg미만	1kg~1.5kg 미만	1kg 미만
미숙아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선천성이상아	500만원 (지원 의료비 금액별 지원율 차등 적용)			
선천성이상 + 미숙아	8백만원	9백만원	12백만원	15백만원

주: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경우, 출생 후 28일 이내 의료기관에서 질병코드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로서, 출생 후 6개월 이내 선천성이상을 치료하기 위해 입원하여 수술하고 그에 따른 치료를 한경우의 의료비(보건복지부, 2019: 210)

자료: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p.208, 210, 212, 213.

14) 복지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327, (2020. 2. 20 인출)

2)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2자녀)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사업은 선천성 난청을 조기진단하고 조기 재활을 통해 난청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언어·지능발달장애, 사회부적응 등을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임(보건복지부, 2019: 258).

○ 검사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의 신생아이며, 다자녀(2명 이상)가구에서 출생한 신생아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지원되고, 첫째로 출생한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됨(보건복지부, 2019: 261). 검사는 출생 후 2~3일 이내에 실시 권장하며, 늦어도 29일(신생아 기간) 이내 실시할 것을 권고함(보건복지부, 2019: 261).

○ 지원내용은 신생아 청각선별검사비 외래검사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데 금액은 5,000원~25,000원이고 진료비는 제외함(보건복지부, 2019: 264). 또한 청각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된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를 7만원 내 지원함(보건복지부, 2019: 261).

나. 육아용품비용 지원

1)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중위소득 80% 이하, 2자녀)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은 2015년 이래 실시된 사업으로 기존에는 수급가구 등의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하였으나, 2020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를 충족하는 자녀 2인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게 지원이 확대됨.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를 근거로 2015년 이래 실시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보건복지부, 2019: 333).

○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수급 가구 대상으로 하며, 2020년에는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가구도 포함됨(복지로, 2020. 2. 13 인출)[15].

○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함(복지로, 2020. 2. 13 인출)[16].

○ 지원내용은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하는데 기저귀는 월 6만 4천원이며,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원임(복지로, 2020. 2. 13 인출)[17].

다. 주거 안정 지원

1) 주택특별공급 (3자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공급은 일반공급, 우선공급, 특별공급이 있는데, 이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처럼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공급과의 청약경쟁 없이 1회에 한하여 별도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18].

○ 지원대상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1항에 의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현재 건설 공급하는 주택의 10%(최대 15%[19])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20].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주택분양을 받는 사람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 제48조, 별표 2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

15) 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50, (2020. 2. 13 인출)
16) 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50, (2020. 2. 13 인출)
17) 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50, (2020. 2. 13 인출)
1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19) 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율, 다자녀가구의 청약현황 등을 고려하여 입주자모집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15%
2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하여 다음 세부요건 〈표 Ⅲ-2-3〉을 충족해야 함.

- 다만, 다자녀가구로서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인 사업주체가 건설하여 공급하는 85㎡ 이하의 주택을 특별공급 받고자 할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120% 이하여야 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21].

〈표 Ⅲ-2-3〉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제도 세부요건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대상요건</td><td>•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나 입양아를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포함해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td></tr>
<tr><td>입주자저축 요건</td><td>• 국민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하였을 것
• 민영주택 특별공급: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다음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단위 : 만원)
<table>
<tr><th>지역 /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th><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th>그 밖의 광역시</th><th>특별시 및 광역시 제외지역</th></tr>
<tr><td>85제곱미터 이하</td><td>300</td><td>250</td><td>200</td></tr>
<tr><td>102제곱미터 이하</td><td>600</td><td>400</td><td>300</td></tr>
<tr><td>135제곱미터 이하</td><td>1,000</td><td>700</td><td>400</td></tr>
<tr><td>모든 면적</td><td>1,500</td><td>1,000</td><td>500</td></tr>
</table></td></tr>
</table>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 선정기준은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중 경쟁이 있을 시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의 배점항목에 대하여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22]. 상세 배점

2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2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기준표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녀수가 3명 이상(30~40점), 무주택기간 1년 이상(5~20점), 영유아 자녀수 1명 이상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 1년 이상(각 5~15점)에 해당할 경우 배점이 높은 편임(표 Ⅲ-2-4 참조).

〈표 Ⅲ-2-4〉 다자녀가구 주택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 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5명 이상	40	자녀(태아나 입양아 포함. 이하 동일)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4명	35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2명	10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 경과된 자
무주택 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10년 미만	15	
		1년 이상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 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10년 미만	10	
		1년 이상 5년 미만	5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자료: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1. 배점기준표.

2)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3자녀)

□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이 결혼-출산-육아의 생애주기별 사다리가 되는 점을 고려하여 다자녀 가구가 불편 없이 거주할 수 있도록 큰 평형 임대

주택 배정물량을 확대하여 자체 제도개선을 한다고 밝힘(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2016. 12. 25: 1~3).

○ 국민임대주택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23].

○ 지원대상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은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국민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우선 공급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24].

-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으려면 소득요건을 갖춰야 하며, 다자녀가구로서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때엔 다음 〈표 Ⅲ-2-5〉의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25].

〈표 Ⅲ-2-5〉 다자녀가구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

구분	우선공급 소득요건
전용면적 50㎡ 미만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 수가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함. 이하 같음)의 50% 이하인 사람 ■ 위 기준에 따른 공급 후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50㎡ 이상 60㎡ 이하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사람
전용면적 60㎡ 초과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구분	**다자녀가구 자산요건**
부동산가액 및 총자산가액	■ 총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3분위의 순자산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함)
자동차가액	■ 2천5백만원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운송장비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다만, 천원 단위 이하는 버림)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2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2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2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3)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3자녀)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제도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 중 일정비율을 20년 이상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하는 다자녀가구에게 우선공급하는 제도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3 인출)[26].

○ 지원대상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우선공급받고자 할 경우, 그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우선공급 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3 인출)[27].

4) 금리우대 (2자녀)

□ 다자녀가구 금리우대 정책은 주택구입자금 대출(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전세자금 대출(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으며, 유형에 따라 2~3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금리우대를 하고 있음.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2~3자녀)은 주택도시기금이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주는 제도로 「2020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을 근거로 특히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대해 금리우대지원을 하고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28]. 지원내용은 일정조건 하에서 최고 2억 6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것이며, 다자녀가구는 2자녀가구 0.3%p 금리우대, 3자녀 이상 가구 0.5%p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29].

2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2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2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구입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2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구입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표 Ⅲ-2-6〉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구분	내용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신혼,2자녀이상가구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85㎡ 이하 5억이하의 주택(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지역은 100㎡)
대출한도	■ 최고 2억 6천만원 이내
연이율	■ 2.00~3.15%
융자기간	■ (0~1년 거치)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우대조건 (최저금리 1.5%)	■ 2자녀 가구 0.3%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 이상 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구입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3자녀)은 일정조건 하에 최고 2억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30].

〈표 Ⅲ-2-7〉 주거안정 구입자금 대출

구분	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생초 연 7천만원)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LTV 70%이상 주택 또는 1년이상 임차중인 주택 ■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연이율	■ 2.8~3.0%
융자기간	■ 1년거치 19년 상환, 3년거치 17년 상환, 5년거치 25년상환
우대조건	■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구입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3자녀)은 일정조건 하에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을 최고 7천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로, 셋 이상의 자녀를 둔 세대는 금리우대를 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31].

3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구입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3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구입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표 Ⅲ-2-8〉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

구분	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이 연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전용면적 60㎡ 이하, 1.5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LTV 50%한도)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연이율	■ 2.8%
융자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9회 연장 가능)
우대조건	■ 다자녀가구 0.5% 금리우대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구입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2~3자녀)은 근로자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로 다자녀가구에 금리우대가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32]

〈표 Ⅲ-2-9〉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구분	요건
대상자격	■ 부부합산 총소득 5천만원 이하(단, 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는 6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순자산이 기준금액 이하인 무주택세대주
대상주택	■ 85㎡ 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 수도권 최고 2억원 이내, 지방 최고 1억 6천만원 이내(2자녀 이상 가구만 해당)
연이율	■ 1.3~1.7%
융자기간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장 10년 가능)
우대조건	■ 2자녀가구 0.3%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 3자녀가구 0.5%p 금리우대(중복 적용 가능)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3&cnpClsNo=2, (2020. 3. 12 인출).

5) 다자녀가구 전세자금보증(특례) (3자녀)

□ 다자녀가구 특례 전세자금보증은 민법상 미성년 자녀수가 3명 이상임을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가능한 자로서 1) 대한민국 국민이며, 2) 임차보증금 5억원(지방 3억원)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

3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3&cnpClsNo=2, (2020. 3. 12 인출).

상 지급한 세대주이며, 3) 본인과 배우자 합산 주택보유수가 1주택[33] 이내라는 상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증한도 최대 2억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의 80%를 보증해주는 제도임(복지로, 2020. 2. 13 인출)[34]. 이 중 특례조치인 부분은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이 생략된 것임(복지로, 2020. 2. 13 인출)[35].

라. 세액공제

1) 기본공제 (1자녀)

□ 정부는 과거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 소득공제를 할 때 기본공제 외에 일정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다자녀추가공제를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는 이를 자녀세액공제제도로 통합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수에 따라 세액공제를 하는 제도로 실시하고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36].

○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 2 제1항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으로서 7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서는 자녀의 수에 따라 1명 연 15만원, 2명 연 3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37].

〈표 Ⅲ-2-10〉 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자녀 수	공제금액	과세기간 출산 또는 입양 신고 시	
		공제대상자녀의 출생순위	공제금액
1명	연 15만원	첫째	연 30만원
2명	연 30만원	둘째	연 50만원
3명 이상	연 30만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합한 금액	셋째	연 70만원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세액공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33) 1주택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고, 보유주택의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34) 복지로, 다자녀가구 특례 전세자금보증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276 (2020. 2. 13 인출).
35) 복지로, 다자녀가구 특례 전세자금보증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276 (2020. 2. 13 인출).
3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세액공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3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세액공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2)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18세 미만 3자녀)

□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에 의거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38]. 자녀 수 산정은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는 포함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39].

○ 감면내용은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대상차량 하나에 해당할 경우 먼저 감면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40].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 사람과 공동등록하는 경우는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2019년 1월 1일부터 면제대상 자동차 중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나, 200만원 초과 시 85%만을 감면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41].

○ 감면신청은 감면대상 차량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42].

〈표 Ⅲ-2-11〉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득세 경감

구분	대상차량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승용자동차(이 경우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
승합자동차	■ 승차정원이 15명 이하
화물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이륜자동차	■ 배기량 250cc 이하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취득세 경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3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취득세 경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3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취득세 경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4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취득세 경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4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취득세 경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4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취득세 경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마. 교육비 지원

1)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3자녀)

□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사람들이 고등교육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장학제도와 학비보조 제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대학생은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통해 등록금 부담을 경감 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43].

○ 지원대상은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 대학생이며 국내대학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다자녀가구의 가구원인 대학생이 미혼이면 연령무관하며, 다자녀가구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44].

○ 지원금액은 소득구간(분위)별로 해당 학기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차등 지원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45].

〈표 Ⅲ-2-12〉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구분	내용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정의 대학생(자녀에 한함, 연령 무관)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재산 환산액이 949.8만원 이하인 대학생	
성적기준	신·편입생, 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B학점 이상 획득한 자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는 C학점 이상 적용
지원금액	1구간~3구간 (중위소득 70% 이하)	■ 학기당 260만원
	4구간~8구간 (중위소득 200% 이하)	■ 학기당 225만원

주: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자녀이면 출생순위에 관계없이 지원
자료: 교육부(2020. 1).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p.13.

4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4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4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2)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3자녀)

□ 다자녀(3인 이상) 가구는「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3 인출)[46].

〈표 Ⅲ-2-13〉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구분	내용
자격요건	■ 신입생 : 대학 및 전문대학 진학 예정자 중 소득 8구간 이하이면서 대학의 입학허가를 획득한 자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 재학생 : 대학 및 전문대학 재학생 중 소득 8구간 이하이면서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최저학점이 12학점 이상인 경우 12학점) 이상 이수자 ※ 다자녀가구 학생의 경우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이용 가능
대상대학	■ 교육부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관한 협약을 맺은 대학
연령제한	■ 만 35세 이하[다만, 전문대학 계약학과(채용조건형) 및 선취업 후진학자 또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만 45세 이하]
대출금액	■ 등록금: 실소요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대출금리	■ 2.0%('20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기준)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3)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3자녀)

□ 정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3조에 따라 농촌지역 학생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고 농촌주민의 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농어촌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 융자를 하고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47].

○ 지원대상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지원자격요건을 갖춘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가구이며 소득구간에 관계없이 학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48].

4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4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48)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표 Ⅲ-2-14〉 다자녀가구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구분	내용
자격요건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며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는 성적기준을 통과한 것으로 인정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사람
융자금리	■ 무이자
융자가능 범위	■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최소 융자 가능 금액은 10만원 이상이며, 생활비는 융자불가함
융자가능 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2, (2020. 3. 12 인출).

바. 보육 및 돌봄서비스 지원

1) 어린이집 우선입소 (3자녀 또는 영유아 2자녀)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는「영유아보육법」제28조제1항 등에 의거 국가·지자체·사회복지법인·그 외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법인·단체등, 가정, 민간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3 인출)[49].

○ 다자녀 가구에게 어린이집 우선입소 제도는 할당제가 아닌 1순위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다양한 1순위 요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실제 이용자가 사는 지역의 특성, 해당연령반에 지원한 영유아의 여건에 따라 다자녀가구에게 실효성을 가질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음.

〈표 Ⅲ-2-15〉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순위	구분	순위	구분
1순위	수급자	2순위	기타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조손 가족
	차상위계층		입양된 영유아
	장애부모의 자녀 및 장애인인 형제자매의 영유아		가정위탁 보호아동

4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1, (2020. 3. 3 인출).

순위	구분			순위	구분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				동일 어린이집 재원중인 형제·자매
	다문화가족				
	제1형 당뇨아동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영유아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근로자			
		대학(원)생			
		취업준비자			
		예술인			
		자영업자	공통		
			일반		
			신규 자영업자		
			농·어업인		

자료: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 p.71~72.

2)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만 12세 이하 3자녀 또는 영유아 2자녀)

□ 아이돌봄서비스는「아이돌봄지원법」에 의거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다자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서 돌봄을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는 제도임(찾아가는 생활법령정보, 2020. 3. 3 인출)[50].

○ 아이돌봄서비스의 종류는 영아종일제서비스(만 3개월 이상~만 36개월 이하 영아), 시간제서비스(만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기관연계서비스(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가 있음.

- 영아종일제서비스는 1회 3시간 이상, 시간제 등 나머지 서비스는 1회 2시간 이상이 기본 이용시간이며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로 가능함(여성가족부, 2020: 11).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은 2020년 기준 서비스 종류별로 영아종일제 9,800원, 시간제 일반형 9,800원, 시간제 종합형 12,860원, 질병감염아동 11,860원, 기관연계 16,740원임(여성가족부, 2020: 11).

5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2 (2020. 3. 3 인출).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은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적용되는데 '가'~'다'형은 다자녀가정,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 중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이며, '라'형은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은 가정 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해당하며, 판정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기준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함(여성가족부, 2020: 12).
- 양육공백 가정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장애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부모 군복부, 입원, 모출산 등)을 말하며, 다자녀 가정 기준은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인 가정,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인 가정,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증)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 양육가정임(여성가족부, 2020: 29~30).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는 정부의 비용지원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가'~'다'형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다자녀가구는 만 12세 이하 3자녀 이상 또는 만 36개월 이하 2자녀 이상에 해당하면 서비스 우선제공 혜택을 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3 인출)[51].

-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가 아이돌보미와 양육공백가정을 매칭하여 가정방문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혜가 이루어지는지는 지역적 상황(공급과 수요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판단됨.

〈표 Ⅲ-2-16〉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유형별 지원내용

구분		시간제서비스 (일반형)					영아 종일제 서비스			
서비스 대상		만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					만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			
지원기준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120%이하	150%이하	150%초과	75%이하	120%이하	150%이하	150%초과
지원유형 (정부지원율)		가형 (75~85%)		나형 (20~55%)	다형 (15%)	라형	가형 (80%)	나형 (60%)	다형 (15%)	라형
이용요금		시간당 9,890원					시간당 9,890원			
	정부 지원	A형	8,407원	5,440원	1,484원	-	7,912원	5,934원	1,484원	-
		B형	7,418원	1,978원	1,484원	-				
	본인 부담	A형	1,483원	4,450원	8,406원	9,890원	1,978원	3,956원	8,406원	9,890원
		B형	2,472원	7,912원	8,406원	9,890원				
지원시간		1회 2시간 이상 사용 원칙					1회 3시간 이상 사용 원칙			
	정부 지원	연간 720시간 이내					월 60~200시간 이내			

주: A형은 2013. 1. 1 이후 출생아, B형은 2012. 12. 31 이전 출생아 해당
자료: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p. 44~47.

5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2 (2020. 3. 3 인출).

사. 공공요금 할인

1) 전기요금 감액 (3자녀)

□ 전기료 감면은 「전기사업법」에 의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에 따라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52].

○ 이 제도에서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 또는 손(孫) 3인으로 표시된 가구를 말하며, 3자녀가구 전기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월 전기요금의 30%(16,000원 한도 내)를 감면 받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53].

○ 신청방법은 전기요금 할인신청서를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모바일, 지사방문, 우편 및 FAX로 신청가능하고,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을 신청할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54].

2) 상하수도 요금 할인 (지자체별 상이, 대체로 3자녀)

□ 정부 24에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살펴보면, 대체로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의 기준으로 월 약 2천원에서 5천원 혹은 일정량, 요금의 30% 감면 등 지자체 수도사업소별로 지원내용이 매우 상이하며, 대부분 방문신청만 가능하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였음.

○ 경기 오산시의 경우, 관내 환경사업소 수도과가 소관기관이며, 만 19세 미만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수도요금을 매달 5톤(2,250원)씩 감면하고 있으며,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할 수 있음(정부 24, 2020. 3. 12 인출)[55]

5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5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5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55) 정부 24,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5톤 감면(경기 오산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0000000071, (2020. 3. 12 인출).

○ 경기 평택시의 경우, 관내 상하수도사업소 관리과가 소관기관이며, 첫째자녀가 만 18세 미만인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사용량의 5톤까지 감면되며, 읍, 면, 동주민센터에 접수할 수 있음(NSP통신, 2018. 8. 22기사)[56]

○ 경기 시흥시의 경우,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중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 10㎥에 해당하는 가정용 수도요금(상하수도, 물이용부담금)이 감면되며,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함(정부 24, 2020. 3. 12 인출)[57].

○ 경기 부천시의 경우, 18세 미만의 세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부과된 상수도 요금의 10%를 감면하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함(정부 24, 2020. 3. 12 인출)[58].

○ 강원 정선군의 경우, 자녀 3명 이상이며 동거하는 가장 어린 자녀가 미성년자인 다자녀 가구는 세대별 월 사용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10톤(5천원)을 경감, 10톤 미만인 경우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하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함(정부 24, 2020. 3. 12 인출)[59].

○ 충남 천안시의 경우, 관내 맑은물사업소 관리과가 소관기관이며, 부 또는 모와 18세 미만 자녀 3인 이상이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구성일 경우 상수도요금 월 2천원을 감면하고 있으며, 다자녀 감면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맑은물사업소에 팩스로 송부하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불가함(정부 24, 2020. 3. 12 인출)[60].

〈표 Ⅲ-2-17〉 지역별 상하수도 요금 할인 내용

구분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정선군	충남 천안시
자녀 기준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만 18세 미만 3자녀 이상	3자녀 이상 (막내 만 15세 이하)	18세 미만 3자녀 이상	3자녀 이상 (동거하는 최연소 자녀 미성년자 조건)	18세 미만 3자녀 이상

56) NSP통신(2018. 8. 22기사). 평택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01491, (2020. 3. 12 인출).

57) 정부 24, 국민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증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경기 시흥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5789, (2020. 3. 12 인출).

58) 정부 24,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경기 부천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86000000184, (2020. 3. 12 인출).

59) 정부 24, 저소득층 및 장애인 상수도 요금 감면(강원 정선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9000000001, (2020. 3. 12 인출).

60) 정부 24,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충남 천안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7463 (2020. 3. 12 인출).

구분	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평택시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부천시	강원도 정선군	충남 천안시
요금 할인	월 5톤 (2,250원) 감면	월 5톤 감면	10㎥ 해당 수도요금 감면	요금 10% 감면	10톤 이상: 10톤(5천원) 경감, 10톤 미만: 구경별 기본요금 부과	월 2천원

자료: 1) 정부 24,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5톤 감면(경기 오산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0000000071, (2020. 3. 12 인출).
2) NSP통신(2018. 8. 22기사). 평택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01491, (2020. 3. 12 인출).
3) 정부 24, 국민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증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경기 시흥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5789, (2020. 3. 12 인출).
4) 정부 24,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경기 부천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86000000184, (2020. 3. 12 인출).
5) 정부 24, 저소득층 및 장애인 상수도 요금 감면(강원 정선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9000000001, (2020. 3. 12 인출).
6) 정부 24,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충남 천안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7463 (2020. 3. 12 인출).

3) 도시가스 요금 할인 (3자녀)

□ 도시가스 요금감면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지침」에 따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에게 도시가스요금을 경감하는 제도임.

○ 전기료 감면처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는 다자녀 가구에 해당되어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만 18세 미만의 자녀 확인은 주민등로표상 불가능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61].

○ 신청방법은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회사 및 주민센터에 증명서류 없이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 신청 시엔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를 지참해야 하고, 도시가스사 홈페이지 및 콜센터로 접수 가능함.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주민센터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요금경감 신청 가능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62].

6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2, (2020. 3. 12 인출).
6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2, (2020. 3. 12 인출).

〈표 Ⅲ-2-18〉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월별 요금 감면금액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월)			동절기 외(4월~11월)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매	계	도매	소메
6,000원	4,200원	1,800원	1,650원	1,160원	490원	420원	290원	130원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2, (2020. 3. 12 인출)

4) 에너지 복지요금(난방비 감면) (3자녀)

□ 에너지 복지요금 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복지지원 대상 및 다자녀가구의 지난 1년간 에너지복지요금을 대상 자격별 월정액으로 환급하는 제도임(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3 인출)[63].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제1항 및 한국지역난방공사 「열공급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는 난방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3 인출)[64].

○ 다자녀가구 난방비 지원 금액은 월 4,000원이며, 지원적용기간은 지급일(매년 8월) 기준 전년 3월에서 해당연도 2월까지 12개월간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난방 아파트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월 지원 금액의 1년분(12개월)을 일괄 지급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3 인출)[65].

○ 신청은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신청서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출해야하며, 다른 요금감면 정책처럼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로 셋째 자녀 출산 시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 가능함. 요금감면은 연 1회 소급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사업자가 열공급하는 공동주택 거주기간에 따라 월할 계산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3 인출)[66].

6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난방비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3, (2020. 3. 3 인출).
6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난방비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3, (2020. 3. 3 인출).
6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난방비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3, (2020. 3. 3 인출).
6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난방비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3, (2020. 3. 3 인출).

아. 교통관련 할인

1) 주차요금 할인 (공항별 상이, 2~3자녀)

□ 다자녀가구에 대한 주차요금 할인 서비스는 인천국제공항 및 한국공항공사 관할 지방공항에서 이용이 가능한데, 인천국제공항은 18세 미만 3자녀 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며, 한국공항공사 관할의 지방공항은 만 15세 이하 2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있음.

○ 인천국제공항은 다자녀 우대카드를 소지한 가구주(부/모) 명의의 차량에 대해 주차요금 50%를 감면하며, 다자녀우대카드 혹은 확인가능한 서류(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를 제시하면 가능함(인천국제공항, 2020. 3. 23 인출)[67]. 18세 미만 3자녀 가구주는 자동감면 홈페이지(http://parking.airport.kr)에 사전접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 기준 확인 후 이용가능함(인천국제공항, 2020. 3. 23 인출)[68].

○ 한국공항공사는 전국 11개 지방공항[69]에서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자녀가 만 15세 이하인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공항 주차요금은 50% 자동감면하는 서비스를 2020년부터 제공함(한국공항공사, 2020. 3. 23 인출)[70]. 이는 매번 신분증과 자녀카드를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이용은 홈페이지(https://parking.airport.co.kr/mchild)에 사전등록을 하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 연동으로 자동감면되며, 1회만 등록하면 막내자녀가 만 15세가 될 때 까지 지속 이용가능함(한국공항공사, 2020. 3. 23 인출).

2) 기차요금 할인 (코레일 2자녀, SRT 3자녀)

□ 다자녀 가정 철도운임 할인 제도는 코레일 및 SRT가 운영하고 있으며, 코레일은 2명 이상의 만 25세 미만 자녀를 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이 되며, SRT는 일반요금의 10~30% 할인을 특정 시간대에 운영하고 있음.

---

67) 인천국제공항, 주차 요금, https://www.airport.kr/ap_lp/ko/tpt/parinf/parfeeinf/parfeeinf.do, (2020. 3. 23 인출).
68) 인천국제공항, 주차 요금, https://www.airport.kr/ap_lp/ko/tpt/parinf/parfeeinf/parfeeinf.do, (2020. 3. 23 인출).
69) 김포(1월 1일부터), 김해, 제주, 대구, 청주, 울산, 광주, 여수, 사천, 군산, 원주(1월 중순부터)
70) 한국공항공사, 보도자료, 한국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도입, https://www.airport.co.kr/www/bbs/boardView.do?id=41&menuId=352&bIdx=3551441&page=1, (2020. 3. 23 인출).

○ 다자녀가구에 대한 철도운임 할인제도는「철도사업법」제9조의 2 제1항에 의거 코레일멤버쉽 회원 중 만 25세 미만 2자녀 이상을 둔 회원은 운임을 할인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71]. 이는 기존 3자녀 기준이었던 것을 2자녀 기준으로 2019년 상반기부터 완화한 것임(연합뉴스, 2019. 8. 15기사)[72]. 이용방법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가족구성원을 등록하고 가까운 역 창구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시하여 등록내용을 확인받은 후 이용가능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73].

〈표 Ⅲ-2-19〉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다자녀 행복 서비스)

구분	이용요금
할인범위	■ 어른 운임의 30% 할인[주] ■ 지연할인증 이외에 다른 할인과 중복 적용 없음 ■ 최저운임 이하로 할인불가 ■ 특실 요금 할인 불가
구매범위	■ 회원 당 1일 2회, 1개월 10회까지 구매 가능

주: KTX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좌석을 등록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 시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2, (2020. 3. 12 인출)

○ SRT(수서발 고속열차)도 내부규정으로 다자녀가족 등의 사회배려층을 대상으로 열차 이용 시 일반요금의 10~30%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있음. 다자녀가족 할인은 SR 회원 중 만 25세 미만의 3자녀 이상을 둔 회원으로 SR 홈페이지의 공공할인 이용신청에 등록 및 인증을 완료한 회원을 대상으로 하며, 열차별 승차율에 따라 지정된 좌석을 등록가족 중 최소 3명 이상(어른 1명 포함)이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의 30% 할인을 적용하며, 1일 2회, 월 10회로 혜택적용 횟수 제한이 있음(SRT 홈페이지, 2020. 4. 9 인출)[74].

- 그러나 할인승객의 열차시간대가 이른 아침 5~7시나 심야 10~11시에만

7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2, (2020. 3. 12 인출).
72) 연합뉴스(2019. 8. 15기사). 코레일 '공공 할인'확대로 상반기 52만명 혜택…60% 늘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01789 (2020. 4. 9 인출).
7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2, (2020. 3. 12 인출).
74) SRT 홈페이지, 할인제도. https://etk.srail.co.kr/cms/archive.do?pageId=TK0401010000 (2020. 4. 9 인출).

편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부선과 호남선에 12대에 불과하여 불편이 크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SRT에 요금할인시간대의 확대, 열차 추가 편성을 권고한 바 있음(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2019. 5. 16).

자. 기타지원

1)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2자녀)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은 실제 양육기에 적용되는 혜택은 아니므로 다자녀가구의 체감은 가장 늦게 될 수 있으며,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시기에 자녀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어 노년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임.

○ 정부는「국민연금법」부칙 제1조 및 제19조에 의해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 둘째 자녀 이상부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추가로 인정하여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고, 고령화 사회 대비 출산 장려하는 출산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 적용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75].

〈표 Ⅲ-2-20〉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내용

자녀 수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		
2명	- 12개월		
3명 이상	- 12개월 +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 합산		
	3명	**4명**	**5명 이상**
	30개월	48개월	50개월(최장 50개월 한도제한)

주: 1) 자녀는「국민연금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 따라 ①「민법」에 따른 친생자(親生子), 인지된 출생자, 양자(養子) 및 친양자(親養子), ②「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자녀를 뜻함.
2)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인 경우에는 부부의 합의에 따라 부부 중 어느 한 쪽의 가입기간에만 산입되며, 합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균등 배분해서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됨.

자료: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 출산크레딧은 자녀가 2명 이상인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장 50개월을 한도로 국민연금 가입기

7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간에 추가로 산입하는 제도이며, 자녀 수 별로 자녀 2명 12개월, 3명 30개월, 4명 48개월, 5명 이상 50개월이 인정됨. 부부 모두 가입자인 경우 부부 중 한명에게만 산입되고 합의가 되지 않은 경우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76].

○ 신청방법은 노령연급수급권을 취득한 때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신청하면 되고, 국민연금공단 지사, 우편·팩스·홈페이지 인터넷 청구 등이 가능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77].

2) 수목원 등 이용료 할인 (3자녀)

□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용료 감면정책은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이 있음.

○ 다자녀가구 국립수목원 관람료 면제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및 「국립수목원 관람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막내가 12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국립수목원을 무료[78]로 관람할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79].

○ 다자녀가구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5, 「국유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기준」에 의하여 다자녀 가정이 이용할 경우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80]. 이 제도의 '다자녀 가정' 기준은 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말하며, 입장료는 면제되고, 객실료는 객실요금의 30% 할인[81]받을 수 있으며, 감면받

7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77)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78) 참고로 국립수목원 입장료는 어른 1천원, 청소년 7백원, 어린이 5백원임(국립수목원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rest/rest_0102.html&mn=KFS_15_01_03_01&orgId=kna, 2020. 3. 12 인출).
79)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80)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기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함(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82].

3) 다자녀 우대카드 (지자체별 상이)

□ 다자녀 우대카드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 제10조 및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구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자녀수 기준(주로 2~3명)을 충족한 가구에 대해 마트, 식당, 레저·문화시설, 유·아동 관련 업체 이용 시 할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음(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2020. 3. 12 인출)[83].

〈표 Ⅲ-2-21〉 지역별 다자녀 우대카드

지역	카드명	지역	카드명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	강원	반디다복카드
부산	가족사랑카드	충북	아이사랑보너스카드
인천	아이모아카드	충남	다사랑카드
대구	아이조아카드	전북	아이조아카드
대전	꿈나무사랑카드	전남	다자녀행복카드
광주	아이사랑카드	경북	다복가정희망카드
울산	다자녀사랑카드	경남	경남 i-다누리카드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제주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세종	다자녀아이사랑카드		

주: 다자녀 우대카드의 기준, 혜택 및 절차는 각 지역별로 다름.
자료: 1)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3, (2020. 3. 12 인출).
2) 정부24, 다자녀아이사랑카드 발급 서비스 제공,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69000000211, (2020. 3. 12 인출)

차.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는 출생신고와 연동하여 양육수당, 다자녀 공공요금 감면 등 전국 공통서비스 및 출산지원금 등 지자체 개별 서비스를 주민센터 또

81) 비수기 주중만 해당
8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8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3, (2020. 3. 12 인출).

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임(정부 24, 2020. 3. 23 인출)[84].

○ 본 서비스의 근거는 행정안전부예규 제64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시행 2019. 4. 26)이며,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업무를 통합 처리하는 시군구, 읍면동 및 시군구 보건소에 적용함(동규정 제2조).

○ 주로 아동수당, 양육수당, 해산급여,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외에 앞서 다자녀 지원정책으로 언급한 다자녀가구 전기료 경감, 다자녀가구 도시가스료 경감, 다자녀 가구 지역난방비 경감 등을 통합신청 할 수 있음(동규정 제1조).

○ 또한 동규정 제9조(사전안내)에 따라 '임신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과 '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을 시군구에서 사전안내의 책무를 가짐. 동규정 [별표 2], [별표 3]을 살펴보면 다자녀 지원 정책이 대부분 해당되어 전국공통 및 지자체 시행정책의 사전안내 역할이 순기능으로 작용한다면 다자녀 가구의 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표 Ⅲ-2-22. 표 Ⅲ-2-23 참조).

〈표 Ⅲ-2-22〉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

적용	대상	서비스 명	소관기관
전국 공통	취학 전 8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84개월 미만 아동	아동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생후 1년 미만 영아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	한국전력공사
	다자녀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한국가스공사
		(다자녀) 전기료 경감	한국전력공사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한국지역난방공사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해산급여 지급	보건복지부
	장애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보건복지부
지자체	지방자치단체 자체 서비스 (지자체별로 정함)	(예시) 출산양육지원금	○○구
		…	

주: 1) 다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3자녀(또는 손(孫)) 이상
2) 출산가구 전기료 경감은 다자녀 전기료 경감과 중복할인 안됨
자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

84)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29, (2020. 3. 23 인출).

〈표 Ⅲ-2-23〉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다자녀)

적용	대상	서비스 명	소관기관	구비서류	신청 방법	신청 기관
전국 공통	다자녀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보건 복지부	부모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 확진 검사비 지원 시, 청각선별검사 쿠폰[재검(REFER) 체크], 진단서 및 검사비 영수증 추가	방문	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보건 복지부	진료비영수증, 통장사본, 출생증명서, 진단서(선천성이상아),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시·군·구청, 보건소
		(다자녀) 주택특별공급	국토 교통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최초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무주택 입증서류, 청약통장 가입확인서, 무주택서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방문	LH 공사
		(다자녀)주택구입, 전세 자금대출	국토 교통부	매매/전세계약서, 인감증명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방문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
		(다자녀) 도시가스료 경감	한국가스 공사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팩스, 우편	관할 도시가스회사
		(다자녀) 전기료 경감	한국전력 공사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방문, 우편	한국전력공사 지사, 아파트 관리사무소
		(다자녀) 지역난방비 경감	한국지역 난방공사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팩스, 우편, 인터넷	한국지역난방 공사 지사
		(다자녀) 자동차취·등록세감면	행정 자치부	가족관계증명서	방문	시·군·구청
지자체		(예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익월 15일	1회 일시금 지급 - 둘째 출생 : 00만원 - 셋째 출생 : 00만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읍·면·동 주민센터
		…				

주: 1) 다자녀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3자녀(또는 손(孫)) 이상
2) 다자녀 관련 내용만 발췌

자료: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표 3] 출산 서비스 사전안내 목록(제9조 관련).

3.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가. 지자체별 저출산 지원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현황

□ 이 절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별 출산지원 정책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이 중 다자녀 가구 지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실시되고 있는지를 개관함.

○ 이를 위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내부 자료를 기초로, 2019년 기준 '지자체 출산지원 정책 사례집' 등을 참고하여 수정 보완한 자료를 DB형태로 작성하여 분석함.

□ 2019년 기준 지자체의 저출산 지원 정책은 총 2,120개에 달하며, 출산 지원이 830개(39.2%), 육아지원 631개(29.8%), 임신 전후 지원 459개(21.7%) 순으로 많음.

○ 지역별로는 경기 345개, 경북 244개, 전남 232개 등의 순이나, 이는 해당 지역에 지자체 수 자체가 많은 것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음.

〈표 Ⅲ-3-1〉 지자체별 저출산 지원 정책 지원 분야(2019년 기준)

단위 : 개, %

지역	전체	지원분야				
		임신전후	출산	육아	가족	결혼
전국	2,120	459	830	631	111	89
(226)	100.0	21.7	39.2	29.8	5.2	4.2
서울	130	17	61	45	5	2
(25)	100.0	13.1	46.9	34.6	3.9	1.5
부산	145	29	55	43	12	6
(16)	100.0	20.0	39.9	29.7	8.3	4.1
대구	89	30	15	27	15	2
(8)	100.0	33.7	16.9	30.3	16.9	2.3
인천	69	19	22	19	9	0
(10)	100.0	27.5	31.9	27.5	13.0	0.0
광주	50	9	19	21	1	0
(5)	100.0	18.0	38.0	42.0	2.0	0.0
대전	54	8	18	23	4	1
(5)	100.0	14.8	33.3	42.6	7.4	1.9
울산	38	5	17	8	6	2
(5)	100.0	13.2	44.7	21.1	15.8	5.3
세종	9	4	2	2	1	0
(1)	100.0	44.4	22.2	22.2	11.1	0.0

지역	전체	지원분야				
		임신전후	출산	육아	가족	결혼
경기 (31)	345	77	115	118	21	14
	100.0	22.3	33.3	34.2	6.1	4.1
강원 (18)	115	22	55	32	2	4
	100.0	19.1	47.8	27.8	1.7	3.5
충북 (11)	111	12	49	34	8	8
	100.0	10.8	44.1	30.6	7.2	7.2
충남 (15)	173	38	65	52	11	7
	100.0	22.0	37.6	30.1	6.4	4.1
전북 (14)	129	20	55	39	6	9
	100.0	15.5	42.6	30.2	4.7	7.0
전남 (14)	232	62	105	49	0	16
	100.0	26.7	45.3	21.1	0.0	6.9
경북 (23)	244	64	94	69	3	14
	100.0	26.2	38.5	28.3	1.2	5.7
경남 (18)	176	42	78	46	7	3
	100.0	23.9	44.3	26.1	4.0	1.7
제주 (1)	11	1	5	4	0	1
	100.0	9.1	45.5	36.4	0.0	9.1

주: 지역 아래 ( )는 지역 내 시군구 수로, 제주의 2개 시는 행정시가 아님.
자료: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2019).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9).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결혼/임신/출산/육아.

□ 지자체의 저출산 지원 정책 총 2,120개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은 총 513(24.2%)에 해당함.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지원 분야가 출산(임신전후 사업 일부 포함)과 육아 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 지역별로 경기 91개, 경북 63개, 전남 47개 순으로 저출산 지원 정책이 많은 지자체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도 많은 특징을 보이지만,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자체의 수가 많은 것이 투영된 결과임.

□ 해당 지자체 내의 저출산 지원 정책 중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수의 비중은 울산이 43.3%로 가장 높고, 제주 37.5%, 서울이 33.3% 순임.

○ 출산 지원 정책 중 다자녀 가구 지원이 포함된 정책은 304개, 23.6%였으며, 육아 지원 정책 중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209개, 33.1%였음.

〈표 Ⅲ-3-2〉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지원 분야(2019년 기준)

지역	전체		지원 분야			
			출산		육아	
전국	513	24.2	304	23.6	209	33.1
서울	41	33.3	28	35.9	13	28.9
부산	36	28.4	22	26.2	14	32.6
대구	10	13.9	5	11.1	5	18.5
인천	13	21.7	9	22.0	4	31.7
광주	14	28.6	8	28.6	6	28.6
대전	7	14.3	3	11.5	4	17.4
울산	13	43.3	9	40.9	4	50.0
세종	1	12.5	1	16.7	0	0.0
경기	91	29.4	47	24.5	44	37.3
강원	34	31.2	24	31.2	10	31.3
충북	28	29.8	15	25.0	13	38.2
충남	34	22.1	19	18.5	15	29.4
전북	28	24.6	14	18.7	14	35.9
전남	47	22.1	29	17.7	18	36.7
경북	63	27.8	39	24.7	24	34.8
경남	50	30.3	30	25.2	20	43.5
제주	3	37.5	2	50.0	1	25.0

주: 1) 임신전후 지원은 출산 지원으로 포함하여 산출함.
2) 비중은 해당 부문 저출산 지원 정책 중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비중을 의미함. 예를 들어 서울지역 육아 지원 총 45개 중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은 13개로, 28.9%임.

자료: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2019).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9).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결혼/임신/출산/육아.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지원 방법을 살펴보면, 현금 지원이 408개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서비스 지원 35개, 현물 지원 32개, 바우처 지원 31개 순임.

○ 다자녀 가구 지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금 지원 정책은 주로 출산장려금 혹은 출산 축하금 등임.

○ 지역별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지원 방법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대다수 지역에서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표 Ⅲ-3-3〉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지원 방법(2019년 기준)

지역	전체	지원 방법				
		바우처	현금	서비스	현물	기타
전국	512	31	408	35	32	6
서울	40	1	37	1	1	0
부산	36	0	27	4	4	1
대구	10	0	8	0	1	1
인천	13	0	12	1	0	0
광주	14	0	11	2	1	0
대전	7	0	5	0	2	0
울산	13	1	9	0	1	2
세종	1	1	0	0	0	0
경기	91	9	68	11	3	0
강원	34	1	30	3	0	0
충북	28	1	26	0	0	1
충남	34	2	28	4	0	0
전북	28	1	24	1	1	1
전남	46	4	31	4	7	0
경북	64	3	50	3	8	0
경남	50	7	39	1	3	0
제주	3	0	3	0	0	0

주: 1) 기타는 인프라 및 교육홍보 사업 등이며, 상품권 및 쿠폰 등은 바우처로 분류함.
2) 분류기준이 모호하여 구분되지 않은 결측이 2개 존재함.
자료: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2019).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9).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결혼/임신/출산/육아.

□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지원 내용 또한 비용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성이 발견됨.

○ 전체 514개 사업 중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444개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기반 사업이 51개, 문화 사업 13개, 돌봄 사업이 6개였음.

○ 지역에 따라 경향성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강원지역과 전북 지역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돌봄 지원 사업이 많은 특징을 보임.

□ 한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에서 자녀 수가 증가할 수록 지원 수준도 높아지는 점증 지원 방식을 가진 정책은 44.6%인 229개 사업임.

○ 지자체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 자녀수에 따른 점증 지원 방식의 사업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서울이 63.4%로 가장 높고, 강원 61.8% 등임.

○ 반면,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이 1개인 세종을 제외하고는, 대전의 경우 7개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 단 한 개 사업만인 점증 지원 방식을 가지고 있어 가장 낮은 비중(14.3%)를 보임.

〈표 Ⅲ-3-4〉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지원 내용 및 점증 지원 여부(2019년 기준)

지역	전체	지원 내용				자녀수에 따른 점증지원방식	
		비용	기반	문화	돌봄		
전국	514	444	51	13	6	229	44.6
서울	41	39	2	0	0	26	63.4
부산	36	30	5	1	0	15	41.7
대구	10	8	1	1	0	5	50.0
인천	13	12	1	0	0	7	53.9
광주	14	11	2	0	1	3	21.4
대전	7	5	2	0	0	1	14.3
울산	13	9	2	2	0	7	53.9
세종	1	1	0	0	0	0	0.0
경기	91	78	10	3	0	33	36.3
강원	34	29	2	1	2	21	61.8
충북	28	25	2	1	0	10	35.7
충남	34	30	4	0	0	15	44.1
전북	28	19	3	3	3	13	46.4
전남	47	44	3	0	0	23	48.9
경북	64	55	9	0	0	28	43.8
경남	50	46	3	1	0	21	42.0
제주	3	3	0	0	0	1	33.3

자료: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2019).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9).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결혼/임신/출산/육아.

□ 점증 지원 방식의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녀수는 1명인 경우가 167개로 대부분이며, 2명인 경우 47개 사업,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0개 사업 등임.

○ 반면, 점증 지원 방식이 아닌 다자녀 가구 지원의 경우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녀수는 3명인 경우가 191개로 약 80%에 달하며, 2명부터 지원하는 경우

가 47개 사업임.

□ 즉, 지원 대상자에 자녀수 기준이 포함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은 총 475개인데, 이 중 191개 사업이 자녀가 3명이하일 때는 지원하지 않다가 자녀가 3명이상이 되는 순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다수의 지자체가 다자녀 가구의 기준점으로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를 정책 지원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음.

○ 다음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이지만 자녀가 1명일 때부터 지원하는 사업이 167개로 다음으로 많은데, 다만 이 경우는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지원의 수준이 높아지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지는 형태를 띠고 있음.

〈표 Ⅲ-3-5〉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점증 지원 여부 및 자녀수(2019년 기준)

단위 : 개, %

지역	점증 지원 시 지원 기준 자녀수					점증지원이 아닌 경우 지원 기준 자녀수				
	전체	1명	2명	3명	4명	전체	1명	2명	3명	4명
전국	227	167	47	10	3	248	1	47	191	9
서울	26	18	8	0	0	12	0	0	12	0
부산	15	2	13	0	0	17	0	1	15	1
대구	5	2	2	0	1	3	0	0	2	1
인천	7	5	2	0	0	5	0	0	5	0
광주	3	1	1	1	0	11	0	2	9	0
대전	1	1	0	0	0	5	0	1	4	0
울산	7	5	2	0	0	5	0	1	4	0
세종	0	0	0	0	0	1	0	0	1	0
경기	32	16	12	3	1	51	0	15	35	1
강원	21	17	2	2	0	12	0	2	10	0
충북	10	8	1	0	1	17	0	2	14	1
충남	14	13	1	0	0	15	0	1	12	2
전북	13	13	0	0	0	14	0	4	9	1
전남	23	21	0	2	0	21	0	6	14	1
경북	28	26	1	1	0	30	0	7	22	1
경남	21	18	2	1	0	27	1	3	23	0
제주	1	1	0	0	0	2	0	2	0	0

자료: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2019).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9).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결혼/임신/출산/육아.

□ 지자체가 저출산 지원 정책(출산, 육아 등)에 투입한 예산은 2019년 기준 총 1조 433억 4,2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되었음. 단, 광주 지역의 경우 영유아 보육료 지원(국고보조부분 포함)이 포함되어 과다 산정되었으므로 주의를 요함.

○ 지자체별 저출산 지원 정책 중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2,953억 3,300만원으로 약 28.3%에 해당함.

○ 지역별로 다자녀 가구 지원에 예산 투입 비중이 높은 지역은 경북(64.6%), 대구(59.4%), 전남(55.9%) 등이었음.

- 서울의 경우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수는 많지만, 이에 대한 예산 투입액 자체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음. 이는 서울의 경우 자녀가 3명이상인 다자녀 가구의 비중 자체가 높지 않은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됨.

〈표 Ⅲ-3-6〉 지자체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예산(2019년)

단위 : 백만원, %, (개)

지역	전체	다자녀 가구 지원	
전국	1,043,342	295,333	28.3
서울	89,740	15,943	17.8
부산	50,453	11,703	23.2
대구	10,932	6,489	59.4
인천	40,123	9,984	24.9
광주	267,689	3,000	1.1
대전	9,307	4,355	46.8
울산	25,688	12,795	49.8
세종	6,746	900	13.3
경기	172,583	58,645	34.0
강원	60,639	9,009	14.9
충북	45,169	35,176	77.9
충남	56,337	11,231	19.9
전북	23,031	12,054	52.3
전남	51,838	28,993	55.9
경북	54,288	35,043	64.6
경남	61,337	30,471	49.7
제주	17,442	9,542	54.7
N	(1,874)	(456)	-

주: 광주 지역은 영유아 (부모) 보육료 지원 총액(224,850백만원)이 포함되어 있어 예산 총액이 과다 산정되었음.
자료: 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2019).
2)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9).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결혼/임신/출산/육아.

4. 소결

□ 법령상에서 다자녀가구 또는 다자녀가정의 일반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개별 법률에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가구로 분류하기도 함(법제처·찾기 쉬운생활법령정보, 2019. 6. 15: 4).

□ 현행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현황을 의료비 지원, 육아용품비용지원, 주거안정지원, 세액공제, 교육비 지원, 보육 및 돌봄서비스 지원, 공공요금할인, 교통 관련 할인, 기타지원 등으로 나누어 살펴봄.

○ 주거 안정 지원 사업으로 주택특별공급, 국민임대주택 지원, 금리우대 지원 등이 있으며, 주거안정 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모두 3자녀 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세액 공제의 경우에는 특별히 다자녀 가구에 국한한 지원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자녀수에 따라 공제액을 차등 지원하는 기본공제[85]가 있으며, 18세 미만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 자동차의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운영중임. 단,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제도는 일몰 사업이라는 한계가 있음.

○ 공공요금 할인 제도가 다자녀 가구들 사이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지원 제도로, 전기요금 감면, 상하수도 요금 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등이 있음.

○ 이 외에 교통 관련 지원으로 공공건물의 주차요금 할인과 코레일 공사의 기차요금 할인 지원 등이 있음. 기타 2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에게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가 적용되고 있음.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 적용(2자녀 이상) 등의 제도가 추가적으로 도입됨. 2019년에는 기차요금 할인이 KTX는 3자녀에서 2자녀 기준으로 완화됐으며, SRT는 3자녀 기준으로 열차편을 기존보다 2배로 늘렸음.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의 대상이 2020년에 기준 중위소득 80%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로 확대되었으며,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과 선천성 난청검사 지원 또한 지원대상이 확대되어 다자녀(2명 이상)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더불어 다자녀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등이 확대됨.

85) 본고에서 기본공제라 함은 소득세법 제59조의2 자녀세액공제의 기본공제를 의미함(이하 동일).

〈표 Ⅲ-4-1〉 전국 공통 및 공공기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의료비 지원	육아용품비용지원	주거안정지원	세액공제	교육비지원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 • 조제분유 지원	• 주택특별공급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 금리우대 • 전세자금보증(특례)	• 기본공제 •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국가장학금 지원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융자
보육 및 돌봄	**공공요금 할인**	**교통관련 할인**	**기타지원**	
• 어린이집 우선입소 •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 전기요금 감액 • 상하수도 요금할인 • 도시가스 요금할인 • 에너지 복지요금	• 주차요금 할인 • 기차요금 할인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주: Ⅲ장에 제시한 다자녀 지원 사업의 요약표임.

□ 2019년 기준 지자체의 저출산 지원 정책은 총 2,120개에 달하며, 출산 지원이 830개(39.2%), 육아지원 631개(29.8%), 임신 전후 지원 459개(21.7%) 순으로 많음.

○ 지자체의 저출산 지원 정책 총 2,120개 중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은 총 513(24.2%)에 해당함.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지원 분야가 출산(임신전후 사업 일부 포함)과 육아 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지원 방법을 살펴보면, 현금 지원이 408개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서비스 지원 35개, 현물 지원 32개, 바우처 지원 31개 순임.

○ 다자녀 가구 지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현금 지원 정책은 주로 출산장려금 혹은 출산 축하금 등임.

○ 지역별에 따라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지원 방법이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으며, 대다수 지역에서 출산장려금과 같은 현금 지원에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 한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에서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지원 수준도 높아지는 점증 지원 방식을 가진 정책은 44.6%인 229개 사업임.

○ 점증 지원 방식의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녀

수는 1명인 경우가 167개로 대부분이며, 2명인 경우 47개 사업, 3명 이상인 경우에는 10개 사업 등임.

○ 반면, 점증 지원 방식이 아닌 다자녀 가구 지원의 경우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자녀수는 3명인 경우가 191개로 약 80%에 달하며, 2명부터 지원하는 경우가 47개 사업임.

Ⅳ

해외 다자녀 가구 지원 사례

01 프랑스

02 독일

03 스웨덴

04 싱가포르

05 일본

06 소결

Ⅳ. 해외 다자녀 가구 지원 사례

□ 해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프랑스, 독일, 스웨덴, 싱가포르, 일본 사례를 선정하였으며, 선행연구들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은 해당 국가의 다자녀 가구를 위한 지원은 본 연구에서 데이터 및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보완·분석함.

○ 프랑스는 높은 출산율과 다자녀 비중을 보이는 국가이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지원이 다자녀 출산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됨(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74~76).

- 2017년 기준, EU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6명, OECD 국가의 평균 합계출산율은 1.7명이며,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은 1.9명으로 높은 수준임(OECD Family Database, 2020. 1. 28 인출).[86]

○ 독일은 1970년부터 오랜 저출산을 경험하였으나, 2011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상승하기 시작하여 출산율 반등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6년에는 합계출산율 1.59명으로 1973년 이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며, 2017년과 2018년에도 1.57명을 유지함(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2019. 11. 14 인출).[87]

○ 스웨덴은 양성 평등한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바탕으로 높은 여성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높은 출산율도 보이고 있음. 스웨덴은 보편적 지원 제도 안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줌.

○ 싱가포르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한 M&P Package 정책 안에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있음. 유럽 국가들과 차별되는 싱가포르의 정책들을 고찰함으로써 다른 측면에서 정책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됨.

---

86)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F2.1 : Fertility rate. (2020. 1. 28 인출).

87)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Geburten/_inhalt.html, (2019. 11. 14 인출).

○ 일본은 한국과 유사한 사회문화적 배경 속에서 저출산·고령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국가이며, 유사한 사회정책 체계 및 다자녀 지원서비스 제도를 가지고 있으므로(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 장에서는 각 나라의 중앙정부 또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점증적으로 지원이 강화되거나 명시적으로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한 지원 제도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일반적인 가족 지원 제도나 가구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하는 지원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각국의 지원 내용은 가족 및 아동 관련 현금 지원 제도, 휴가 및 휴직 지원, 보육료 지원, 기타 제도(세제 혜택, 주택 관련 지원 등)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음.

1. 프랑스

가. 프랑스의 출산 현황

□ 프랑스의 출산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인구대체수준인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합계출산율 1.3명 미만인 초저출산 현상은 나타난 바 없음. 현재 프랑스는 다른 유럽 국가 및 OECD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프랑스의 베이비붐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이어졌으며,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3~199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66명까지 감소함(노대명·김대중·김영아 외, 2018: 111; OECD Family Database, 2020. 1. 28 인출)[88].

○ 그러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출산율이 차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2.02명까지 증가함. 2010년 이후부터는 합계출산율이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합계출산율은 1.86명임(그림 Ⅳ-1-1 참조).

88)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F2.1 : Fertility rate.xls (2020. 1. 28 인출).

[그림 Ⅳ-1-1]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7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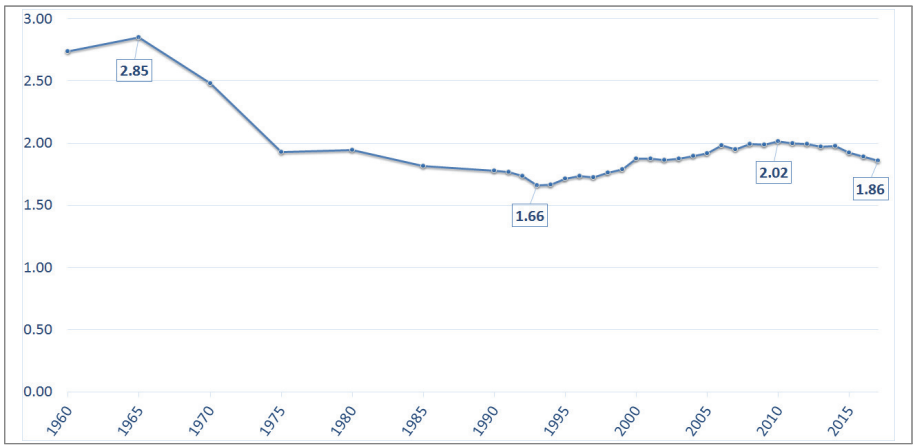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F2.1 : Fertility rate. xls를 바탕으로 재구성(2020. 1. 28 인출).

○ 대부분의 국가에서 첫 출산 연령의 증가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진 것에 비해 프랑스는 출산 연령의 증가가 출산율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음. 또한 프랑스의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은 국가 차원의 충분한 가족 지원과 발달된 보육 체계에 기인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Köppen, Mazuy & Toulemon, 2017).

□ 프랑스의 다자녀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높은 편임(그림 Ⅱ-2-1 참조).

○ 1990년대 후반 이후 프랑스의 출산순위별 출생아 비율을 살펴보면, 1998년 첫째아 비율 49.6%에서 2006년에는 57.8%로 계속 증가하였고, 둘째아와 셋째아는 감소 추세를 보임(표 Ⅳ-1-1 참조). 이를 통해 199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 증가는 다자녀 출산 증가보다는 한 자녀 출산 여성의 수 증가가 크게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추론할 수 있음.

○ 그러나 2013년 이후 데이터에서는 출산순위별 출생아 비율 양상이 달라짐. 첫째아 출생아 비율은 이전에 비해 감소하여 42~43% 수준이며, 둘째아 출산 비율은 35~36%, 셋째아 이상 출산 비율은 약 22%로 유지되고 있음.

- 2010년 이후 프랑스의 출산율 감소 추세를 감안하면, 프랑스의 출산양상이 양극화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음. 즉, 프랑스 여성이 출산을 하게 되면 다자녀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증가한 동시에, 비출산을 선택하는 비

율도 증가함.

- 2010년 이후 프랑스의 합계출산율이 다소 감소하였지만, 다른 OECD 국가 대비 여전히 높은 출산율 유지는 프랑스의 다자녀 출산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됨.

○ 2011년 기준 1935년~1955년 출생 코호트 여성의 무자녀 비율은 12%이며, 1960년생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 무자녀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1980년생 여성은 15%가 무자녀임(Köppen, Mazuy & Toulemon, 2017: 83~84).

- 현재 무자녀 비율의 증가, 즉 비출산 인구의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최근 출생 코호트의 무자녀 증가가 영구적인 것인지 첫 자녀 출산의 연기로 인한 것인지는 현재까지 명확하지 않음(Köppen, Mazuy & Toulemon, 2017: 92).

〈표 Ⅳ-1-1〉 프랑스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8~2017년)

년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1998	49.6	31.7	18.7
1999	51.2	31.1	17.7
⋮	-	-	-
2001	54.7	28.9	16.4
2002	56.1	28.4	15.5
2003	57.1	28.0	14.9
2004	57.7	27.5	14.8
2005	57.7	27.7	14.7
2006	57.8	27.4	14.8
⋮	-	-	-
2013	42.3	35.6	22.1
2014	42.5	35.6	21.9
2015	42.2	35.7	22.1
2016	42.3	35.6	22.2
2017	42.7	35.3	22.0

주: 원자료에 2000년, 2007~2012년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음.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F2.1 : Fertility rate. xls를 바탕으로 재구성(2020. 1. 28 인출).

나. 프랑스의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배경

□ 프랑스는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급격한 인구 감소를 경험한 이후 일찍이 1930년대부터 출산장려정책을 도입한 국가임. 프랑스 가족정책은 출산을 장려하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발달하였음. 따라서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다자녀 가구 지원을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1937년에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 제도가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인구정책적 관점에서 출산을 장려하고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1939년 가족 및 출산법(Code de la Familie et de la natalité)을 제정하여 다자녀 가구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 해당 법은 2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수당의 도입과 자녀수 증가에 따른 수당의 점증적 증액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함(이문숙, 2016; 손동기, 2019).

○ 1946년에 규정한 프랑스 사회보장 제도 내 가족 지원을 위한 수당은 가족수당, 출산전수당, 출산수당, 급여수당 4가지임. 1972년에는 가족 관련 수당 관련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가족수당국가기금(La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CNAF)이 설립되었음(이문숙, 2018).

□ 1980년대 초반까지는 아동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을 취함. 이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보다는 여성의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 기조에 기반한 것임. 이러한 정책 기조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의 지속적 증가와 1970년대에 지속된 출산율 감소에 따라 변화되어,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재조정됨(노대명·김대중·김영아 외, 2018).

○ 프랑스의 초기 다자녀 지원 제도 발달에서 주목할 제도는 가족수당(Les Allocations Familiales)과 1945년 소득세 가족분할계수 적용을 꼽을 수 있음. 프랑스의 가족수당 도입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의 가족 돌봄 활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에서 시작됨(손동기, 2019: 74).

○ 1985년에는 3세 이하 자녀를 둔 어머니가 경제활동과 자녀양육 중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부모교육수당이 도입되었으며, 어머니의 고용 지속을 보장하고 고용 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모성 고용보호의 제도적 토대가 됨. 부모교육수당은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가 2년 동안 휴직급여를 받는 제도로 프랑스 육아휴직급여의 시작임(노대명·김대중·김영아 외, 2018: 129).

○ 1980년대에는 부모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육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1990년에는 인증 받은 개인 보육사 고용에 대한 가족 지원 수당(Aide à la famille pour l'emploi d'une assistante maternelle agréée)이 도입되었음. 이는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0-6세 자녀 돌봄을 위해 개인 보육사를 고용할 경우 지급됨(노대명·김대중·김영아 외, 2018: 534~535).

□ 현재 프랑스의 가족 관련 수당제도의 핵심은 2004년 임신·출산 및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영유아육아수당(Presentation d'Accueil du Jeune Enfant: PAJE) 제도임. 영유아육아수당은 기존의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점증적 지원 강화의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제도임.

○ 영유아육아수당에는 출산·입양 지원금(Prime à la naissance),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 보육방식 자유 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nde de garde), 자녀교육 분담 수당(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이 포함됨(노대명·김대중·김영아 외, 2018: 322~325).

○ 이 중 출산·입양 지원금과 기초수당은 직접적인 가족 관련 수당 제도에 속함. 보육방식 자유 선택 보조금은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선택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보육료 지원에 해당하며, 자녀교육 분담 수당은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함.

□ 프랑스에는 별도의 다자녀 지원 제도도 있지만, 이보다는 현금 지원, 휴가 제도, 보육 서비스 등 보편적 가족 지원 제도 안에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지원을 점증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음.

다. 프랑스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1) 현금 지원 제도

□ 프랑스의 아동 및 가족 관련 현금지원 제도 중에서 영유아육아수당에 포함되는 출산·입양 지원금과 기초수당은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연소득 기준 상한선을 높여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의 지원 제도임.

○ 출산·입양 지원금[89]

89)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la-prime-a-la-naissance-et-adoption-caf (2020. 1. 30 인출)

- 자녀수에 따라 연소득 기준을 차등 적용하며 일시불로 지급.
- 지급 기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가진 가족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일 경우 지급되며, 맞벌이 및 한부모 여부에 따라 연소득 상한선 기준을 차등 적용.
- 지급액: 출산 자녀 당 944.51유로[90], 입양 자녀 당 1,889.02유로(2019년 4월 1일 이후 적용)

〈표 Ⅳ-1-2〉 프랑스의 출산·입양 지원금 연소득 상한선 기준

단위: 유로

자녀 수	외벌이 부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1 자녀	32,165	42.509
2 자녀	38,598	48.942
3 자녀	46,318	56.662
이외 추가 자녀 1명 당	7,720유로 추가	7.720유로 추가

* 주: 2018년 소득기준으로 2020년 지급 결정
자료: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la-prime-a-la-naissance-et-adoption-caf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0. 1. 30 인출)

○ 기초수당(Allocation de base)[91]

- 자녀수에 따라 연소득 기준 차등 적용
- 지급 기준: 자녀를 출산한 후 만 3세 미만이거나 20세 미만 아동을 입양한 가족이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되며, 맞벌이 및 한부모 여부에 따라 연소득 상한선 기준을 차등 적용
- 지급액: 소득상한선이 두 단계로 구분되어 있으며, 1차 상한선 미만의 소득일 경우 월 184.62유로, 2차 상한선 미만의 소득일 경우에는 월 92.31유로 지급
- 지급기간: 출생한 달부터 만 3세 생일 이전 달까지 또는 입양한 달부터 최소 12개월 동안 만 20세 생일 이전 달까지 지급

90) 유로 환율(2020. 3. 19 기준) : 1유로(€)=1386.50원
91) 프랑스 가족수당지원국 홈페이지, http://www.caf.fr/allocataires/droits-et-prestations/s-informer-sur-les-aides/petite-enfance/l-allocation-de-base, (2020. 2. 10 인출)

〈표 Ⅳ-1-3〉 프랑스의 기초수당 연소득 상한선 기준

단위: 유로

자녀 수	월 184.62		월 92.31	
	외벌이 부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1 자녀	30,875	39,224	36,884	46,860
2 자녀	36,443	44,792	43,535	53,511
3 자녀	42,011	50,360	50,186	60,162
이외 추가 자녀 1명 당	5,568유로 추가		6,651유로 추가	

* 주: 2020년 12월 31일까지 적용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지원국 홈페이지, http://www.caf.fr/allocataires/droits-et-prestations/s-informer-sur-les-aides/petite-enfance/l-allocation-de-base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0. 2. 10 인출)

□ 프랑스의 아동 및 가족 관련 현금지원 제도에서 2자녀 또는 3자녀 이상 다자녀 기준을 명시하여 적용하는 수당에는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과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 제도가 있음.

○ 가족수당(Allocations Familiales)[92]

- 자녀수에 따라 연소득 기준이 차등 적용되며, 자녀수 및 소득 구간에 따라 가족수당액 차등 지급
- 지급 기준: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모든 가구에게 지급되며, 연소득에 따라 세 구간으로 차등 적용

〈표 Ⅳ-1-4〉 프랑스의 가족수당 연소득 기준에 따른 소득 구간

단위: 유로

자녀 수	소득구간별 연소득 기준		
	Ⅰ	Ⅱ	Ⅲ
2 자녀	69,309 미만	69,309~92,381	92,381 이상
3 자녀	75,084 미만	75,084~98,156	98,156 이상
4자녀 이상	80,859 미만	80,859~103, 931	103,931 이상

자료: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llocation-familiale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0. 1. 30 인출)

- 지급액: 2자녀의 경우 소득에 따라 131.55유로, 65.87유로, 32.89유로, 3자녀의 경우는 300.10유로, 150.05유로, 75.03유로가 지급되며, 4자녀

92)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llocation-familiale (2020. 1. 30 인출)

이상인 가구에는 468.66유로, 234.33유로, 117.16유로 지급됨. 자녀가 만 14세 이상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에 추가급여액이 부가됨.

〈표 Ⅳ-1-5〉 프랑스의 가족수당 월 지급액

단위: 유로

자녀 수	소득구간별 지급액		
	I	II	III
2 자녀	131.55	65.78	32.89
3 자녀	300.10	150.05	75.03
4자녀 이상	468.66	234.33	117.16
만 14세 이상 자녀 추가 지원	65.78	32.89	16.45

자료: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llocation-familiale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0. 1. 30 인출)

- 지급 기간: 둘째아 출산 또는 입양한 달부터 적용되며, 부양 자녀가 만 20세가 되어 부양자녀가 1명이 되는 달 이전까지 지급.

○ 가족보조금(Complément Familial)[93]

- 지급 기준: 만 3세 이상 만 21세 미만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이고 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되며, 맞벌이 및 한부모 여부에 따라 연소득 상한선 기준을 차등 적용.

〈표 Ⅳ-1-6〉 프랑스의 가족보조금 연소득 기준

단위: 유로

자녀 수	월 256.85		월 171.22	
	외벌이 부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외벌이 부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
3 자녀	19,388 미만	23,716 미만	19,388~38,769	23,716~47,426
4 자녀	22,619 미만	26,947 미만	22,619~45,230	26,947~53,887
이외 추가 자녀 1명 당	3,231유로 추가		3,231~6,461유로 추가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지원국 홈페이지, http://www.caf.fr/allocataires/droits-et-prestations/s-informer-sur-les-aides/enfance-et-jeunesse/le-complement-familialcf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0. 2. 11 인출)

93) 프랑스 가족수당지원국 홈페이지, http://www.caf.fr/allocataires/droits-et-prestations/s-informer-sur-les-aides/enfance-et-jeunesse/le-complement-familialcf, (2020. 2. 11 인출)

- 지급액: 연소득 기준에 따라 월 256.85유로 또는 월 171.22유로 지급.
- 지급 기간: 셋째아 만 3세부터 지급하여, 한 부양 자녀가 만 21세가 되어 부양 자녀가 3명 미만이 되는 달 이전까지 지급.

2) 휴가 및 휴직 관련 지원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급여에 해당하는 직업활동 자유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 제도가 2015년 자녀교육 분담 수당(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으로 명칭이 변경됨. 부모가 함께 자녀 양육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모성·부성 휴가 직후 6개월간 지급하던 방식에서, 막내 자녀 상한연령에 따라 부부가 각자 사용할 수 있는 동일한 휴직급여 기간을 설정함(신윤정, 2017).

○ 자녀교육 분담 수당(Complément de libre choix d'activité)[94]

- 지급기준이나 지급액이 아니라 지급기간에서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다른 지원 제도와 차별됨.
- 지급기준: 만 3세 미만 출산 자녀 또는 만 20세 미만 입양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거나 단축 근로하는 경우 지급되며, 일정 기간 동안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부했어야 함.
- 한 자녀일 경우 2년, 두 자녀일 경우 4년, 두 자녀 이상일 경우 5년 동안 분기별로 8회 이상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부했어야 수당 수급 가능(노대명·김대중·김영아 외, 2018: 331)
- 지급액: 육아휴직급여액은 근로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됨. 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적용되는 월 급여액은 비근로자의 경우 월 390.92유로, 50%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252.71유로, 50%~80% 근로하는 경우 145.8유로 지급.
- 지급 기간: 자녀수에 따라 사용가능한 자녀 상한 연령 및 지급 기간이 차등 적용됨.

94) 프랑스 사회보장 정보 웹사이트 https://www.previssima.fr/dossier/quelle-remuneration-pour-un-conge-parental.html#prepare-pour-un-conge-parental-combien-gagne-t-on (2020. 2. 11 인출)

〈표 Ⅳ-1-7〉 프랑스의 자녀교육 분담 수당 자녀 연령 기준 및 지급 기간

단위: 세/개월

자녀 수	막내 자녀 상한 연령	지급 기간	
		양부모	한부모
1 자녀	만 1세	각 부모가 6개월씩	자녀의 만 1세까지
2 자녀	만 3세	각 부모가 최대 24개월	막내 자녀 만 3세까지
3 자녀 이상	만 6세	각 부모가 최대 48개월	막내 자녀 만 6세까지

자료: 프랑스 사회보장 정보 웹사이트 https://www.previssima.fr/dossier/quelle-remuneration-pour-un-conge-parental.html#prepare-pour-un-conge-parental-combien-gagne-t-on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0. 2. 11 인출)

□ 출산 휴가

○ 어머니 모성 휴가(Le congé maternité au secours des mamans)[95]

- 지급기준: 10개월 이상 사회보장 분담금을 납부했고,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출산 후 6주를 포함하여 최소 8주 이상 근무를 중단하는 경우 건강 보험 기금에서 모성 휴가 비용 지급
- 지급액: 2020년 1월 1일 기준 일일 89.03 유로, 월 최대 3,428유로 지급. 단, 급여액은 기존 급여 미만이어야 함.
- 지급 기간: 어머니 모성휴가 기간은 출산 예정인 자녀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차등 부여됨. 첫째아 또는 둘째아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 전 휴가는 6주, 출산 후 휴가는 10주로 총 16주간 사용 가능하며,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예정인 경우 출산 전 휴가 8주, 출산 후 휴가 18주로 총 26주임. 쌍둥이 출산 예정인 경우는 총 34주간의 모성휴가가 주어지며, 세 쌍둥이 이상인 경우 출산 후 휴가는 쌍둥이 출산과 동일한 22주이지만 출산 전 휴가가 두 배 길어진 24주로 총 46주간 사용이 가능함.

〈표 Ⅳ-1-8〉 프랑스의 어머니 모성 휴가 기간

단위: 주

출산 예정 자녀수	출산 전 휴가	출산 후 휴가	총 휴가 기간
첫째 자녀 혹은 둘째 자녀 출산 예정	6주	10주	16주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예정	8주	18주	26주
쌍둥이 출산 예정	12주	22주	34주
세 쌍둥이 이상 출산 예정	24주	22주	46주

자료: 프랑스 가족수당지원국 홈페이지, http://www.caf.fr/allocataires/vies-de-famille/futur-parent/grossesse/le-conge-maternite-au-secours-des-mamans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0. 2. 20 인출)

95) 프랑스 건강보험 관련 사이트, https://www.ameli.fr/assure/remboursements/indemnites-journalieres/conge-maternite (2020. 2. 20 인출)

○ 부성 휴가(congé paternité)

- 2002년에 도입되었으며, 제도 시행 첫 해에 아버지의 부성 휴가 사용률은 60%임(신윤정, 2017: 30).
- 배우자가 한 명 출산했을 경우 최대 11일, 쌍둥이 이상 출산했을 경우 최대 18일 휴가 보장(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83).

3) 보육료 지원

□ 프랑스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는 공공유치원을 통한 시설 중심 보육서비스에서 개인 보육사 고용을 통한 보육서비스로 이동하였음. 즉, 프랑스는 1980년대부터 공공 보육시설 확대보다는 개인 보육사를 고용한 부모에게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 옴.

○ 프랑스는 1970년대에 개인 보육사(assistantes maternelles)를 통한 보육서비스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80년대에 '개인 보육사 특별보조금(Prestation Spéciale Assistante Maternelle)' 제도를 도입하여 개인 보육사를 고용한 부모의 보육비 일부를 지원함(노대명·김대중·김영아 외, 2018: 533~535).

○ 개인 보육사 고용 확대로 인해서 1990년대 중반에는 공공 보육시설이 보육사와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소득이 높은 부모일수록 개인 보육사를 더 선호하고 질 높은 보육을 위한 비싼 보육료를 지불하기 때문에 보육서비스가 계층화되는 현상이 나타나 비판을 받아 왔음.

□ 프랑스의 보육 지원은 부모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해야한다는 정책 담론을 바탕으로 발달되어 왔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보육서비스 지원 기조는 '보육방식 자유 선택 보조금(Complément de libre choix du monde de garde)' 제도의 명칭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보육방식 자유 선택 보조금[96]

○ 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의 연소득 기준은 자녀수와 한부모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급여액은 보육방식과 가족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기준: 직업을 가진 부모가 만 6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해 개인 보육사를 직접 고용하거나 협회 및 회사 소속 보육사 고용 또는 10명 이하의 영

96)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cmg-caf/, (2020. 2. 11 인출)

유아를 수용하는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자녀수와 한부모 여부에 따른 연소득 기준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

- 개인 보육사의 일 보수액은 50.15 유로를 초과하지 않아야하며, 협회 및 회사 소속 보육사를 고용하거나 소규모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최소 16시간 이용해야 함.

〈표 Ⅳ-1-9〉 프랑스의 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 연소득 기준

단위: 유로

구분		연소득 기준 구간		
		Ⅰ	Ⅱ	Ⅲ
1 자녀	부모	21,087 미만	21,087~46,861	46,861 이상
	한부모	29,522 미만	29,522~65,605	65,605 이상
2 자녀	부모	24,080 미만	24,080~53,513	53,513 이상
	한부모	33,712 미만	33,712~74,918	74,918 이상
3 자녀	부모	27,073 미만	27,073~60,165	60,165 이상
	한부모	37,902 미만	37,902~84,231	84,231 이상
4 자녀	부모	30,066 미만	30,066~66,817	66,817 이상
	한부모	42,092 미만	42,092~93,544	93,544 이상

자료: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cmg-caf/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0. 2. 11 인출)

- 지급액: 보육방식과 한부모 여부에 따라 연소득 기준 구간별로 차등 지급함. 단, 부모가 보육비용의 최소 15%는 자부담으로 지불하여야 함.

〈표 Ⅳ-1-10〉 프랑스의 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 월 급여액

단위: 유로

구분		연소득 기준		
		Ⅰ	Ⅱ	Ⅲ
부모가 개인 보육사 직접고용	부모	468.82	295.62	177.35
	한부모	609.47	384.31	230.56
협회 및 회사 소속 보육사 고용/ 소규모 보육시설 이용*	부모	857.27	591.20	472.97
	한부모	1114.16	768.57	614.87

* 주: 최대 10명 영유아 수용 보육시설

자료: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cmg-caf/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0. 2. 11 인출)

- 지급기간: 소득활동으로 인해 보육이 필요한 자녀가 만 6세가 될 때까지 지급.

4) 기타 지원 제도

□ 다자녀 가구 지원 카드(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85).

○ 대가족 카드(carte Famililles nombreuses)는 프랑스 국영철도에서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 철도 이용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식당, 호텔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로 신청하여야 발급 가능하며 3년 마다 갱신하도록 되어 있음. 단, 자녀가 5명 이상일 경우 유효 기간이 6년으로 연장됨.
-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녀의 철도 이용 할인율이 30~75%로 점차 증가하고, 자녀가 5명 이상인 부모는 30%의 할인율이 적용됨.
- 자녀수가 3명일 경우 할인율은 30%, 4명은 40%, 5명은 50%, 6명 이상은 75%임.

□ 세제 지원(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84~85 재인용).[97]

○ 프랑스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과세소득의 세율이 차등적으로 적용되도록 산정하여 다자녀 가구의 과세소득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식을 취함.

- 프랑스는 소득세 과세단위를 세대단위로 하며 가족분할계수를 사용하여,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족분할계수는 높아짐. 독신은 1단위, 부부 2단위, 부부 및 1자녀는 2.5단위, 부부 및 2자녀는 3단위, 부부 및 3자녀는 4단위임.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족분할계수가 높아져 계수 1단위당 과세소득액이 낮아지므로 감세효과가 있음.

2. 독일

가. 독일의 출산 현황

□ 독일은 1970년 합계출산율 2.1명 이하로 감소한 이래 지속적인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였으며, 1991년 합계출산율이 1.4명 이하로 떨어진 이후부터 1.4명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1년 이후부터 출산율이 반등함(그림 Ⅳ-2-1 참조).

97) 원문출처는 "김상호(2016), 선진국 사례(프랑스, 미국, 스웨덴 등)와 시사점"과 "조성규(2017 3. 14) 프랑스의 소득세 도입- 프랑스 시민 혁명, 자유 권력분립 평등을 선언, 온돌뉴스"를 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84~85에서 재인용함.

○ 2017년 기준 독일 합계출산율은 1.57명으로 EU국가 평균에 근접한 수치이며, OECD 평균 합계출산율 1.7명보다 다소 낮은 편임.

- 독일의 현재 출산율이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높은 편은 아니나, 1990년대 이후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출산율을 오랜 기간 경험하다가 최근 출산율 반등에 성공하여 상당히 고무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 독일의 베이비붐은 1955년~1964년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길지 않으며, 1965년부터 합계출산율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1992년부터 1995년까지 1.3명 이하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남.

- 독일 최저 합계출산율은 1995년 1.24명임. 이후 다소 증가 추이를 보여 2012년 합계출산율 1.41명으로 1990년 이후 처음으로 합계출산율 1.4명을 넘어섰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16년 1.6명까지 증가함. 2017년과 2018년 합계출산율은 1.57명을 유지 중임.

○ 독일의 출산율 증가에는 동유럽과 발칸반도 여성이민자 출산율의 증가가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남. 그러나 독일출신 여성의 출산율도 함께 상승하였기 때문에 독일의 가족정책의 실질적 변화가 전반적인 독일 출산율 상승의 주요 동인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Ⅳ-2-1] 독일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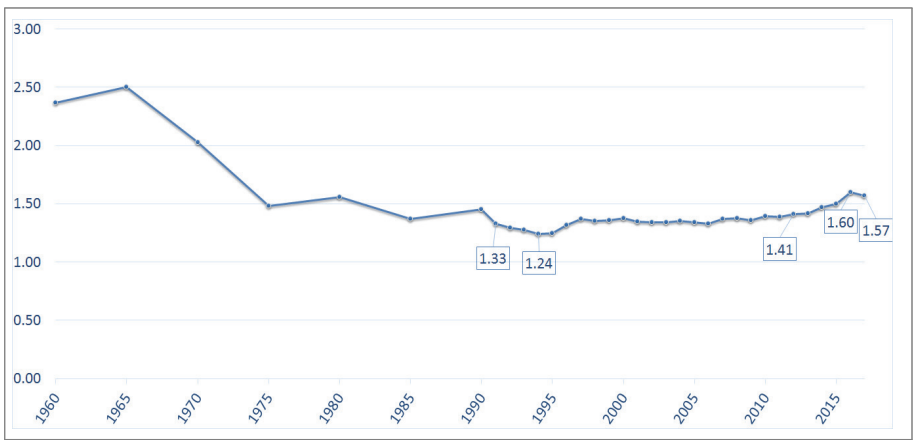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F2.1 : Fertility rate. xls를 바탕으로 재구성(2020. 1. 28 인출).

- 외국출신 여성의 합계출산율은 2011년 1.82명에서 2018년 2.12명으로

증가하였으며, 동일한 기간에 독일 출생 여성의 출산율도 1.34명에서 2018년 1.45명으로 증가하였음.[98]

□ 독일의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율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의 국가에 비해서 낮은 편이나 전체 유럽국가와 비교하면 중간 정도 수준에 해당함(그림 Ⅱ-2-1 참조).

○ 1990년부터 2017년까지 셋째아 이상 출생 비율은 16~18% 사이에서 유지되고 있으며, 첫째아와 둘째아 비율도 5% 내에서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변동이 관찰되지 않음(표 Ⅳ-2-1 참조).

○ 또한 출산율 반등 시기인 2011년 이후에도 셋째아 출산율이 크게 변동이 없고, 오히려 그 이전 시기에 비해 첫째아 출산율 비중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아, 독일의 출산율 반등은 다자녀 출산이나 출산 양상이 양극화되는 현상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표 Ⅳ-2-1〉 독일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0~2017년)

년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1990	47.3	36.0	16.7
1991	48.0	35.0	17.0
1992	46.8	35.7	17.5
1993	46.3	36.5	17.2
1994	47.1	36.0	16.9
1995	46.6	36.7	16.8
1996	46.2	36.7	17.1
1997	45.6	36.9	17.4
1998	45.2	37.2	17.6
1999	44.8	37.7	17.5
2000	44.7	38.0	17.4
⋮	-	-	-
2003	44.8	38.2	16.9
⋮	-	-	-
2006	44.2	38.1	17.7

98) 독일 연방 정책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bpb.de/nachschlagen/zahlen-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550/geburten#:~:text=Im%20Jahr%202018%20lag%20die,60%20%E2%80%93%20jeweils%20ohne%20Berlin).&text=Zwischen%202011%20und%202018%20erh%C3%B6hte,2016%3A%202%2C28). (2020. 5. 20 인출)

년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	–	–	–
2009	49.8	33.7	16.4
2010	49.5	33.9	16.5
2011	49.8	34.0	16.2
2012	49.4	34.4	16.2
2013	49.4	34.4	16.1
2014	49.5	34.2	16.3
2015	49.0	34.4	16.6
2016	48.0	34.6	17.4
2017	47.1	35.0	17.9

주: 원자료에 2001, 2002, 2004, 2005, 2007, 2008년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음.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F2.1 : Fertility rate. xls를 바탕으로 재구성(2020. 1. 28 인출).

나. 독일의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배경

□ 독일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기반하여 사회정책이 발달하였으며, 가족정책도 가족 내 돌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지원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음. 즉,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보다는 현금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여성이 가족 내에서 자녀를 돌보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택함. 이러한 이유로 독일은 보수주의 가족정책의 전형으로 분류되어 왔음.

□ 독일은 나치시대에 인구정책이 악용된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인구정책적 접근을 국가주의의 상징으로 받아들여 오랜 시간 동안 인구나 출산율 증가를 강조하는 것을 터부시해옴(Gerlach, 2008). 그러나 1970년 이후 저출산이 지속되었으며, 1991년부터는 합계출산율 1.4명 이하의 극심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 위기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에 직면함. 이에 독일 정부는 저출산을 독일 사회의 존속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게 되었고, 1990년 중반부터 인구학적 관점에서 가족정책이 강조되기 시작함(박은정, 2019).

□ 독일은 출산율 제고뿐만 아니라 노동력의 부족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으로 해결해야 할 이중과제에 직면함.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독일 정부는 전통적인 성별역할분리와 가족 내 돌봄을 강조하는 기존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성평등적인 부모의 역할을 강조하는 노르딕 모델, 특히 스웨덴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함(BMFSFJ, 2006).

○ 독일은 2001년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을 발표하면서 가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표명함. 2001년에 부모시간(Elternzeit)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2007년 높은 소득대체율과 자녀돌봄에 아버지의 참여를 장려하는 부모수당(Elterngeld)이 실시됨. 또한 만 3세 미만 아동 대상 보육시설을 확충함(박은정, 2019). 따라서 현금급여에 편중되어 있던 독일 가족정책 구조가 변화됨.

□ 따라서 독일의 다자녀 지원 정책의 시작은 인구학적 관점에서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음.

□ 독일에서 다자녀 가족(Mehrkindfamilien)은 3자녀 이상 가족을 지칭하며(BMFSFJ, 2013), 현금 지원 제도에서도 셋째 자녀부터 지급액이 증액되나, 비교적 최근에 도입 및 강화된 추가아동수당(Kinderzuschlag)이나 주택아동수당(Baukindergeld)의 경우 자녀수를 기준으로 하여 다자녀 기준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다. 독일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1) 현금 지원 제도

□ 아동수당

○ 독일 아동수당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자녀를 둔 부모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됨. 현재 독일 아동수당제도는 1954년 구서독에서 셋째 자녀부터 25마르크를 지급한 데에서 시작되어, 제도 도입시기부터 다자녀를 둔 부모를 우선 지원함(Böhmer, Matuschke, & Zweers, 2008; Rainer, Bauernschuster & Danzer et al., 2013).

○ 독일 제도는 자녀세액공제와 아동수당 중 선택 가능한 이중체계로 설계되었음. 현재 독일 아동수당은 셋째아부터 지급액이 증가하지만 자녀세액공제는 자녀수에 따라 점증적으로 증액되지 않음. 따라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고 다자녀인 경우 자녀세액공제보다 아동수당을 수급하는 것이 유리함(박은정, 2019).

○ 지급기준: 독일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소유하고 독일에 거주하는 아동이나 유럽연합(EU), 유럽경제지역(EEA), 스위스 지역에 거주하는 독일 국적 아동에게 지급됨(Familienkasse, 2020a).

○ 지급액: 2020년 기준 첫째아와 둘째아는 204유로, 셋째아는 210유로, 넷째아 이상은 235유로 지급(Familienkasse, 2020a).

○ 지급기간: 기본적으로 자녀가 만 18세까지 지급되며, 학업 중이거나 직업교육 중일 경우 또는 공익활동을 할 경우 만 25세까지 받을 수 있음. 단, 만 25세 이상이더라도 학업 중이나 직업교육 중인 자가 군복무나 사회복무를 했을 경우 해당 기간만큼 연장을 받을 수도 있음. 또한 만 25세 이전 갖게 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만 25세 이후에도 연령 제한 없이 아동수당 수급이 가능함(Familienkasse, 2020a).

□ 추가아동수당(Kinderzuschlag)[99]

○ 독일 추가아동수당은 2005년 하르츠 개혁 이후 자녀를 둔 가족이 생계비를 충당하지 못해 사회부조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II(Arbeitslosengeld II) 및 사회급여(Sozialgeld)에 의존하게 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도입됨.

○ 지급기준: 아동수당 수급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의 매월 소득이 소득하한선에 도달하고, 소득과 재산이 소득상한선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어야 함.

- 소득하한선: 주거수당, 아동수당, 추가아동수당을 포함하지 않고, 부모인 경우에는 최소 900유로, 한부모는 최소 600유로가 소득하한선임.
- 소득상한선: 산식에 따른 평가기준선(Bemessungsgrenze)[100]을 산출한 후 추가아동수당 총액을 더하여 소득상한선을 결정함. 평가기준선은 자녀수에 따라 다르게 산출됨.

○ 지급액: 2020년 기준 아동 당 최대 월 185유로 지급. 부모의 소득뿐만 아니라 자녀의 소득도 고려되며 추가아동수당 수급 후 소득상한선을 넘지 않는 선에서 지급됨.

○ 지급기간: 추가아동수당 지급 승인은 6개월 동안이며, 소득과 주거비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6개월 이후 변경됨. 자녀 연령 기준에 따른 지급기간은 아동수당과 동일함.

○ 자녀수에 따른 주거 및 난방비를 산식에 포함하여 산출한 평가기준선을 적용하여, 주거비용이 높거나 다자녀 가구일 경우 중간 소득계층까지도 감액된 추가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음.

99) Familienkasse, 2020b
100) 평가기준선 = 부모 기초수요 + 부모 주거 및 난방비

2) 휴가 및 휴직 관련 지원

□ 부모수당(Elterngeld)

○ 독일 부모수당은 출산 이후 자녀를 집중적으로 돌보는 시기에 발생하는 소득감소를 보완해주는 생애주기에 따른 소득지원 개념으로 도입되었으며, 이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크게 높임(박은정, 2019).

- 지급기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면서 자녀를 직접 돌보는 부모(단, 소득활동을 하지 않거나 주당 최대 30시간 이하로 근무). 출산 전 경제활동 및 육아휴직 여부와 상관없음.
- 지급액: 수당 하·상한선이 있음. 최소 월 300유로, 최대 월 1,800유로임. 하한액 이상의 소득이 있었을 경우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소득대체율이 단계적으로 증가함. 기본 소득대체율은 65%임.
- 지급기간: 기본 12개월 지급되며, 부모가 모두 이용할 경우 14개월까지 이용 가능함. 한부모의 경우는 혼자 14개월 사용 가능함.

○ 쌍둥이 부모수당[101]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부모시간을 쌍둥이 대상으로 함께 사용하여야 하며, 대신 부모수당 추가액을 지급함.
- 쌍둥이 부모수당 추가액: 쌍둥이 자녀수가 증가할 때마다 300유로씩 증가(쌍둥이 300유로, 세쌍둥이 600유로, 네쌍둥이 900유로)

○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BMFSFJ, 2019)

- 지급기준: 기본 부모수당에 해당하는 자녀 이외에 추가 자녀로 인정되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을 지급.
- 추가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만 3세 미만에 자녀가 최소 한 명이상인 경우, 만 6세 미만에 자녀가 최소 두 명이상인 경우, 만 14세 미만에 장애를 가지거나 입양한 자녀가 최소 한 명이상인 경우
- 지급액: 부모수당의 10%, 하한액 월 75유로, 상한액 월 180유로 지급
- 기본 부모수당 상한선은 최대 월 1,800유로까지이지만 쌍둥이와 다자녀로 인해 증액될 경우 상한선이 적용되지 않음.

101) BMFSFJ, 2019

3) 보육료 지원

□ 보육료 지원[102]

○ 독일 연방정부 차원에서 보육료 지원에 대한 지침은 있으나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에 대한 규정은 주정부 관할임.

- 기본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보육료 차등 부과
- 2019년 8월부터 무상 보육 대상: 추가아동수당, 주거수당, 실업급여 II, 사회수당, 사회부조(공공부조), 난민신청급여 수급자

○ 다자녀 가구는 아동 당 보육료를 감액해주는 것이 기본 방침이나 주정부에 따라 지원 정도가 상이함. 최근에 무상보육을 실시하거나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한 주들이 있음.

- 사례 1) 베를린(Berlin): 2018년 8월 1일자부터 모든 아동에 대한 무상 보육 실시. 단, 점심 식사비용 월 23유로(약 3만원) 납부
- 사례 2) 작센안할트(Sachsen-Anhalt): 최근 다자녀 보육료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첫째 자녀에게만 소득수준에 따라 보육료를 부과하고 둘째 자녀부터는 무상 보육 실시.

4) 기타 지원 제도

□ 주택아동수당(Baukindergeld)[103]

○ 2018년 도입된 주택아동수당은 독일의 낮은 자가주택 보유율을 높이고 자녀를 둔 가족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됨.

○ 지급기준: 가족이 사용할 자가주택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아동수당 수급자격이 있으면 신청 가능함. 2018년 주택 신축이나 구입부터 적용됨. 한 자녀일 경우 연 가구소득 상한선은 90,000유로이며, 추가 자녀 당 15,000유로씩 상한선이 상승됨.

○ 지급액 및 지급기간: 만 18세 미만 자녀 당 1년에 1,200유로의 보조금을 지급하며, 주택소유를 유지할 경우 최대 10년까지 지원함. 따라서 주택아동수당을 통해 자녀 당 최대 12,0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음.

---

102) 독일 교육시스템 안내 사이트, https://www.bildungsserver.de/UEber-uns-480-de.html (2020. 2. 19 인출)
103) KFW, 2019

3. 스웨덴

가. 스웨덴의 출산 현황

□ 스웨덴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이른 시기에 저출산 현상을 겪었고, 적극적 정책 대응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한 경험을 가진 국가임. 스웨덴은 지금까지 다른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큰 폭의 출산율 하락과 상승을 반복적으로 경험하였음. 그러나 스웨덴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난 적은 없으며, 전체 유럽 국가와 비교하면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이현주·김근혜·송지원 외, 2018; 홍희정, 2019).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78명으로 EU 및 OECD국가 평균 합계출산율보다 다소 높음.

○ 스웨덴은 193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2명 이하로 하락하여 저출산 문제에 일찍이 직면했으며, 저출산을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일가정양립 지원과 보육정책 강화를 통해 대응함(이현주·김근혜·송지원 외, 2018)

○ 이후 인구대체수준 이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다가 1960년대 중반부터 다시 감소하였으나, 1980년대 스웨덴의 경제적 번영 시기에는 다시 출산율이 회복세로 돌아섬(Andersson, 2008).

○ 1990년에는 합계출산율 2.14명으로 197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 경제적 침체와 실업률 증가가 출산율 급감으로 이어져 1999년에는 1.5명까지 하락함(이현주·김근혜·송지원 외, 2018).

○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다시 출산율이 반등하여 10년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임. 2010년에는 1.98명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다소 출산율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음(그림 Ⅳ-3-1 참조).

○ 2000년대에 스웨덴 출산율 반등의 성공 요인은 저출산 대응책의 초점을 여성 출산율 증가에 맞추지 않고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도 동시에 제고시키는 일생활 균형 정책을 정착시킨 데에서 찾을 수 있음(홍희정, 2019).

[그림 Ⅳ-3-1]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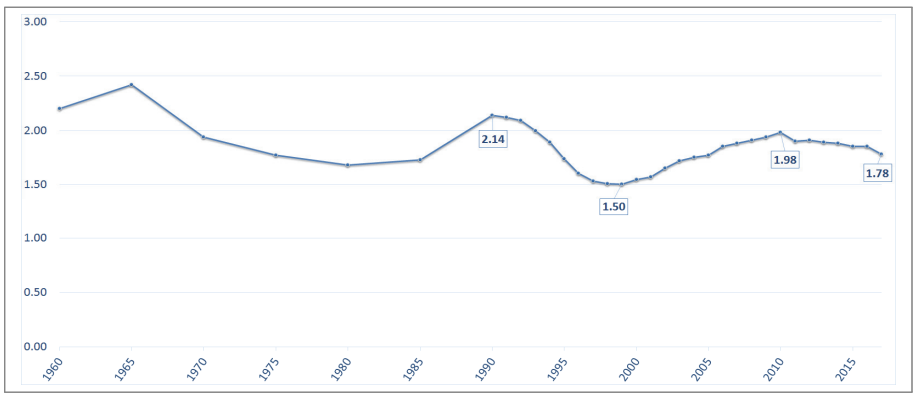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F2.1 : Fertility rate. xls를 바탕으로 재구성(2020. 1. 28 인출).

□ 스웨덴의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율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다소 높은 편임. 1990년대 이후 다자녀 출산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는 없으나, 둘째아 출생 비율이 다소 증가함(표 Ⅳ-3-1 참조).

○ 1990년대에 합계출산율이 크게 감소함. 한편,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율은 다소 감소하였으며, 둘째아 출생 비율이 증가함. 이후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 양상이 크게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출산율이 반등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기에 셋째아 이상 비율의 감소폭이 이전보다 다소 커졌음.

〈표 Ⅳ-3-1〉 스웨덴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0~2017년)

년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1990	42.7	34.4	22.9
⋮	-	-	-
1998	41.1	37.3	21.5
1999	42.0	36.6	21.4
2000	43.6	35.1	21.3
2001	44.2	35.4	20.5
2002	45.1	35.4	19.4
2003	44.6	35.8	19.6
2004	44.5	36.3	19.2
2005	44.2	36.9	18.9
2006	44.5	36.6	18.9
2007	44.7	36.2	19.1
2008	45.1	35.9	19.0

년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2009	45.0	36.4	18.5
2010	44.4	36.8	18.8
2011	43.9	37.3	18.8
2012	44.1	37.2	18.7
2013	43.4	37.4	19.2
2014	42.5	37.5	19.9
2015	42.7	37.3	20.1
2016	42.5	36.7	20.8
2017	42.2	36.5	21.3

주: 원자료에 1991-1997년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음.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F2.1 : Fertility rate. xls를 바탕으로 재구성(2020. 1. 28 인출).

○ 스톡홀름 대학 연구진의 다년간의 연구에 의하면, 1961~2012년 둘째아부터 넷째아 출산의 상대위험도(Relative risk)를 산출한 결과[104]가 합계출산율 추이와 거의 일치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

○ 특히, 둘째 출산 상대비와 일치도가 높음. 따라서 스웨덴의 출산율 증감은 둘째아 이상 출산비율 양상에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Andersson & Kolk, 2015).

[그림 Ⅳ-3-2] 스웨덴 어머니의 둘째아~넷째아 출산 상대위험도(Relative risk) 추이(1961-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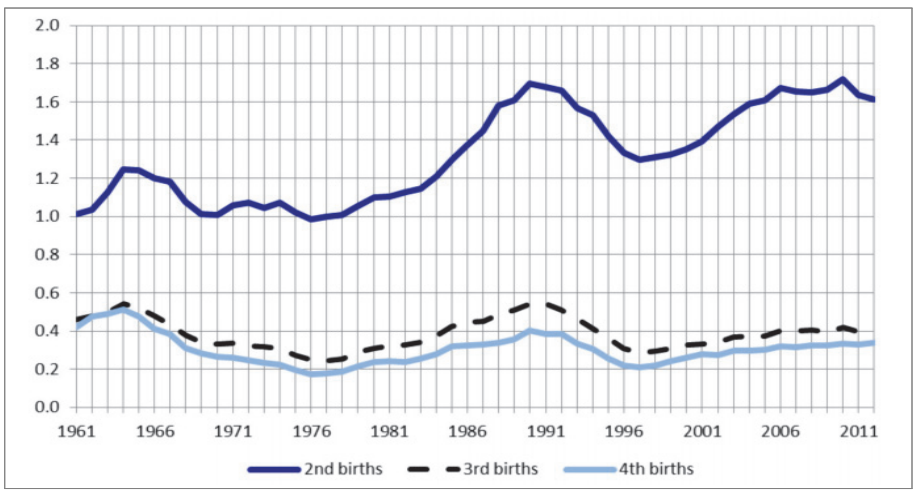

자료: Andersson & Kolk(2015). Trends in childbearing, marriage and divorce in Sweden: An update with data up to 2012, p. 24.

104) 어머니 연령과 이전 출산 이후 기간을 표준화한 후 1977년 둘째 출산율 상대비로 산출함.

나. 스웨덴의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배경 및 특징

□ 스웨덴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출산율이 2명 이하로 떨어지면서 인구감소 위기에 직면함. 이에 스웨덴은 1930년대부터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아동가구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실시하였으며, 일찌감치 가족정책 체계를 선도적으로 구축하여 1980년대에는 저출산 정책과 양성평등 정책 모두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진 국가로 발돋움함.

○ 스웨덴은 1930년대에 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가족 및 아동의 빈곤 문제가 대두되었을 뿐만 아니라 인구감소 위기에도 직면하게 됨. 이에 1937년에 빈곤 아동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보편적 급여방식으로 전환하여 1948년부터는 만 16세 미만 아동을 둔 부모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됨.

□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스웨덴 경제가 다시금 극심한 불황에 직면하게 되고, 이 여파로 출산율이 2.14명에서 1999년 1.5명까지 급감함. 재정악화로 인해 1995~1998년에는 다자녀 추가아동수당이 축소되기도 하였음. 그러나 경제가 다시 회복되면서 출산율도 다시 회복되어 현재는 EU 및 OECD 국가보다 높은 합계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또한 아동수당 및 육아휴직 급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양정선, 2017: 71).

□ 스웨덴의 다자녀 지원은 저출산 정책과 일가족양립을 지원하는 보편적인 가족정책 제도 내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가족 정책의 세 축인 현금 지원, 시간 제도, 보육서비스 분야 모두에서 다자녀 지원이 포함되어 있음. 구체적으로, 다자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의 보충적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부모휴가제도 내에는 둘째 자녀 출산장려를 위한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가 있고, 다자녀 가구에게 보육료 부담금 감액 및 면제 지원을 하고 있음.

다. 스웨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1) 현금 지원 제도

□ 아동수당[105]

105) 스웨덴 보험기금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nar_barnet_ar_fott/barnbidrag (2020.1.21.인출)

○ 1990년대 복지축소 과정에서도 아동수당은 인상되었으며 여전히 스웨덴의 핵심적인 아동가구 지원 제도임. 하지만 보육서비스와 현금지원 중에 어느 정책을 강화해야 할지에 대한 논쟁이 있어 왔으며, 최근 사회보장예산에서 아동수당이 차지하는 비중이 보육서비스 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음(이현주·김근혜·송지원 외, 2018: 242~244).

○ 스웨덴 아동수당은 스웨덴에 거주하며 만 16세 미만 자녀를 둔 부모에게 신청과정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현금 급여임.

- 지급기준: 스웨덴에 거주하는 만 16세 미만 아동의 양육자이면서 사회보험 가입자
- 지급액: 자녀 1명당 1,250크로나[106] 지급
- 지급기간: 자녀 출생부터 자녀 만 16세 이전까지

○ 다자녀 아동수당은 아동수당의 보충적 성격을 가진 수당제도임. 이는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요구되는 식료품비를 보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실제 자녀수 증가에 따른 필요액보다 큰 폭으로 증액하여 지급함으로써 다자녀 출산을 장려하려는 숨겨진 정책목표가 있음을 알 수 있음(이현주·김근혜·송지원 외, 2018: 246).

- 지급기준: 만 16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
- 지급액: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다자녀 아동수당도 점증적으로 증액됨. 자녀가 2명일 경우 150크로나, 3명 730크로나, 4명 1,740크로나, 5명 2,990크로나, 6명 4,240크로나 지급.
- 지급기간: 일반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자녀 출생부터 만 16세 이전까지이며, 한 자녀가 만 16세 이상이 될 경우 지급이 중단되거나 지급액이 조정됨.

〈표 Ⅳ-3-2〉 스웨덴의 아동수당 및 다자녀 아동수당 월 지급액

단위: 크로나

자녀수	아동수당	다자녀 아동수당	총액
1	1,250	-	1,250
2	2,500	150	2,650
3	3,750	730	4,480

106) 크로나 환율(2020. 3. 19 기준) : 1크로나(SEK)=123.70원

자녀수	아동수당	다자녀 아동수당	총액
4	5,000	1,740	6,740
5	6,250	2,990	9,240
6	7,500	4,240	11,740

자료: 스웨덴 보험기금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nar_barnet_ar_fott/barnbidrag (2020.1.21.인출)

2) 휴가 및 휴직 관련 지원

□ 부모휴가[107]

○ 스웨덴은 1974년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부모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부모보험 체계를 도입하였으며, 부모보험에는 육아휴직제도에 해당하는 부모휴가, 일시적인 자녀돌봄 휴가인 일시적 부모휴가, 임신휴가가 있음. 부모휴가는 일가족양립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여러 차례 제도를 개선해왔음.

- 부모휴가는 성 중립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실제 부모휴가를 사용하는 대다수가 여성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1995년에 남성의 제도 사용률을 높이기 위한 아버지 쿼터, 어머니 쿼터 제도를 도입함. 이에 따라 부모휴가 중 390일은 부모가 함께 공유하고, 30일씩 아버지, 어머니에게 할당됨(이현주·김근혜·송지원 외, 2018: 339).
- 2008년에는 480일의 부모휴가를 부모가 동일하게 240일씩 사용할 경우 270일간 하루에 50크로나를 추가 지급하는 양성평등 보너스 제도를 도입함(이현주·김근혜·송지원 외, 2018: 339~340).

○ 지급기준

-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가 자녀 돌봄을 위해 휴직하거나 구직 및 학업 중일 경우 지급
- 육아 휴직 이전 근로기간 및 소득 기준: 부모 수당을 받기 전에 최소 240일간 근로하며 연 82,300크로나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와 육아휴직 이전에 240일 이하로 근무했거나 소득이 기준 이하 또는 없는 경우 기본 급여만 지급함.

107) 스웨덴 보험기금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ut/p/z0/XckxDsIwDEDRszB4ThAbW4W4ACxVl8gFt1htbcsx4fp0YWH7Xy8NqU-DYOMZg1Vw3b__PLazYbzgeOogX1SCJO7XcqNqKpUbQTbnhmHkFfKkjuuTHLKglxFdKMpek0b81NFIhGWG7O_ReSm6lT9KtnSHL3leftE!/ (2020. 1. 21 인출)

- 소득상한선: 2019년 기준 소득 455,000크로나(약 5,590만원)까지 80% 소득대체율 적용

○ 지급액

- 390일은 월 소득대체율 80%를 지급하고, 90일은 감액된 기본 급여 지급.
- 근로일수 및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월 소득대체율 80% 지급, 하루 최대 1,006크로나(약 12만원)
- 근로일수 및 소득 기준 이하일 경우: 기본 급여로 하루에 250크로나(약 3만원) 지급.

○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 제도

- 스웨덴은 1980년 둘째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스피드 프리미엄(speed premium) 제도를 도입함. 스웨덴 여성의 대다수가 첫째 출산 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임금 감소를 경험하며, 이로 인해 둘째 육아휴직급여액이 첫째 자녀 출산 이후보다 감소하게 되었음. 이에 육아휴직급여액의 감소를 막고 여성의 추가 출산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부모휴가에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를 도입하여 24개월 이내에 추가출산 할 경우 첫째 출산 시기 임금을 기준으로 휴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함. 1986년에는 추가출산 기한이 30개월로 연장됨(양정선, 2017: 72).

○ 지급기간

- 부모휴가 기간은 2008년 이후 총 480일로 연장되었으며, 300일은 부모가 자유롭게 분할 사용하고, 90일은 부모가 각각 모두 사용하여야 함.
- 아동 당 지급기간은 480일이며, 쌍둥이의 경우는 사용 가능한 부모휴가 일수가 연장됨.
- 쌍둥이 660일(소득대체율 80% 급여 480일 + 기본 급여 180일)
  세쌍둥이 840일(소득대체율 80% 급여 660일 + 기본 급여 180일)
  네쌍둥이 1,020일(소득대체율 80% 급여 840일 + 기본 급여 180일)

3) 보육료 지원

□ 스웨덴의 1~6세 영유아 대상 공공 보육시설 비율은 1972년에 12%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 83%로 크게 증가하였음. 맞벌이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일

제 보육시설 중심으로 확대됨. 그러나 2001년부터는 부모가 실업자인 경우에도 공공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부여되었으며, 2003년에는 전업모의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4~5세 아동에게 하루 3시간 보육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부여됨(이현주·김근혜·송지원 외, 2018: 345-346).

□ 스웨덴의 영유아 보육시설은 0~5세 영유아 대상 푀르스콜라(förskola), 개방형 푀르스콜라(Öppen förskola), 취학 전 6세 아동 대상 유아교실(förskoleklass), 6세부터 의무교육 연령 아동 방과전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가센터(fritidsverksamhet/fritidshem)로 나뉨(유해미·박은정·김영미 외, 2019: 61 재인용)[108].

□ 스웨덴의 보육료는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상한선을 두고 있음. 또한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차등 적용됨.

○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자녀당 소득대비 보육료 부담 비율이 낮아지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완화시키고 있음. 넷째 자녀 이상은 보육료 전액 면제임(표 Ⅳ-3-3 참조).

〈표 Ⅳ-3-3〉 스웨덴의 출생순위별 보육료 부담금(2017년 기준)

단위: 크로나

출생순위	전일제		반일제	
	보육료	상한선	보육료	상한선
첫째 자녀	소득의 3%	1,362	소득의 2%	908
둘째 자녀	소득의 2%	908	소득의 1%	454
셋째 자녀	소득의 1%	454	소득의 1%	454
넷째 자녀 이상	0	무료	0	무료

자료: Stockholms Stad (2017. 10. 21 인출); 이현주·김근혜·송지원 외(2018), p.347에서 일부 재인용.

4. 싱가포르

가. 싱가포르의 출산 현황

□ 싱가포르는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으로부터 독립하면서 내수시장 규모 감소에 따른 산업 구조 변화 요구에 직면했으며, 높은 인구 증가율과 실업률 문제

108) 원문출처는 "Lohmander(2017). Sweden - ECEC Workforce Profile."이며 유해미·박은정·김영미 외, 2019: 61에서 재인용함.

가 대두됨. 이에 경제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재수립하였으며, 가족계획 5개년 사업을 함께 추진함. 싱가포르의 5개년 가족계획은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출산 억제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적극적인 인구 억제정책의 영향으로 출산율이 크게 감소함(신윤정, 2014; 신윤정·우해봉·윤자영 외, 2018: 155~156).

○ 1966년부터 가족계획 및 인구 프로그램 5개년 사업을 실시한 결과, 1975년 합계출산율 2.07명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 출산율을 조기 달성함.

○ 1975년 이후에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1980년에 가족계획 및 인구 프로그램 5개년 사업이 종료 되었으며, 1986년 싱가포르의 국가 주도 출산 통제 정책을 주도한 가족계획인구위원회가 해체됨.

□ 싱가포르는 1987년 이후 출산 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나, 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3년 이후에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그림 Ⅳ-4-1 참조).

○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은 1986년 1.43명까지 감소하였다가 다소 회복하는 듯 보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임. 2003년에는 1.3명 미만인 1.27명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2010년에는 합계출산율 1.15명이었으며, 2018년에는 이보다 낮은 1.14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임.

[그림 Ⅳ-4-1]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5~2018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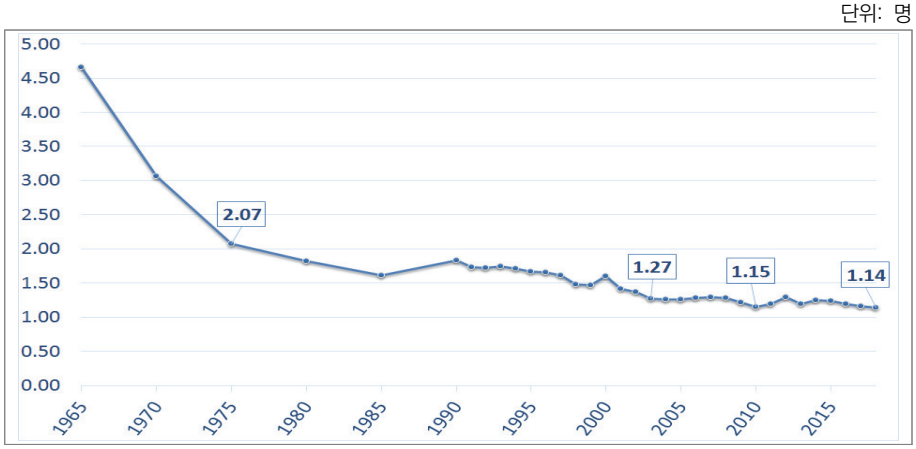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Database, https://www.tablebuilder.singstat.gov.sg/publicfacing/createDataTable.action?refId=13273를 바탕으로 재구성(2020. 2. 20 인출).

□ 싱가포르는 1990년대까지는 다자녀 출산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지 않았으나, 2010년대 초반까지 셋째아 이상 출생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둘째아는 크게 변동이 없는 반면, 첫째아 출생 비중은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다자녀 출산 비율이 감소함(표 Ⅳ-4-1 참조).

○ 1990년 셋째아 이상 출생아 비율은 24.6%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2014년에는 15.7%로 약 9% 감소하였으며, 첫째아는 1990년에는 39.7%였으나 2013년에는 48.6%까지 증가함.

□ 2010년대 중반부터는 첫째아 출생 비율이 감소하고 셋째아 이상 출생 비율이 다시 증가 추이를 나타내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 즉, 프랑스와 유사하게 출산 양상이 양극화 경향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으나 아직 단정 짓기는 어려움.

○ 첫째아 출생 비율은 2012년과 2013년에 48.6%로 가장 높았다가 차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8년에는 46.6%로 5년 만에 2% 감소함. 한편, 셋째아 이상 출산율은 2014년 이후 증가하여 2018년에 17.7%로 2% 증가함.

○ 2017년 싱가포르 통계청에서 40~49세 싱가포르 거주 여성의 출산율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2000년에 무자녀 여성은 6.4%였으나, 2015년에는 11.6%로 크게 증가함(Statistics Singapore, 2017).[109]

〈표 Ⅳ-4-1〉 싱가포르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0~2018년)

년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1990	39.7	35.6	24.6
1995	41.4	35.5	23.0
2000	42.4	36.1	21.5
2001	42.4	35.0	22.6
2002	43.0	36.5	20.5
2003	43.8	35.9	20.3
2004	44.7	35.9	19.4
2005	45.0	35.5	19.4
2006	45.1	36.0	19.0
2007	46.1	35.3	18.6
2008	47.6	34.7	17.7

109) 싱가포르 통계청 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publications/population/ssnsep17-pg1-4.pdf (2020. 2. 20 인출)

년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2009	47.0	35.0	18.0
2010	47.8	35.3	16.9
2011	48.0	35.6	16.4
2012	48.6	35.4	16.0
2013	48.6	35.1	16.4
2014	48.1	36.1	15.7
2015	48.0	35.2	16.8
2016	47.0	36.2	16.8
2017	46.9	35.9	17.3
2018	46.6	35.7	17.7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Database, https://www.tablebuilder.singstat.gov.sg/publicfacing/createDataTable.action?refId=13251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작성함(2020. 2. 20 인출).

나. 싱가포르의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배경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싱가포르는 1965년 독립 이후 인구 억제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1986년 인구 억제정책을 종료함. 이후 1987년부터 출산장려 정책으로 선회하였음. 결혼률을 높이고, 3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지원을 확대하여 다자녀 출산을 유도하는 방식을 선택함. 1990년에 이미 자녀 세액공제와 근로 어머니 자녀 감세 등을 도입하였으며, 2000년 베이비 보너스 제도의 일환으로 부모와 정부가 공동 저축하는 방식을 도입한 아동 발달 계좌를 도입함(Johns, 2012).

□ 2001년에는 예산을 크게 증액하여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정책을 도입함.

○ 정책 도입 당시에는 출산 장려 정책 성격이 강했으나, 2004년부터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통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여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함. 2013년부터는 결혼 지원, 주거 지원, 출산 및 임신 지원, 자녀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아버지 양육 참여 지원의 여섯 분야로 확대됨(신윤정, 2014: 86).

□ M&P Package 정책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은 주거 지원, 자녀 양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음. 싱가포르에서 다자녀 가구의 자녀 양육은 주로 현금 방식을 통해 지원되고 있으며, 보육 시설 이용이나 부모의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은 자녀수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음. 다자녀 가구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은 일하는 어머니에 대한 세금 감면 방식으로 지원함.

다. 싱가포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1) 현금 지원 제도[110]

□ 출산 축하금(Baby Bonus Cash Gift)

○ 지급 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출산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액: 첫째아 또는 둘째아를 출산한 경우 S$8,000[111]을 지급,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는 S$10,000을 일시불로 지급.

□ 아동 발달 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CDA)

○ 아동 발달 계좌는 부모의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한 베이비 보너스 제도의 일부이며, 승인 교육 기관이나 의료 비용 등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저축 계좌임. 정부가 첫 예치금을 입금해주고, 그 다음 단계로 부모의 저축액과 매칭하여 정부가 추가 입금을 통해 지원

- 지급 기준: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출산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차등 지원
- 지급액: 정부가 아동 발달 계좌에 입금하여 지원하는 액수는 첫째아 및 둘째아의 경우 S$6,000, 셋째아 및 넷째아의 경우는 S$12,000, 다섯째아 이상의 경우는 S$18,000임.
- 지급기간: 자녀가 만12세 되는 해의 말일까지 저축 및 인출 가능

〈표 Ⅳ-4-2〉 싱가포르의 아동 발달 계좌 정부 지원액

단위: S$

출생순위	CDA 첫 예치금 지원	달러 매칭금	정부 총 기여금
첫째아 & 둘째아	3,000	부모 저축액: 3,000 정부 매칭금: 3,000	6,000
셋째아 & 넷째아	3,000	부모 저축액: 9,000 정부 매칭금: 9,000	12,000
다셋째아 이상	3,000	부모 저축액: 15,000 정부 매칭금: 15,000	18,000

자료: 싱가포르 사회·가족부 홈페이지, https://www.msf.gov.sg/policies/Strong-and-Stable-Families/Supporting-Families/Pages/Baby-Bonus-Scheme.aspx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0. 2. 20 인출)

110) 싱가포르 사회·가족발전부 홈페이지, https://www.msf.gov.sg/policies/Strong-and-Stable-Families/Supporting-Families/Pages/Baby-Bonus-Scheme.aspx (2020. 2. 20 인출)

111) 싱가포르 달러(S$) 환율(2020. 3. 19 기준) : 1S$=883.39원

2) 기타 지원 제도

□ 부모 세금 환급(Parenthood Tax Rebate:PTR)[112]

○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자녀당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이 증가함.

- 첫째아는 S$5,000, 둘째아는 S$10,000, 셋째아 이상은 S$20,000임.

□ 일하는 어머니 자녀 감세(Working Mother's Child Relief(WMCR)[113]

○ 일하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수에 따라 소득공제 비율을 높여 주는 제도임. 즉,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자녀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증가함.

- 첫째아의 소득공제율은 15%, 둘째아는 20%, 셋째아 이상은 25%임.

□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114]

○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무주택 가구에게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는 지원 제도임.

- 지급기준: 부부합산 연소득이 약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액 및 금리: 최대 2억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2.6~3.4% 차등금리를 적용함. 다자녀 가구는 금리 우대 적용 대상임(0.5%)

5. 일본

가. 일본의 출산 현황

□ 일본의 출산율은 예외적인 수치를 나타내는 해나 다소 추이 변동이 있는 시기가 있었으나, 1차 베이비부머(1947년~1950년생) 세대가 결혼하고 자녀를 출생하는 시기를 지나 197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 감소 추이를 보임. 2005년에는 역대 최저 합계출산율인 1.26명을 기록함. 이후 점차 출산율을 회복하

112) 싱가포르 가족지원 정보 사이트 heybaby, https://www.heybaby.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m-p-infographic_final_march-20199cb6909ef0cf473b9d92869ec0421ba4.pdf (2020. 1. 29 인출).

113) 싱가포르 가족지원 정보 사이트 heybaby, https://www.heybaby.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m-p-infographic_final_march-20199cb6909ef0cf473b9d92869ec0421ba4.pdf (2020. 1. 29 인출).

114) 강미나·박미선, 2013: 3.

면서 2012년 이후에는 합계출산율 1.4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음(조성호, 2016: 31; 장경희·유해미, 2019: 5).

○ 일본은 백말띠 해인 1966년 백말띠 여아는 성정이 사납고 남편의 생명을 단축한다는 미신이 횡행하면서 출산 기피 현상으로 출산율이 급락하여 1.58명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베이비부머 세대가 결혼적령기에 접어들면서 2.1명 이상의 출산율을 보였음.

○ 197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처음으로 인구대체수준 이하인 2.0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이후 점진적 하락세를 보이면서 1989년 합계출산율 1.57명을 기록함.

○ '1.57 쇼크' 이후로도 일본 출산율은 점증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면서 2005년에는 1.26명으로 역대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임. 그러나 이후 출산율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2012년에는 1.41명으로 15년 만에 합계출산율 1.4명 이상으로 상승함. 2012년 이후에는 계속 1.4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1.43명임(그림 Ⅳ-5-1 참조).

[그림 Ⅳ-5-1] 일본의 합계출산율 추이 (1965~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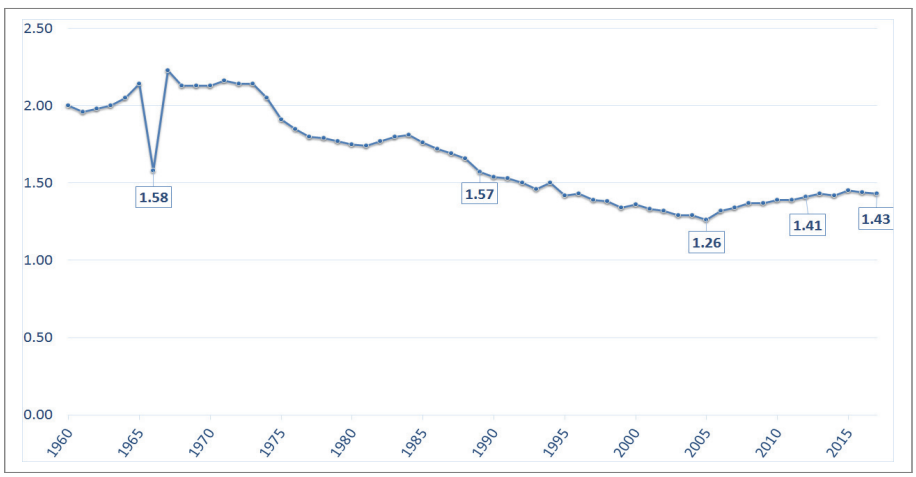

자료: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SF2.1 : Fertility rate. xls를 바탕으로 재구성(2020. 1. 28 인출).

□ 일본의 다자녀 비율은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낮은 편이며, 합계출산율 증감과 셋째아 이상 다자녀 비율의 변화도 대체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Ⅳ-5-1 참조).

○ 일본은 1989년 합계출산율 1.57명을 기록한 이후 1990년대에 출산율 감소 추이를 보였는데, 셋째아 이상 출생 비율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임.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셋째아 이상 출생 비율이 14%로 역대 최저를 기록함. 반면, 첫째아 출생 비율은 2000년대 초까지 증가 추이를 보였음.

○ 2005년 이후로는 셋째아 이상 출생 비율도 다소 증가세를 보이면서 2017년 기준 16.7%를 기록함.

〈표 Ⅳ-5-1〉 일본의 출생순위별 출생아 비율(1990~2017년)

년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1990	43.2	37.5	19.3
1991	45.1	36.8	18.1
1992	46.0	36.5	17.4
1993	47.0	36.3	16.8
1994	47.6	36.1	16.3
1995	47.8	36.1	16.1
1996	47.6	36.8	15.6
1997	48.0	36.7	15.4
1998	48.5	36.5	15.0
⋮	-	-	-
2001	49.0	36.6	14.4
2002	49.5	36.5	14.0
2003	48.7	37.3	14.0
2004	48.4	37.6	14.0
2005	48.2	37.6	14.2
2006	48.0	37.4	14.6
2007	47.7	37.0	15.3
2008	47.4	36.9	15.7
2009	47.9	36.5	15.6
2010	47.6	36.4	16.0
2011	47.1	36.5	16.4
2012	46.7	36.9	16.4
2013	46.7	36.8	16.4
2014	47.3	36.3	16.4
2015	47.5	36.1	16.3
2016	47.1	36.4	16.5
2017	46.4	36.9	16.7

주: 원자료에 1999, 2000년 데이터가 누락되어 있음.
자료: UN data, http://data.un.org/Data.aspx?d=POP&f=tableCode%3A58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작성함(2020. 3. 5 인출).

나. 일본의 다자녀 지원 정책 추진 배경 및 특징

□ 일본은 1989년 1.57쇼크 이후 출산과 육아가 용이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왔음(장경희·유해미, 2019).

○ 1966년 백말띠 해와 같은 예외적인 외부 출산억제 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1989년에 더 낮은 출산율을 보이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 일본 정부는 이를 '1.57 쇼크'로 표현함.

○ 일본 정부는 저출산의 심각한 사회적 영향력을 인식하고 출산 및 육아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엔젤플랜(1995), 신엔젤플랜(2000), 소자화사회 대책(2003), 자녀·육아 응원 플랜(2005), 신소자화대책(2006) 등 저출산 정책을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함.

○ 일본 정부는 여성의 경제활동, 일가정양립을 지원하는 것이 출산율 제고로 연결될 것이라고 판단함. 이에 보육정책에 중점을 둔 엔젤플랜을 1995년부터 실시하였음. 엔젤플랜은 0~2세 보육, 연장보육 등 보육 대상 및 시간을 확대하여 보육의 양적 확대에 기여함. 신엔젤플랜에는 보육정책 뿐만 아니라 고용, 보건,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도입함(조성호, 2016).

○ 일본은 저출산 정책을 후생노동성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나 부처 간 협력을 통한 다양한 정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내각부에서 저출산 정책을 관할하도록 법제화한 '소자화사회대책기본법'을 2003년 제정함. 소자화사회대책은 젊은 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여 비혼 및 만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녀·육아응원플랜으로 이어졌음(조성호, 2016).

□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 이에 보육시설 대기아동 증가가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함. 일본 정부는 해결책으로 이원화된 보육시설을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며, 2012년에 아동·영유아 양육지원법을 제정하여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음(조성호, 2016; 장경희·유해미, 2019).

○ 유치원과 보육소의 통합을 위해 내각부에 '자녀·육아본부'가 신설되었음.

□ 일본은 다자녀 가구 지원을 명시한 정책이나 제도 안에서 다자녀 가구 혜택을 크게 확대한 국가라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면서 아동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지자체 차원에서 육아 친화 환경 조성 사업이나 육아 지원 사업 중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서비

스가 있음.

○ 일본은 유자녀 가구에 대한 일가정 양립 지원이나 육아 친화적 환경 조성에서는 특정한 기준을 두지 않고 보편적 지원 방식을 택하고 있으나, 보육료 및 아동수당 지원에서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의 기준으로 연령, 자녀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고 있음(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 일본의 육아지원 패스포트 사업은 민관협력을 통해 사회 전반적인 육아 문화를 개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구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지원 수준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 대상 우대 사업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실시하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다. 일본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1) 현금 지원 제도

□ 1971년 아동수당법이 도입되고, 1972년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됨. 지급아동 연령과 급여액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2012년에 현재 아동수당의 구조를 갖춤(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90; 장경희·유해미, 2019: 61~68).

○ 일본의 아동수당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생활안정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일본에서 아동수당 도입의 필요성은 1959년 UN의 아동권리선언 채택에 따른 대응 모색과 출산율 저하가 맞물리면서 제기됨. 1960년대에는 노동정책 관점에서 사업주 갹출을 바탕으로 한 아동수당 도입이 논의됨.

○ 아동수당 도입 당시에는 소득수준을 고려하여 5세 미만 셋째 자녀부터 지급되었으며, 월 지급액은 3,000엔이었음. 일본의 아동수당은 사회적 합의 없이 도입되어 초기에는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1989년 1.57쇼크 이후에 분위기가 반전되어 1990년대에는 육아지원을 위한 아동수당의 확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짐(최영진·전일주, 2015; 장경희·유해미, 2019: 62~63).

○ 2006년 4월 아동수당법 개정을 통해 지급대상이 초등학교 졸업 이전의 아동으로 확대되었으며, 소득기준이 상향 조정되어 지급률이 90%로 인상됨. 2007년 개정 이후에는 3세 미만 아동은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

급받고, 3세 이상 아동은 셋째 자녀부터 증액된 아동수당을 지급받음. 2009년에는 중학생까지 지급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소득 제한 기준이 삭제되었음. 그러나 2012년 다시 소득제한을 재도입함(장경희·유해미, 2019: 63~64).

○ 지급기준: 연소득 960만엔[115] 이하의 가구이며 중학교 졸업 이전 아동(만 15세가 된 최초 3월 31일까지의 자)과 생계를 같이하면서 일본 거주 중인 부모 또는 일본에 거주하면서 아동을 돌보는 부모 지정자에게 지급함.

○ 지급액: 자녀 연령 및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됨. 3세 미만 자녀는 월 15,000엔,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첫째아, 둘째아는 월 10,000엔, 셋째아부터는 15,000엔, 중학생은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10,000엔 지급. 일본 「아동수당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당분간 소득상한액 이상인 가구에게도 중학교 졸업 이전 자녀 한 명당 5,000엔을 특례로 지급함.

〈표 Ⅳ-5-2〉 일본의 아동수당 월 지급액

단위: 엔

구분		출생 순위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소득상한액 이하	만3세 미만	월 15,000	
	만3세 ~ 초등학생	월 10,000	월 15,000
	중학생	월 10,000	
소득상한액 이상		월 5,000	

자료: 장경희·유해미(2019),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p.67를 바탕으로 작성함.

2) 보육료 지원

□ 2019년까지는 가구 수입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한부모 여부 또는 다자녀 여부에 따라 보육료 감면 혜택[116]을 주었으나, 2019년 5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을 위한 양육지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다자녀에 상관없이 무상 보육을 실시하게 됨(장경희·유해미, 2019: 56).

○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은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됨(장경희·유해미, 2019: 56).

115) 엔화 환율(2020. 3. 19 기준): 100엔(¥)=1,173.07원

116) 한부모 가구는 첫째아 50% 감면, 둘째아부터 무상 보육 지원되며, 일반 가구는 동일세대에 2명 이상 취학 전 아동이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둘째아 50% 감면, 셋째아는 무상 보육을 지원함(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91).

○ 지급기준

- 만 3세부터 취학 전 모든 유아와 주민세 비과세 가구 중 맞벌이 등으로 인해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0~2세 영유아에게 보육료 무상 지급.
- 급식비, 통원차량비, 행사비는 실비 징수하나, 연소득 360만엔 미만 가구는 급식비도 지원함.

○ 이용료 월 상한액

- 이용료 지원 월 상한액은 아동의 연령 및 보육의 필요성에 따라 구분됨.
- 유치원 유아(1호 인정: 만3세부터 교육표준시간(4시간) 무상): 월 상한액 25,700엔
- 보육 필요 인정 유아(2호 인정: 가정보육이 불가능한 3~5세로 만3세 이후 4월부터 단시간 보육(8시간), 표준보육시간 보육(11시간) 무상): 월 상한액 37,000엔
- 0~2세: 월 상한액 42,000엔

6. 소결

□ 앞서 살펴본 5개국의 명시적인 다자녀 가구 정책을 요약하면 〈표 Ⅳ-6-1〉과 같음.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을 도출함.

○ 프랑스는 보편적 가족정책 내에서 세밀한 제도 설계를 통해 가장 적극적으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로 판단됨. 다시 말해, 프랑스는 보편적 지원 제도 내에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구를 우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라고 할 수 있음. 또한 다자녀 가구에게 증액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 이외에 지급 기준에서 다자녀 가구의 소득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휴가·휴직 제도는 이용 가능한 기간이 연장되는 방식임.

○ 독일은 다자녀 가구 지원을 인구 정책적 관점이 아닌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 측면에서 도입한 국가임. 또한 다자녀 가구를 3자녀 이상 가족으로 지칭해왔으나, 비교적 최근 도입된 제도들에서는 자녀수 증가에 따라 지원 강화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짐. 추가아동수당, 추가 부모

수당, 주택아동수당이 모두 이에 해당됨.

○ 스웨덴은 대표적인 보편적 복지국가이며, 보편적 가족정책 내에서 급여의 충분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이러한 이유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별도의 제도가 크게 발달한 국가는 아니라고 판단됨. 다만, 명시적인 다자녀 아동수당,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 다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등 일반적 가족정책 내에 다자녀 가구가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둠으로써 다자녀 가구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M&P Package 패키지 정책을 통해 아동과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싱가포르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아동 발달 계좌 제도를 도입하는 등 타 국가와 다른 다자녀 가구 지원 방식을 모색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함. 아동 발달 계좌 제도는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부모가 아동양육을 위한 예비비를 모을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점에서 다른 제도와 차별됨. 또한 싱가포르는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을 조세 지원 방식을 통해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짐. 그러나 싱가포르에서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다자녀 출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아 싱가포르 다자녀 정책의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 일본은 다자녀 지원이 크게 발달한 국가라고 볼 수는 없음. 다만, 아동수당 제도에 셋째아부터 증액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최근에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는 등 보편적 지원을 확대하여 아동의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이상의 해외 사례 분석과 논의를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음.

○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지원보다는 자녀수 증가에 따른 점증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프랑스는 대부분의 지원 제도에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독일도 최근 도입된 제도들은 2자녀 이상 또는 자녀수 증가에 따른 지원 강화임. 스웨덴의 다자녀 아동수당도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육료 지원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증가함. 싱가포르 현금지원은 셋째아부터 증액되지만,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세제 지원에서는 둘째아부터 혜택을 강화하고 있음.

○ 아동수당 등 이미 도입된 보편적 지원 제도 안에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일본은

보편적인 수당 제도 내에 자녀수에 따른 차등적 지급이나 추가 수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지원 방식이나 지급 대상자 선정 방식에서 다자녀 지원을 고려하여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즉, 지급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식뿐만 아니라 지원 기준이나 지원 방식을 통해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이 주어지도록 하는 방식을 말함. 예를 들면, 프랑스의 경우 대부분의 가족 관련 지원 기준에서 연소득 상한선이 자녀수 증가에 따라 상승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였으며, 다자녀 부모의 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혜택을 주고 있음.

○ 스웨덴의 다자녀 아동수당이나 프랑스의 2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수당, 독일의 다자녀 추가부모수당과 같이 수당제도나 육아휴직급여 등에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를 명시한다면 다자녀 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해외의 정책 모델을 도입할 뿐만 아니라, 싱가포르의 아동발달계좌 또는 독일의 주택아동수당 등과 같이 우리나라 다자녀 가구의 고충을 파악하여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음.

〈표 Ⅳ-6-1〉 5개국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제도

구분		내용
프랑스		
가족 및 아동 관련 현금지원	출산·입양 지원금	• 자녀수에 따라 연소득 기준을 차등 적용하여 일시불로 지급 • 출산 자녀 당 944.51유로, 입양 자녀 당 1,889.02유로
	기초수당	• 만 3세 미만 출산 자녀 또는 20세 미만 입양 자녀를 둔 일정 소득 이하 가족에게 자녀수, 맞벌이 및 한부모 여부에 따라 연소득 상한선 기준을 차등 적용 • 1차 소득상한선 미만인 경우 월 184.62유로, 2차 소득상한선 미만인 경우 월 92.31유로 지급
	가족수당	• 만 20세 미만 부양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게 자녀수에 따라 연소득 기준을 차등 적용하며, 자녀수 및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 2자녀: 131.55유로, 65.87유로, 32.89유로 3자녀: 300.10유로, 150.05유로, 75.03유로 4자녀 이상: 468.66유로, 234.33유로, 117.16유로 자녀가 14세 이상일 경우 가족수당 지급액에 추가급여액 부가
	가족보조금	• 만 3세 이상 만 21세 미만 부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게 소득 기준에 따라 지급되며, 맞벌이 및 한부모 여부에 따라 연소득 상한선 기준 차등 적용 • 연소득 기준에 따라 월 256.85유로 또는 월 171.22유로 지급

구분		내용
휴가 및 휴직 지원	자녀교육 분담 수당	• 육아휴직제도에서 지급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 부여. 자녀수에 따라 사용가능한 자녀 상한 연령 및 지급 기간이 차등 적용 • 월 급여액: 비근로자의 경우 월 390.92유로, 50% 이하로 근로하는 경우 252.71유로, 50%~80% 근로하는 경우 145.8유로(2019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적용)
	출산 휴가	• 모성휴가 기간이 출산 예정인 자녀를 포함한 자녀수에 따라 차등 부여 • 첫째아 또는 둘째아 출산 예정: 출산 전 휴가 6주, 출산 후 휴가 10주(총 16주)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예정: 출산 전 휴가 8주, 출산 후 휴가 18주(총 26주) 쌍둥이 출산 예정: 쌍둥이는 총 34주, 세 쌍둥이는 총 46주 • 부성 휴가: 배우자가 한 명 출산했을 경우 최대 11일, 쌍둥이 이상 출산했을 경우 최대 18일
보육료 지원	보육방식 자유 선택 보조금	• 보육방식 자유선택 보조금의 연소득 기준은 자녀수와 한부모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급여액은 보육방식과 가족형태에 따라 차등 지급 • 보육방식과 한부모 여부에 따라 연소득 기준 구간별로 차등 지급. 단, 보육비용의 최소 15%는 부모가 자부담으로 지불
기타	대가족 카드	• 대가족 카드는 프랑스 국영철도에서 만 18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에게 발급하며, 자녀수 증가에 따라 할인율 증가 • 철도 이용뿐만 아니라 놀이공원, 식당, 호텔 등 다양한 가맹점에서 할인 혜택
	세제 지원-과세소득 부담 완화	• 세대단위로 과세하며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족분할계수가 상승하여 감세 효과
독일		
가족 및 아동 관련 현금지원	아동수당	• 기본적으로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며(조건에 따라 만 25세까지 연장 가능), 셋째아부터 증액 • 2020년 기준 첫째아와 둘째아는 204유로, 셋째아는 210유로, 넷째아 이상은 235유로 지급
	추가아동수당	• 자녀수를 고려하여 부모의 소득기준이 산정되며 소득하한선 이상 상한선 이하인 경우 지급 • 2020년 기준 아동 당 최대 월 185유로
휴가 및 휴직 지원	쌍둥이 부모수당	• 쌍둥이 자녀수가 증가할 때마다 300유로씩 증가(쌍둥이 300유로, 세 쌍둥이 600유로, 네쌍둥이 900유로)
	다자녀 추가 부모수당	• 기본 부모수당에 해당하는 자녀 이외에 추가 자녀로 인정되는 자녀를 함께 양육하고 있는 경우 지급 • 지급액: 부모수당의 10%, 하한액 월 75유로, 상한액 월 180유로 • 쌍둥이와 다자녀로 인해 증액될 경우 부모수당 상한선(월 1,800유로) 미적용

구분		내용
보육료 지원	보육료 감액	• 다자녀 가구의 보육료 감액이 연방정부의 기본 방침이며 주정부에 따라 지원 정도가 상이 • 최근 무상보육을 실시하거나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한 주들이 있음
기타	주택아동수당	• 아동수당 수급자격을 가진 자로서 자가주택 신축 또는 구입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한 자녀인 경우 연 가구소득 상한선은 90,000유로, 추가 자녀 당 15,000유로씩 상한선 상승 • 만 18세 미만 자녀 당 연 1,200유로 보조금 지급, 최대 10년간 지급
스웨덴		
가족 및 아동 관련 현금지원	다자녀 아동수당	• 만 16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에게 다자녀 아동수당 추가 지급 • 자녀 1명당 1,250크로나 지급, 자녀 2명 150크로나, 3명 730크로나, 4명 1,740크로나, 5명 2,990크로나, 6명 4,240크로나
휴가 및 휴직 지원	부모휴가	• 기본적으로 아동 당 부모휴가급여 지급기간은 480일이며, 쌍둥이의 경우 사용 가능한 부모휴가 일수 연장 • 쌍둥이 660일(소득대체율 80% 급여 480일+기본 급여 180일) 세쌍둥이 840일(소득대체율 80% 급여 660일+기본 급여 180일) 네쌍둥이 1,020일(소득대체율 80% 급여 840일+기본 급여 180일) • 스피드 프리미엄 제도: 24개월 이내에 추가 출산(둘째 자녀)을 할 경우 첫째 출산 시기 임금을 기준으로 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보육료 지원	보육료 감액	• 소득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보육료 상한선 있음. • 자녀의 출생순위에 따라 소득대비 보육료 비율이 차등 적용되며 넷째 자녀 이상은 보육료 전액 면제
싱가포르		
가족 및 아동 관련 현금지원	출산 축하금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출산 자녀수에 따라 일시금 차등 지급 • 지급액: 첫째아 또는 둘째아 S$8,000, 셋째아 이상 S$10,000
	아동 발달 계좌	• 승인 교육 기관이나 의료 비용 등을 지불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 저축 계좌 • 정부가 첫 예치금을 입금 후 부모의 저축액과 매칭하여 정부가 추가 입금하는 방식 • 지원액: 첫째아 및 둘째아 S$6,000, 셋째아 및 넷째아 S$12,000, 다섯째아 이상 S$18,000
기타	부모 세금 환급	• 자녀수 증가에 따라 각 자녀당 받을 수 있는 세금 환급액 증가 • 첫째아 S$5,000, 둘째아 S$10,000, 셋째아 이상 S$20,000
	일하는 어머니 자녀 감세	• 일하는 어머니 대상으로 하며,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 자녀당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이 증가 • 소득공제율: 첫째아 15%, 둘째아 20%, 셋째아 이상 25%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 부부합산 연소득이 약 6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에게 2.6~3.4% 차등금리를 적용하여 주택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며, 다자녀 가구에서 0.5% 금리 우대 적용

구분		내용
일본		
가족 및 아동관련 현금지원	아동수당	• 연소득 960만엔 이하의 가구에 중학교 졸업 이전 아동(만 15세가 된 최초 3월 31일까지의 자) 부모 또는 부모 지정자 • 자녀 연령 및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 • 지급액: 3세 미만 자녀 월 15,000엔, 만 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첫째아, 둘째아 월 10,000엔, 셋째아 이상 15,000엔, 중학생은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10,000엔, 소득상한액 이상인 가구는 중학교 졸업 이전 자녀 한 명당 5,000엔을 일시적으로 지급 중
보육료 지원	다자녀 보육료 감면→유아교육·보육 무상화	• 2019년까지는 가구 수입이 일정액 이하일 경우 한부모 여부 또는 다자녀 여부에 따라 보육료 감면 혜택 부여 • 2019년 5월 유아교육·보육 무상화 정책을 위한 양육지원법 개정 국회 통과로 인해 다자녀에 상관없이 무상 보육 실시

자료: 본 표는 'Ⅳ. 해외 다자녀 가구 지원 사례'를 요약한 내용임.

V

다자녀 가구의 정책적 요구

01 심층면담 개요

02 다자녀 가구의 장점 및 양육 시 어려움

03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의견

04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05 소결

Ⅴ. 다자녀 가구의 정책적 요구

1. 심층면담 개요

□ 다자녀 가구들의 정책에 대한 인지와 정책적 요구를 심층면담을 통해 고찰함.

○ 총 18개 가구, 6개 집단에 대한 면담을 진행함. 지역과 자녀수를 고려하여 표집하였으며, 가구 내 영유아 자녀는 1명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표집함.

- 결과적으로 초등이상, 중고등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가 자연스럽게 표본에 포함되어 조사되었음.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심층면담 대상자의 인적 특성은 다음과 같음.

〈표 Ⅴ-1-1〉 다자녀 가구 심층면담 면담자 특성

그룹	일련번호	지역	자녀수	자녀의 연령 구성				모 연령대	모 직업	맞벌이 여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	1	서울	3	5	2	2	-	40대	교사	맞벌이
	2	서울	3	13	9	1	-	40대	주부	외벌이
2	1	서울	2	5	1	-	-	30대	주부	외벌이
	2	서울	2	5	1	-	-	30대	주부	외벌이
	3	서울	2	5	2	-	-	40대	프리랜서	맞벌이
	4	서울	4	13	9	8	5	40대	주부	외벌이
3	1	세종	3	13	10	6	-	40대	주부	외벌이
	2	세종	3	12	8	5	-	40대	의료서비스	맞벌이
	3	세종	3	9	7	5	-	30대	교사	맞벌이
	4	세종	3	7	6	1	-	30대	연구원	맞벌이
4	1	세종	2	8	4	-	-	30대	회사원	맞벌이
	2	세종	2	8	4	-	-	40대	주부	외벌이
5	1	경북	4	11	8	8	0	40대	주부	외벌이
	2	경북	3	10	8	4	-	40대	간호사	맞벌이
	3	경북	4	11	9	8	0	30대	주부	외벌이
6	1	경북	2	5	3	-	-	30대	사무직	맞벌이
	2	대구	2	4	1	-	-	30대	학원(운영, 강의)	맞벌이
	3	대구	2	7	0	-	-	30대	대학연구교수	맞벌이

주: 자료는 만나이(생활연령) 기준임.

□ 지역별로 다자녀 지원 기준(다자녀 카드 발급 기준)은 서울은 2명부터, 세종은 1명부터, 경북 및 대구 지역은 자녀가 3명인 경우부터 지원하는 지역임.

○ 각 지역에서 자녀가 3명이상인 가구와 자녀가 2명인 가구를 고르게 섞어서 면담 대상자를 선정함.

○ 다자녀 가구의 요구는 자녀 수 뿐 아니라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심층면담 참석자 중 맞벌이 가구가 10가구, 외벌이 가구가 8가구 표집.

- 자녀수가 2명인 가구와 3명이상인 가구의 맞벌이 가구 수는 동일함.

〈표 Ⅴ-1-2〉 자녀수 및 맞벌이 여부별 심층면담 대상자

단위: 명

자녀수	맞벌이	외벌이	전체
2명	5	3	8
3명이상	5	5	10
전체	10	8	18

○ 자녀의 연령(학령기 기준으로) 중고등학령기 이상 자녀가 있는 가구가 4가구였으며, 초등학령기 자녀가 있는 경우가 12가구(자녀 기준으로 19명) 포함됨.

- 표집 단계에서 최소한 영유아 자녀가 1명이라도 포함된 가구를 기준으로 면담대상자를 선정하였으므로, 총 18개 가구 모두에 영유아 자녀는 1명이상 포함되어 있으며, 자녀 기준으로 총 26명의 영유아 자녀가 면담 대상자 가구에 포함되어 있음.

〈표 Ⅴ-1-3〉 자녀별 출생순위별 연령

단위: 명

자녀수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넷째자녀	전체
영유아기	6	10	7	3	26
초등학령기	8	8	3	-	19
중고등 이상	4	-	-	-	4
전체	18	18	10	3	49

□ 다자녀 가구 심층면담에서 주로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다자녀 가구 출산 동기, 다자녀 가구의 장점과 다자녀 양육시의 어려움.

○ 현재 거주 지역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도움 정도, 사유.

○ 현행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혹은 지원 기준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 및 사유.

○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지원 강화가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정책 지원의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2. 다자녀 가구의 장점 및 양육 시 어려움

□ 다자녀 가구의 대부분은 자녀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며 원만한 사회관계를 형성한다는 점, 혈연 관계의 가족의 필요성, 상호 작용을 통해 부모의 돌봄 필요가 감소하는 부분 등을 다자녀 가구의 장점으로 꼽음.

> 저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육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놀이 상황에서. 지금은 혼자 아이를 어디 보내고. 잠깐 할머니 데리고 있으면. 아이가 심심해하거나 하는데. 확실히 셋이 있으면 같이 놀기 때문에. 제가 셋을 커버하기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을 때 자연스럽게 큰 애가 막내를 챙기고 저는 둘째를. 자연스럽게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건 있어요.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서로가 챙겨가면서 지내는 거. (심층면담 3차, 3번 면담자)

> 둘이 놀 수 있고. 주변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때 아기를 낳아야겠다. 생각이 많이 든대요. 장례식장 같은 데 가면 자녀가 혼자 앉아있거나 하면 애를 하나 더 낳아야겠다. (심층면담 4차, 2번 면담자)

> 일단 의지가 돼요. 엄마나 아빠가 바빠서 없으면, 형제가 있으면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 놔두고 가면 마음이 좀 그런데. 지들끼리 같이 있으면 같이 힘이 되고 같이 놀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심층면담 5차, 2번 면담자)

□ 반면, 경제적 어려움의 가중을 다자녀 가구의 어려움으로 지목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 중에서도 특히 교육비 부담에 대한 호소가 많음.

> 이제 애가 셋이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 년 쉬면서도 다시 나가야 하나. 그만큼 수입이 있던 게 없어지니까 경제적인 면에서. (심층면담 5차, 2번 면담자)

> 경제적으로도 아무래도 교육비 부분인 것 같아요. 하다못해 키즈카페 큰아이랑은 되게 많이 갔는데, 두 아이를 데리고 가기에는. 큰아이랑 가면 한 2~3만 원. 두 아이를 데리고 가면 5~6만 원이라. 안 가게 되고. (심층면담 2차, 2번 면담자)

학원도 좀 보내줘야 할 것 같은 시점이 왔는데. 교육비가 사실 부담스럽긴 해요. 그게 제일 걱정이기도 하고. 맞벌이해야 하나 다시. 그런 것들. (심층면담 2차, 3번 면담자)

○ 한편, 사회적 인식과 여가 문화 생활의 향유 어려움을 다자녀 양육 시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경우도 있음.

식당을 가도. 식구가 다섯(이라). 애기가 셋이라고 하면 순위가 밀리고. 세팅 자체도 아무래도 4인 구성으로 거의 세팅이 되고. 차도 아무래도. 사이드가 있고 가운데는 좀 불안한 경우도 있고. 요새 같을 때는 막내도 커버리니까. 숙소 예약을 하려고 해도 벌써 애가 셋이면 안 되는 데도 엄청 많고. (심층면담 3차, 2번 면담자)

○ 돌봄 인력을 구하기 힘들다는 불만도 높았음.

일단 힘들고. 누구 도움 없이 키우는 게 불가능하고. 사람을 구하는 것도 거의 힘들고. 웬만하면 3명인 집에 안 오고. 수요가 많은데. 외자녀 애들도 많을 텐데 굳이 3명, 4명 있는 집에 안 오려고 하니.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심층면담 1차, 1번 면담자)

○ 또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정서 지원이 자녀가 적은 가구에 비해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내치기도 함.

일대일이 아니다 보니. 이 아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줄 수 없잖아요. 시간을 할애해서 얘랑 하루 보내고 얘랑 하루 보내도. 나머지 둘은 아쉬움이 분명 있으므로. 엄마 아빠는 둘인데. 우리 둘이서 이렇게 아이 셋을 키우려다 보니 감성적인 부분을 다 들어줄 수 없는 거고. (심층면담 3차, 1번 면담자)

저는 자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애가. 엄마 몸을 네 개로 나눴으면 좋겠다고. 엄청 자주 얘기하거든요. 우리 애들이. 애들이 한 번에 얘기할 때 들어주기가 버거울 때가 사실 많기는 많아요. 육아에 대한.(심층면담 5차, 3번 면담자)

내가 맞벌이인데 일을 하겠다는 게 내가 선택해서. 애들한테도 뭔가 좀 소홀한 면이 있고 내가 애들한테 못 해주는 면도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거지만. 주위에서 자꾸 하거든요. 애한테 집중하라고. (심층면담 5차, 2번 면담자)

□ 2자녀 가구에게 셋째 이상의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대체적 부정적 반응이 높았으며, 그 이유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혹은 경력단절 등에 관한 우려가 가장 많이 응답되었음.

그래서 애를 열심히 키우다 보면. (중략) 점점 더 돈이 필요할 때는 엄마는 일해야 하는데

애들한테 버려져서. 그때는 사실 본인이 했던 커리어에 비해 훨씬 낮은 일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제일 나쁘다고 생각해요. 더 낳기 싫은 이유? 여자가 정말 저도 취직할 때 경력단절 여성으로 우대가산점을 받고 들어갔어요. 경력을 안 단절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그래야 애기도 더 낳을 수 있는 거고. (심층면담 4차, 1번 면담자)

주위에 고민보다는 정말 눈치를 많이 줬어요. "네가 그 나이에 셋째 낳을 생각을 하다니 정말 대단하다.". 제가 그때 5년 전이니까 15년 차 됐을 텐데 "그때가 됐으면 둘째까지 다 키우고 회사에 충성하지 않냐" 하고 회사에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중략) 직장에서는 받아주지 않고 직장 승급이나 이런 거에 마이너스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되니까 다른 동기보다 진급도 늦어지고.(심층면담 5차, 2번 면담자)

또 애를 키우고 나서 다시 일해야 한다는 공백기. 다시 일해야 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도 셋째는 지금 생각하면 아닐 것 같아요(심층면담 6차, 2번 면담자)

○ 또한, 육아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 후속 출산에 대한 생각이 변화한 경우도 있음.

원래 생각이 없을 때는 세 명 낳아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첫애를 낳고 키우다 보니. 주변에서 낳고 기르는 걸 보게 되고. 저도 처음 낳고 겪게 되고 하니까. 그러니깐 안 낳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둘째가 생긴 거고. 터울이 좀 있거든요. 네 살 정도 터울이 나서. 세종 와서 아기를 가질까 하던 찰나에 생겼어요. 그래서 터울이 큰데. 낳고 보니 지금 현재는 셋째를 낳을 생각은 없어요.(심층면담 4차, 2번 면담자)

저는 경제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겠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부담돼서는 아니었고. 둘째 아이가 아주 아팠어요. (중략) 이 아이를 끝까지 평생 양육할 수 없는. 적어도 사회기반 사회진출할 수 있을 때까지는. 잘 양육할 수 있을까 봤을 때. 저희 건강이 늦은 결혼으로. 건강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고. 그리고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기는 하지만, 이 아이를 건강하게 인성이나 경제적으로나 여러모로 지원했을 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미래가 보이진 않았어요.(심층면담 4차, 1번 면담자)

□ 3자녀 가구에게 셋째 이상의 자녀 출산이 계획된 것인지 질문한 결과에서는 계획 출산인 경우와 계획하지 않았으나 출산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섞여 있음.

○ 계획 출산인 경우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에서는 다자녀 가구가 형제애 혹은 원만한 사회성을 갖게 된다는 인식에 기인한 경우가 많음.

아이는 부모가 떠나고 나면 기댈 곳이 둘 이상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셋까지는 낳아야지. 둘이 결혼해서 둘을 낳으면 그렇지만. 셋은 낳아야 경제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겠어. 라는 생각도 해서 셋까지 낳을 생각을 했어요. (심층면담 3차, 1번 면담자)

3.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 및 의견

가. 현행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다자녀 가구의 체감은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상태임.

딱히. 엄청 체감은 (안돼요). (심층면담 3차, 3번 면담자)

없죠? (다른 면담자에게) 제가 모르는 거 아니죠? (심층면담 3차, 2번 면담자)

애기 낳으면 이렇게 지원해줄게. 이건 많아진 것 같아요. 셋을 낳으면. 아니면 둘이면 두 자녀를 낳으면, 그거에 대한 혜택은 아직은 많지 않은. (심층면담 4차, 1번 면담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크게 혜택 본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심층면담 5차, 1번 면담자)

와닿는 거는 저는 애기가 어리다 보니까. 어린이집 같은 데서 우선순위가 돼서. 그런거 정도.(심층면담 1차, 1번 면담자)

○ 가장 인지 수준이 높은 정책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감면정책'임.

전기세 이런 거 얘기해야 하나. 다자녀 전기 할인.(심층면담 5차, 1번 면담자)

전기세. 수도세.(감면은 안다) (심층면담 1차, 2번 면담자)

○ 하지만, 지원액의 수준이 상한 등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만족도 혹은 수혜 체감도는 높지 않은 수준이라 볼 수 있음.

- 지원 금액의 증액을 원하기는 하지만, 부담 경감이라고 체감할 수준의 증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에 다수의 다자녀 가구가 동의함.
- 공공요금 감면이 소소한 기쁨을 주지만, 다자녀 가구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미한 지원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정서임.

공영주차장도 할인이라고 했는데. 사람 있어야 하는데. 사람 없이 기계 있는 데서는 할인 적용도 안 되고. 백 얼마를 받자고 또 그걸. (심층면담 1차, 1번 면담자)

네 그런 거는 정말 큰 금액이 아니여서. 너무 적어. (중략) 체감 느끼기가 없죠. (심층면담 5차, 1번 면담자)

○ 기차, 공공 주차장 등의 지원도 공공요금 지원과 유사한 문제임.

- 기차 등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실질적 혜택으로 느껴지지 않는 부분이 큼.

큰 도움이 되는 게 없죠. (심층면담 1차, 1번 면담자)

○ 영유아 가구에 대한 지원과 다자녀 가구 지원이 접목되어 있어 특별히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라고 구분되는 느낌을 주지 않거나, 다른 혜택이 더 커서 다자녀 혜택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이 지적됨.

다른 신용카드도 다 혜택이 있으니까.(심층면담 1차, 1번 면담자)

□ 한편, 출산 지원금 등의 지원이 자녀의 양육기 전반에 걸친 지원이 아닌 일시적 지원으로 효과의 지속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음. 즉, 양육기 전반에 걸친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큼.

그 출산 지원금은 주는데. 다자녀 카드 자체는 두 자녀부터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실제적으로 할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경제적으로 도움받는 거는 대출받을 때 금리 몇 퍼센트 할인해주는 거. 아니면 가스비랑 전기세, 이런 거 할인해주는 거. 그거 외에 키우는 데 드는 돈은 많은데, 혜택은 너무 적고. 내가 셋째를 낳아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낳으면 나만 고생이고 그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잖아요 아기를 낳으라고 하니까. 그런데 그 정책들이 지금 낳으면 얼마 줄게. 이거지 사실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이미 세 자녀를 낳으신 분들에 대한 혜택이 없어요. 그 사람들 말고 이제 앞으로 낳으면 첫째를 낳든. 그러니까 낳으라고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혜택은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심층면담 4차, 2번 면담자)

□ 이 외에 지자체 사업의 경우 정책 인지가 어려워 이용을 못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정보 제공의 강화를 희망하는 목소리도 있었음.

딱 신청하라고 공지가 왔으면 좋겠어. 자기가 정보 없으면 아무 혜택도 못 받아. 그런 것도 있었어.(중략)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팜플렛 갖다가 다자녀 이런 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팜플렛 이런 걸 보내줬으면. 적극적으로 나라에서 주는 건데 다 혜택을 받고 싶을 텐데. (심층면담 5차, 3번 면담자)

선착순이기 때문에. 물어보면 왜 안 하냐 하니까 사람이 너무 몰리면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 맘 카페가 있어서 알림 서비스를 해놨어요. (중략) 대충 들어서 그 사람이 올리는 거예요. 하면 언제까지 하는 거 알고 계세요. 하면 주위에 다자녀한테 기억해놓고 신청하라고. 이렇게 해서 아름아름해서 하는 식이지.(심층면담 5차, 1번 면담자)

나.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자녀가 3명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 확대를 지지하는 경향을 보임.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들은 육아지원 및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이 2자녀 이하로 낮아지는 것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혜택 범위가 커지는 형태의 제도가 설계가 필요하다는 점에 강하게 공감함.

> 한 명일 때 10만 원이지만, 두 명일 때는 20이 아니라 25라든가. 세 명일 때는 30만 원이 아니라 35 (중략) 나라에서는 개개인의 소득 수준을 봐야 한다. 하지만 어쨌든 만약에 개선된다. 라고 하면 한 명이면 가장 보편적인 지원이 10만 원. 아동수당이면. 가산. (심층면담 3차, 2번 면담자)

> 다자녀 기준은 두 자녀부터. 제 생각은 자녀 수에 따라 차별하는 게 바르다고 생각해요. 두 자녀하고 똑같이 그게 아니고. 세 자녀 네 자녀. 자녀 수에 따라서 차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심층면담 5차, 1번 면담자)

> 자녀가 있으면 다 해주고. 둘 있으면 퍼센트를 높이고 셋 있으면 퍼센트를 더 높여서. 이렇게 해야 조금 더 많이 낳지 않을까요.(심층면담 1차, 1번 면담자)

□ 2자녀 가구들도 다자녀 가구 지원의 기준이 2자녀로 낮추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점증(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셋이면 다자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내가 둘 키우니까 둘부터 다자녀라고 하면 좋겠어요. (심층면담 6차, 1번 면담자)

> 겪어보면 그러니까 한 명일 때 한 사람 있으면 되고 두 명일 때 두 명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둘이 되면 셋 넷은 있어야 둘을 제대로 케어할 수 있는데. 하나 있을 때 진짜 몰랐는데, 둘을 케어하면서 왔다 갔다 해보니 지원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다자녀로 인정을 해주는 게. 상황이 그렇다 보니.(심층면담 6차, 3번 면담자)

>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 점증 지원에 대한 질의) 기분 안 나쁠 것 같아요.(심층면담 6차, 2번 면담자)

□ 다자녀 가구들은 육아 지원 정책에서 우선순위에서 다른 가구 특성(맞벌이, 다문화 등)에 비해 다자녀 가구가 후순위라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음.

방과 후 프로그램이나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런 거 지원을 보면, 학비 지원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제 차상위나 이런 분들 있지만. 저희가 의아한 게 저희 동네에는 다문화 가정이 되게 많아요. 다문화 가정이 면제 대상자이잖아요. 저희 동네 다문화 가정은 아빠가 대학교 교수님이시고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세분화. 저희를 똑같이 맞춰달라는 건 아니지만, 형평성에서 좀 반감이 생기는 부분이 좀 많아요. (심층면담 5차, 1번 면담자)

□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자의 자녀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임.

○ 특히 양육비용의 부담이 자녀 연령이 많아질수록 증가하는데 반해, 다자녀 가구 육아 지원은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어, 지원 대상 자녀 연령의 확장을 통한 교육비 지원을 강하게 희망하는 경향성을 보임.

이제 고등학교까지(웃음). 학원비를. 영유아로 자르는 게 좀 그렇고. 학원비를 하려면 중고등학교 되면 배로 늘어나는데.(심층면담 3차, 2번 면담자)

어릴 때 보다 갈수록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 초등 고학년만 돼도. 근데 저학년 때 보통 지원되는 것도 미취학 아동 위주가 많더라고요. 미취학 애들은 오히려 돈이 적게 들잖아요. 부담이 훨씬 덜 하고. 학원 하나만 보내도 앞단 위가 많이 바뀌고. 갈수록 지원을 많이 해주는 게 바르다고 생각이 들거든요.(심층면담 5차, 3번 면담자)

저는 미성년자 될 때까지는. 고등학교 때까지 받는 게 맞고.(심층면담 5차, 1번 면담자)

저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는 지원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7세까지. 그 양육비 나오잖아요. 그거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심층면담 6차, 2번 면담자)

정말 분가할 때까지는 저희 집에 있는 자녀인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내 자녀가 아닌가. 그 생각이. 18살 쓰여 있길래. 나는 몇 년 후면 전기세 할인도 못 받고.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18살까지는 누가 만든 건지. 왜냐하면, 18살부터 걔가 돈을 벌어서 어디 나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까지 해줘야 하는. (심층면담 1차, 1번 면담자)

□ 한편,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지역별 격차 축소에 대한 의견도 많음.

00(지역)도 보니까 00(지역)는 지금 하고 있는 시장님의 자기 (실적 측면에서) 뭐지. 다자녀는 지하철 무료거든요. △△(지역)인데, 혹시 싶어서 가봤단 말이야. △△(지역)은 해당 사항에서 제외됩니다.(심층면담 5차, 3번 면담자)

(다자녀 카드 활용에 관한 대화 중) 지역을 떠나서 다 활용하게 해줬으면. 전체. 전국.(심층면담 5차, 2번 면담자)

다. 가구 특성별 지원 확대 희망 육아 지원 정책

□ 대부분의 가구가 자녀 양육의 어려움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꼽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 확대에 대한 강한 요구를 가지고 있었음.

경제적인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심층면담 6차, 1번 면담자)

□ 다자녀 가구 특성에 따라 지원이 확대되기를 희망하는 지원 정책들은 다음과 같음.

○ 맞벌이 다자녀 가구 :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과 돌봄 지원 정책에 대한 다자녀 가구 혜택 강화를 강하게 희망함

학교가 더 힘든데. 어린이집보다는 초등학교 들어가면 시간이 더 어중띄긴 하더라고. 저는 애기 출산을 하는 바람에 집에 있었는데. 챙겨야 하는 부분도 많고. 애 친구들도 보면 어린이집까지는 괜찮은데 초등 저학년에 관두는 부모님들이 많더라고요. 아니면 육아휴직을 하는 부분들이. 초등 1~2학년 때 신경을 많이 써야 해서. 돌봄도 좋기는 한데. 저희는 혜택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데 못 받는 사람들은 좀. (심층면담 6차, 3번 면담자)

아까 친구도 말했지만, 맞벌이해야 하는데 갓난아이를 낳아버리면 얘한테 매진해야 하니까. 그게 안 돼서 포기하는 거죠. 일단 돌봄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경제적 지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심층면담 6차, 1번 면담자)

- 예를 들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에 있어 다자녀 가구이면 점증적으로 혜택이 커지는 구조를 희망. 현행 아이 당 지원으로 동일하게 1년이 아니라, 첫째는 1년, 둘째는 1년 3개월 이런 식의 구조를 의미함.

근무시간. 유연 근무 혹은 단축 근무를 애들. 글쎄요. 취학…. 혼자서 왔다 갔다 할 나이까지는 해줘야죠. 근무. 저는 맞벌이다 보니까. (중략) 유연 근무를 하거나 혹은 육아기 단축 근무를 1년, 2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런 식으로 해줘야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심층면담 1차, 2번 면담자)

- 남성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다자녀 가구에서 남성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 대체액을 높여준다는 등의 대안에 대한 검토 요망.

이게(남성육아휴직을 의미함) 경제적인 걸로 연결되는 게 강제로 시켰어. 근데 월급을 낮게 받겠지. 이게 가정 경제에 타격을 주기 때문에 못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심층면담 6차, 1번 면담자)

○ 자녀가 4명이상의 다자녀 가구 : 3명이상의 다자녀 가구부터 요구가 크게 증가하나, 특히 4명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에 대한 지원을 강하게 희망함. 임대 주택 지원 뿐 아니라 금리 할인 등에 관한 높은 희망을 가지고 있음.

- 자녀가 많은 경우 보다 넓은 공간을 요하게 되며, 성별이 다른 4명의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방을 위해서라도 보다 넓은 평수의 주택을 필요로 하게 됨.
- 현행 주택 지원은 신혼 초기 혹은 다자녀 가구이더라도 자녀가 매우 어린 연령일 때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성을 띠고 있고, 지원 평수가 30평형 이상에 대한 지원이 제한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다자녀 가구에게 혜택으로 작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아이들이 방 가지고. 방이 세 개인데. 어차피 아이들이 둥글둥글해서 중학교 아이까지 다 거실에 나와서 자요. 그러면서도 방 타령을 하니까. 1인 1방을 달라고. 사실 아이들이 요즘에는 자기 개별의 공간이 있기도 하고. 저도 존중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 방을 없애고. 그리고 방 5개 집을 한다는 거는 안되니까. 누군가는 쉐어를 할 수밖에. (심층면담 2차, 4번 면담자)

새로운 고민인 게 저희는 세 자녀였잖아요. 방 세 개짜리는 괜찮아요. 신랑이랑 제일 고민하는 게 애들이 커가면서.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딸 둘 아들 하나니까 방 두 개씩 주면 되겠지만 나이 차이가 있잖아요. 방 네 개짜리로 가고 싶고 가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가장 현실적인 게 33평, 32평까지는 괜찮은데 갑자기 평수 넓혀서 가려면 세금 단위가 달라지잖아요.(후략) (심층면담 5차, 1번 면담자)

○ 초등 저학년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 보육서비스에 대한 강화 요구.

- 부모가 자녀를 동시에 돌보기 어려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제 보육, 아이돌보미 지원 등에 있어서 맞벌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다자녀 가구를 우선하여 지원해줬으면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문화 가정 등보다 점수가 낮은 것에 대한 불만이 높음)
- 어린이집 배치 등에 있어 영유아 자녀 수 등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손위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다자녀 가구를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 요구 등 동시에 여러 자녀를 돌볼 수 있는 보육시스템을 요구함.

제 돈을 내고 이모님을 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위에 애들 학교 갔다 오면 학원도. 애기를 그때마다 데리고 다닐 수 없어서 쓰는데. 그런 걸 국가에서 해주면 훨씬 좋죠. 이 아이들을 셋이 다 어린데 어디를 데리고 가려면. 만약 한 아이 병원 가려고 하는데. 한 애 아프면 셋을 다 데리고 가야 하는데. 집에서 누가 봐주면 훨씬 수월한데.(심층면담 1차, 1번 면담자)

초등 1~2학년 때 점심때 하원 하면, 돌봐주시는 할머니가 계시지만 그때부터는 할머니도 힘들 거란 말이에요. 어린이집은 거의 저녁때 오니까 괜찮은데. 그래서 돌봄 지원이 9살 그때까지는 많이 확대되면 좋을 것 같고. 그게 제일 기본이고 (후략) (심층면담 6차, 1번 면담자)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 나오면 좋을 것 같고.(중략) 돌봄이 확대돼서 경쟁률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 필요 없는 사람은 안 하면 되는 거고. 필요한 사람들은 다 받아서 해줬으면 좋겠어요.(심층면담 6차, 2번 면담자)

○ 고학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다자녀 가구 : 교육비 부담 경감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데, 경제적 부담 가중의 가장 큰 원인은 교육비에 있음.
- 현행 다자녀 가구 지원이 영유아기에 집중되는 것처럼 느껴지며, 교육비에 대한 지원은 매우 협소함. 사교육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지만, 전반적인 자녀 교육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원의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
- 예체능 과목에 대한 교육 바우처 등의 지원 등에서 다자녀 우선 지원, 비용 지원 등이 이뤄지면 좋을 것 같음.
- 학교 방과 후의 경우에도 학습과 관련된 방과 후는 효과성이 낮기 때문에 지원을 해줘도 고학년 자녀에게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친구들끼리 있을 때 어느 학원 얼마더라. “내 친구네 얼마짜리인데 보내줄 수 있어?”, “안 된다.”라고 하니 “그래?” 그러면은 하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방과 후반 말고 방과 후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품 팔아서 그나마 방과 후보다 나은 데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주는 거지 얘가 원하는 그거까지는 채워주지 못해요. (심층면담 5차, 1번 면담자)

□ 한편,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과 편의성 제고 등에 대한 요구가 높음.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도 애들 데리고 외식 거의 안 하거든요. 애들이 많으니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중략) 사람이 없는데도. 그런 것도 죄인 같은 그런 게 있어요. 사람들 많거나 조용한 데 갔을 때.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그런 데를 삼가서. (후략) (심층면담 5차, 1번 면담자)

4.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요구

□ 저출산 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낮은 평가를 보이지만, 제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긍정 응답과 부정 응답이 섞여서 나타남.

○ 지역사회 육아 인프라가 잘 되어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이러한 지원이 육아 부담 경감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는 긍정 응답이 높음.

자녀를 키우면서. 사교육을 하지 않아도 정보나 어떤 마을집단이나 어떤 공공기관 정책을 잘 파악해서, 교육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제공이 되었고 그런 거를 빨리빨리 catch할 수 있으면 학원이나 사교육에 의지하지 않아도. 기본적인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교육비 절감 효과는 볼 수 있겠다. 00에서 제일 좋은, 어떤 혜택을 자녀 혜택을 받았던 것 같고. (중략) 큰 애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 무조건 5~10분 내로 있고 도서관에 가면 놀 수 있는 곳도 있고. 복합커뮤니티라고 동마다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거기에 있는 거에 영화 상영도 있고. 책 있는 거 당연히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공동육아 나눔터라고 해서. 키즈카페 수준은 아니지만 언제든지 무료로 가서 놀 수 있는 거 있고. 장난감을 거의 안 샀어요. 둘째는 장난감을 연회비로 만 이천 원인가 내면 두 돌 세돌 때까지 주마다 바꿀 수가 있어요. 장난감을 안 사도 엄청 커다란 걸 가져오고. 질리면 또 바꿔오고 그게 최고 좋았던 것 같아요.심층면담 4차, 1번 면담자)

○ 대표적으로 자녀 수에 따라 점증 지원 방식을 가지고 있는 출산 축하금에 대해서는 다자녀 가구의 다수가 긍정적 응답을 보임.

- 다만, 출산 축하금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으로 인지하기보다는 저출산 지원 정책으로 인지하는 경향성을 보임.

저희 때는 출산 축하금. 첫째 때는 50만 원이었고 둘째 때는 100만 원이었고. 셋째 때는 200만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없어지기는 했는데. 이럴 때 체감할 수 있는 똑같이 100만 원 지급보다는 셋째를 힘겹게 내신 그 당시 어머니들에게는. 조리원도 맘 편히 갈 수 있고. 체감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차이가 가장 임팩트가 있는(후략). (심층면담 3차, 2번 면담자)

-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출산지원금과 같이 일시적 지원보다는 좀 더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지는 형태의 지원을 보다 희망하는 양상을 띰.

근데 이게 이거 그 때문에 보통 넷째를 낳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장 낳았다면 그 돈은 굉장히 도움이.(심층면담 6차, 1번 면담자)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출산율 제고 등의 목적이 아니라, 다자녀 가구의 육아 지원 혹은 부담 완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에 있기를 강하게 희망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대상 확대나 지원 강화가 출산율 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은 극히 드묾.

그 돈을 받는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데, 그걸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근본적으로 회사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맞벌이하니까 결혼을 안 하게 되고 결혼이 힘들어지지. 그게 주택 문제라든지 사교육비 문제라든지 부담스러워서 안 낳는 거잖아요. 근본을 해결해야지 (후략) (심층면담 6차, 1번 면담자)

□ 한편 다자녀 출산을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정책적인 부분에서 나라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인원수를 늘려주고 해야 하는데. 회사 사정도 있을 거고 그런 거 때문에 인원을 충족을 안 시켜주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걸 적극적으로. 그리고 저출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회사에서 눈치를 주니까. 아니면 계속 자기한테 해가 되는 일이 생기니까. 진급도 늦어지고 이런 부분적으로. 그런 게 생기니까. 사람들이 임신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 안하려고 하고. 정책적으로 무조건 시행하기에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지만, 회사에서는 암암리에 눈치를 주는 경우가 많아서 블라인드 해서. 그런 부분. 그런 게 좀 오픈되게 잘 돼야 하는데. (심층면담 5차, 2번 면담자)

초기에는 강제적으로 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신랑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이다 보니까. 이런 정책(유연근무 등 일가정양립 지원을 의미함) 같은 경우 시행은 빨리 돼요. (중략) 계속 이렇게는 쓰기 힘들겠다고 얘기를 한대요.(심층면담 5차, 1번 면담자)

5. 소결

□ 다자녀 가구 심층면담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Ⅴ-5-1〉 다자녀 가구 심층면담 내용 요약

구 분	내 용
다자녀 가구의 장점	- 원만한 사회관계의 형성, 혈연관계 가족의 필요성, 상호작용을 통한 돌봄 분담 등
다자녀 양육시 어려움	- 자녀 연령이 증가할수록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여가 문화 및 가족 활동 등에 있어 제약이 생김. - 자녀 돌봄 공백이 크게 발생하는 점, 경력단절 우려 -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을 하지 못한다는 불안감 등

구 분	내 용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체감	-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체감도는 매우 낮은 편 - 전국 공통 사업으로 공공요금 지원 사업 정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혜택 폭에 대해 만족도가 낮음. - 지역과 대상에 따라 출산지원금이 높은 지역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편에 속함.
지원대상 확대에 대한 의견	- 출산지원금 등이 일시금이거나 분할되더라도 영유아기에 밀집되어 있는 형태를 띄고 있으나, 경제적 부담은 자녀 연령이 높아질수록 가중되기 때문에, 지원 대상 연령의 확대를 희망 - 3자녀 이상 가구 뿐 아니라 2자녀 가구 혹은 유자녀 가구 전체에 대한 육아 지원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가구가 동의하나,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점증 지원이 이뤄지는 방식을 선호함. - 육아지원에 있어 맞벌이 가구나 다문화 가구에 비해 다자녀 가구가 후순위인 것에 불만이 높음(단, 저소득 가구에 대해서는 허용적임).
지원 확대 희망 육아지원정책	- 점증 방식의 경제적 지원 강화 - 맞벌이 다자녀 가구 혹은 초등 저학년 자녀가 많은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자녀 돌봄 우선 지원 - 4명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주택 지원 확대 - 지원 대상 자녀 연령 확대 및 교육비 부담 경감 요구
저출산 정책에 대한 의견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이 아닌 다자녀 가구의 삶의 질을 고려한 육아문화 개선 - 점증지원 형태의 출산지원금과 양질의 지역사회 육아 인프라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주: 자료는 만 나이(생활연령) 기준임.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자녀수 증가에 따른 점증적 비용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다자녀 가구에 친화적인 육아문화 조성을 포함하는 형태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 다자녀 가구들은 지원 대상의 기준 자체의 완화를 통한 보편적 육아 지원에는 동의하나, 자녀수에 따라 점증적 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강화되기를 희망하는 경향을 보임.

○ 일회적인 비용지원을 넘어선 장기적으로 돌봄 지원 및 교육 지원, 전반적인 육아문화의 개선 등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섬세하고 체감도 높은 정책의 설계가 요구됨.

□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연령의 전국 기준 통일 및 확대가 필요하며, 보다 장기에 걸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수립이 필요함.

VI

정책 제언

01 기본 방향

02 다자녀 아동수당(가칭) 지원

03 세제 지원 확대

04 지원 대상 연령 조정 필요 사업

05 지원 대상 기준 하향 조정 필요 사업

06 다자녀 가구 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07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다양화

08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09 다자녀 카드 전달체계 개선

10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및 법적 기반 마련

Ⅵ. 정책 제언

1. 기본 방향

□ 본 연구 내용을 통해 도출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음.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다자녀 가구 아동의 삶의 질 제고에 초점을 두어, 육아기 전반에 걸쳐 지원함.

○ 다자녀 가구 지원은 현행 지원 정책의 강화 및 제도 보완을 통해 전반적인 다자녀 가구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

○ 다자녀 가구 지원은 자녀수에 따른 점증 지원 방식으로 설계될 수 있도록 고려

○ 다자녀 가구 내에서도 가구 특성에 맞는 우선 지원 혹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육아가구의 양육비용은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총 양육비용 부담은 증가하나, 아동 당 투입비용이 점감하는 특징을 보임.

○ 이러한 사실은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 아니라, 심리적인 위축을 초래할 위험이 있음.

○ 저출산으로 인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하는 부양비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국가적으로 귀중한 인적 자원을 양육하는 가정에게 공공 측면에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아동의 생애 초기 동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는 양육비용 부담 가중의 양상을 고려한 제도 설계가 요구되며, 자녀수에 따른 점증적 지원 방식의 접목이 요구됨.

○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녀가 없는 가정이 노후에는 젊은 세대로부터 받게 되는 사회적 부양을 고려할 때 현재 다자녀 가구의 아동 각각이 누려야하는 지원에서 차이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 다자녀 가구 지원은 3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아동이 있는 가구의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지원이 확연히 증가하도록 설계.

○ 다만,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출산과 두 번째 후속 출산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여, 유자녀 가구 및 2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의 확장을 추가적으로 고려함.

□ 본고가 다자녀 가구의 육아 지원을 위해 제안하는 정책 대안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Ⅵ-1-1〉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방안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방식	특기사항
비용 지원	아동수당	지원 연령은 장기적으로 점차 상향조정	출생순위를 고려하여, 둘째아 이상 점증 지원	체감도 제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됨
세제 지원	자녀세액공제	-	자녀수 증가에 따른 공제 금액 확대	세제 지원은 연1회 실시되어 수혜주기가 길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편에 속함.
	자녀 교육비 공제	-	공제 상한을 자녀수에 따라 점증되도록 조정	
	자녀 장려금	소득기준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	지원 금액을 자녀수에 따라 점증 지원	
	자동차 관련 세금 면제	-	취등록세 감면이 아닌 자동차세 감면 등에 대한 고려 요함	
보육 및 교육 지원	어린이집 입소우선순위	지원 기준연령을 막내자녀의 연령으로 조정	-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기준연령을 막내자녀의 연령으로 조정	배정 우선권 부여	-
	국가장학금	-	4자녀이상 가구 소득기준 완화	-
	학자금 융자	3자녀→2자녀로 지원 강화	-	-
	교육비 지원	중고등학령기까지 확대	다자녀 가구 자녀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특기교육 참여 보장, 교재비 혹은 급식비, 입학금 지원 등 검토	-

구분		지원 대상	지원 방식	특기사항
문화 지원	문화시설 이용	지원 기준연령을 막내자녀의 연령으로 조정 3자녀→2자녀로 지원 고려	영유아 다자녀 동반 부모의 이용 요금 할인 등에 관한 검토 요함	이용편의서비스 지원 강화
	다자녀 카드 지원	막내자녀 기준 만 18세로 통일, 3자녀이상 지원 지자체는 2자녀이상으로 하향조정	-	전국 공통서비스 개발 및 전달체계 개선이 요구됨
생활 지원	공공요금감면	3자녀→2자녀로 지원 고려	가구원수에 따라 점증 지원, 3자녀이상 가구 지원 상한액 인상	-
	대중교통요금 할인	2자녀 가구부터 지원	할인상한액 자녀수에 따른 차등	이동편의서비스 지원 강화
주거 안정 지원	주택공급	-	자녀가 4명인 경우 추가 지원 (평수상한 조정, 우선공급 횟수 조정)	-
	금리우대/ 전세자금 보증	2자녀 가구부터 지원	-	-
일가정 양립 지원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활용가능 연령 상향조정(유자녀 가구 지원)	육아휴직급여를 자녀수에 따라 점증 지원	-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	자녀수에 따라 사용 상한 일을 연장	-

주 : -는 현행 제도에서의 특별한 수정을 요하지 않거나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를 의미함.

□ 다자녀 가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주요 정책 사업별 강화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은 2절 이하의 내용으로 제시함.

2. 다자녀 아동수당(가칭) 지원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점증 지원 방식의 지원은 주로 경제적 비용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비용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음.

○ 현재 실시되고 있는 대표적 비용지원사업 중에서 보육료 및 유아학비 지원금, 아동수당 등은 아동에 대한 보편 지원으로 점증 지원 방식을 채택하지

않음.

□ 현행 아동수당 지원 정책은 아동 단위 지원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속하지 않음.

○ 아동수당은 보육료 및 유아학비와 같은 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한 지원이 아닌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 정책으로, 비용의 사용처가 해당 지원 아동에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움.

○ (가정)양육수당도 현금성 지원이라는 점에서 아동수당과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가정)양육수당은 기관 미이용자에 대한 보상적(대체적) 성격의 지원금이라는 점에서 이를 아동수당과 동일하게 다룰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아동수당 정책은 직접적 현금성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과 접목될 경우 다자녀 가구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아동수당은 전국 단위 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출산지원금 등과는 달리 전국적으로 균질적 지원이 가능하다는 특장점이 있음.

□ 현행 아동수당 지원금에 자녀의 출생순위를 고려하여 점증되는 형태의 추가 지원을 실시할 수 있음.

○ 본고는 편의상 기존 아동수당 지원 체계와의 구분을 위해 다자녀 아동수당(가칭)이라고 지칭하고자 함.

○ 아동수당 지원 대상 아동의 출생 순위를 고려하여 아동수당 지원금이 점증되는 형태의 지원금은 현행 아동수당 지원 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금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임.

- 다자녀 아동수당(가칭)의 지원 대상은 가구 내 만7세미만 자녀로 아동수당 지원 대상과 동일하여, 다자녀 가구에 국한한 지원 대상 재설정 등이 필요하지 않아 정책 수행 과정 상 편의성이 높으면서도 실질적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자녀의 출생순위를 고려한 점증 지원 방식은 다수의 나라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방식임.

○ 독일의 경우 셋째아부터 아동수당 지원금이 증액되는 형태로, 둘째아 이하 204유로, 셋째아 210유로, 넷째아이상 235유로 지원.

○ 스웨덴은 자녀가 둘 이상인 부모에게 다자녀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

- 자녀 1명당 1,250크로나를 기본 지급하고, 자녀 2명 150크로나, 3명 730크로나, 4명 1,740크로나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지원액이 점증하는 지원 방식을 채택.

○ 일본의 경우에도 아동수당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만3세부터 초등학생까지 둘째아 이하는 10,000엔을 지원하고, 셋째아이상 15,000엔을 지원.

□ 이처럼 아동수당 지원에서 출생순위를 고려하여 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정책은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을 감안한 비용 지원을 위한 것임.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구당 양육비용 부담의 가중에도 불구하고 아동 당 양육비용 지출액(투자액)이 줄어드는 특징을 보임.

○ 이때 다자녀 가구 내 투자액의 감소는 손위 자녀가 아닌 출생순위가 후순위인 자녀에게서 더 크게 발생함. 이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양육비용이 커지는 현상 때문임.

○ 따라서, 출생순위가 후순위인 아동의 권리보호 및 평등한 출발선 보장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점증 지원 방식의 추가 지원이 요구됨.

□ 아동의 출생 순위를 고려한 아동수당 지원 체계(다자녀 아동수당 지원)는 [그림 Ⅵ-2-1]과 같음.

[그림 Ⅵ-2-1] 다자녀 아동수당(가칭) 지원 체계

예시 : 만 9세, 만 6세, 만 3세 3명의 자녀를 양육하는 육아 가구

현 행

아동별 지원

자녀 연령	아동수당
만9세 자녀	지원 없음
만6세 자녀	월 10만원
만3세 자녀	월 10만원

가구 당 지원 총액 :
월 2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원받음

변경(안)

아동별 지원

자녀 연령	아동수당		다자녀수당
만9세 자녀	지원 없음		지원 없음
만6세 자녀	월 10만원	+	둘째자녀 가산수당
만3세 자녀	월 10만원	+	셋째자녀 가산수당

가구 당 지원 총액 :
월 20만원의 아동수당 + 다자녀 아동수당(가칭)

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http://ihappy.or.kr/info/intro.php, (2020. 3. 20 인출).

□ 다만, 다자녀 아동수당의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즉 몇 번째 자녀부터 추가 지원 및 점증 지원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남.

○ 특히 추가 지원금의 수준은 육아가구 비용지원 체계 등에 관한 후속 연구에서 심도 깊게 다루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아동의 동등한 출발선 보장 및 다자녀 가구 정책 체감도 등을 고려할 때는 두자녀부터 추가 지원을 실시하되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르는 점증 지원 방식의 채택이 효과적일 것임.

- 현재 3자녀 이상 육아가구의 비중은 10% 내외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자녀 아동수당의 지원이 3자녀 이상부터 이뤄질 경우 정책 체감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 있음. 하지만 아동수당과 같은 비용 지원은 재원 소요 부담이 큰 정책인만큼 제도 입안 시 재정 효율성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다자녀 아동수당 추가 지원에 따르는 예산 추정액은 점증되는 지원액 인상분에 연도별 출생순위별 아동수를 곱하여 산출 가능.

○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는 〈표 Ⅱ-2-1〉에 제시되어 있는데, 2013년생(2020년 기준 만 7세미만)~2018년생 출생아 중 둘째아 이상 자녀는 1,137,592명임.

○ 한편, 현재 자료가 2018년까지 공표되어 있어 2019년생 이후 다자녀 비중을 알 수 없으므로, 가장 최신연도 자료인 2018년생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를 2019년과 2020년의 추정치로 사용하여 지원 대상아 수를 산출함.

- 엄밀한 의미에서 인구 추계 등을 통한 방식으로 산출하여야 하지만 이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남. 출생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2019년 출생순위별 출생아 추청치로 2018년 출생아 통계를 활용할 경우 실제보다 지원 대상을 과대 추정할 가능성이 있음.

〈표 Ⅵ-2-1〉 다자녀 아동수당 지원 대상아 수: 출생순위별 출생아 수

단위: 명

구분	둘째아 이상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이상
① = 2013년생~2018년생	1,137,592	903,442	205,212	28,938
② = ① + 2018년생	1,285,502	1,023,188	230,458	31,856
③ = ② + 2018년생	1,433,412	1,142,934	255,704	34,774

주: ②와 ③은 2019년생 이후 실측값을 알 수 없어 가장 최신연도인 2018년을 추정치로 사용한 것임.

자료: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19. 11. 14 인출).

3. 세제 지원 확대

□ 현재 육아 가구 대상 세제 지원은 자녀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자녀 장려금 제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으로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 지원 정책을 들 수 있음.

□ 먼저, 자녀 세액공제(기본공제, 출산·입양 공제)는 현재 지원 체계 자체가 다자녀 가구 차등이 적용되는 정책임.

○ 세제 지원 방식 자체가 제도 인지 및 체감도가 높지 않은 편이지만 기본공제 제도가 세제 지원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정책임(최효미 외, 2019: 76).

○ 다만, 자녀 세액공제의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금액에 대한 인지도 자체가 낮고(최효미 외, 2019: 76), 자녀 수 증가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이 크지 않아 이를 다자녀 가구 지원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세액 공제 제도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자녀 세액공제 제도에서 자녀수에 따른 세액 공제 폭을 크게 하여, 체감되는 수준으로 지원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해외 사례 중 프랑스의 경우 세대 단위 과세에서 가족 수가 많을수록 가족 분할계수가 상승하여 감세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는 지원 제도 등이 있음. 또한 싱가포르의 부모 세금 환급 제도의 경우 자녀당 세급 환급액이 점차 커지는 점증형 세액 구조를 보이고 있음.

□ 한편,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는 지출 금액에 대한 공제 형태이지만, 아동당 공제 상한(고등학생 이하 1명당 연 300만원[117])이 있어,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상한액이 높아지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

○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 등을 고려할 때 공제 상한을 자녀수에 따라 점증하는 형태의 제도 검토는 가능함.

○ 하지만,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의 확대를 통해 다자녀 가구의 정책에 대한 체감도 제고에는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자녀 장려금 지원은 기본적으로는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기보다는 저소득 육아 가구에 대한 지원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음.

117)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2777&efYd=20200101#0000 (2020. 4. 20 인출).

○ 부부합산 총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지원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음[118].

○ 자녀 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부양 자녀 당 50~70만원임.

○ 자녀 장려금 지원 제도에 있어 다자녀 가구 지원을 접목하는 방식은 크게 아래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으며, 두 가지 방식 모두를 동시에 적용하는 것도 가능함.

- 지원 요건과 관련하여 다자녀 가구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즉 소득 기준을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상해주는 방식
- 지원 금액을 부양 자녀당(아동당) 동일한 비용이 아닌 점증적으로 증액해 주는 형태로 조정하는 방안

○ 이는 동일 소득 가구라 하더라도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더욱 가중되어 있음을 고려한 제도 설계에 해당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정책으로 자동차 취등록세의 경우에도 감면이 이뤄지고 있는데, 차량과 관련된 지원은 구매 당시에 대한 일회적 지원이 아닌 보다 일상적인 지원으로의 변화를 고려해 봄직 함.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다인승 차량 혹은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경우가 많음.

○ 차량의 유지 관리를 위한 비용을 고려할 때 취등록세의 감면보다는 매년 납부하는 자동차세의 감면 등에 대한 전향적 고려가 요구됨.

- 자동차세의 경우 기본적으로 재산 가치를 환산하여 세금을 책정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재산 가치보다는 필요에 의한 재산의 취득에 가깝기 때문에 이에 해당 일정의 우대 세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만, 세제 지원액을 얼마까지 인상할 것인가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남.

○ 세제 지원은 체감도가 낮은 정책이므로, 세제 지원을 통해 다자녀 가구 지원이 확대되었다는 점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세액 공제 금액의 폭이 상당히 커야만 체감될 것임.

118)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제100조의 3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083&efYd=20200401#0000 (2020. 4. 20 인출).

〈표 Ⅵ-3-1〉 다자녀 가구 세제 지원 정책 조정(안)

구분	현행	변경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 출산 입양자녀공제)	- 20세이하 자녀 - 1명 연15만원, 2명 연30만원, 3명 연 60만원, 4명 연 90만원 - 3명이상 1명당 연 30만원 + 2인 초과 1명당 30만원 증액	- 2명 자녀부터 증액되도록 변경 - 2인 초과 1명당 점증하는 형태로 변경 - 예: 2명 연 35만원(1명 대비 +20만원), 3명 연 70만원(2명 대비 +35만원)
자녀 교육비 소득공제	- 고등학생 이하 자녀 - 교육비의 15%(1명당 연 300만원 상한)	- 자녀수에 따른 상한 조정 가능
자녀 장려금	- 저소득 가구 지원 - 지원 금액 또한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1명당 50~70만원)	- 가구소득 및 자녀수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이 차등 지원되도록 제도 변경 - 즉, 자녀수에 따라 지원 대상 소득 구간 차등, 지원 금액 점증 지원
자동차 취등록세	- 18세미만 3자녀 이상 - 자동차 1대에 취등록세 면제	- 취등록세가 아닌 자동차세 감면 등으로 변경 고려

자료: 1) 소득세법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
2)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제100조의 31(자녀장려금)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취득세 경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 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4. 지원 대상 연령 조정 필요 사업

□ 현행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은 정책 성격에 따라 지원 대상 연령이 상이함.

○ 지자체 사업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 연령이 더 천차만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통일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음.

○ 자녀 출산에 따른 양육책임은 최소 자녀가 성인이 되기까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다자녀 가구 지원은 다소 영유아기에 집중된 양상을 보임.

○ 우선적으로 전국 공통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 연령을 확대해나가면서 점차적으로 지자체 사업에도 자연스럽게 연령 기준이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 단, 지원 대상 연령 상향 조정이 필요한 사업이 많지 않은데다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은 일상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연령 상향 조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의 정책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연령의 상향 조정은 혼선을 줄여 편의성을 제고하는 측면에 방점을 둔 제안임.

□ 현행 전국 공통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연령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음.

○ 보육 및 돌봄 서비스의 경우 영유아 자녀 혹은 아동기(만 12세 이하) 연령까지 지원하는 것은 적합하지만, 해당 지원 연령을 막내자녀 연령 기준으로 조정하여 지원 대상자 확대 필요.

- 지원 대상 연령을 막내자녀 연령 기준으로 조정할 경우 어린이집 우선입소 순위는 영유아 자녀가 1명이라도 있으면서 자녀가 3명이상이면 가점이 부여받게 되며, 아이돌봄서비스는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만 12세 이하 자녀가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우선 제공받게 됨.

□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들 간 상호 돌봄이 가능한 경우가 많긴 하지만, 일상적 상황이 아닌 돌봄 상황에서 부모가 자녀 모두를 돌보기에 어려움이 있음.

○ 특정 자녀가 질병 혹은 사고 등을 겪는 경우, 학교 행사 등의 일정이 겹쳐져 운영되는 경우 등 부모가 동시에 여러 명의 자녀를 돌보기 힘든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자녀 가구 부모의 심리적 압박으로 인한 양육 효능감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큼.

□ 아이돌봄서비스 다자녀 가구 우선지원 및 지원수준 확대

○ 다자녀 가구의 경우 비단 영유아 자녀가 여러 명이 아니더라도 동시 돌봄의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을 수 있음.

○ 아이돌보미들은 돌보아야 하는 자녀수가 많은 다자녀 가구를 꺼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단가가 너무 높아 제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다자녀 가구에게 아이돌보미 배정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원금 또한 자녀수에 의해 가중되지 않도록 정부 지원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등 공공 돌봄서비스 우선권 부여 강화

○ 다자녀 가구의 경우 공공 돌봄 서비스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입소우선 순위 등 이용 우선권 배정에 있어 다른 돌봄 취약가구(예: 맞벌이 가구, 다문화 가구 등)에 비해 후순위 배정을 받게 된다는 불만이 많음.

○ 자녀수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영유아 자녀수 뿐 아니라 전체 자녀수를 고려한 제도 설계가 요구됨.

□ 한편,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이기도 한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경우 현행 제도사용 가능 연령이 만8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원 연령에 대한 상향 조정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최소 초등 3학년(만 9세)로 지원 대상 연령 상향 조정을 검토해봄 직하나, 이는 다자녀 가구 지원이라기보다는 유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속함.

□ 국립수목원 등 문화시설 이용의 경우에는 시설별로 연령 기준을 다르게 하는 것이 아닌 막내자녀 연령 만 18세 이하로 통일하여 시설 이용 시 혼선을 줄여 줄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대표적인 다자녀 가구 지원 사업인 다자녀 카드 지원 사업의 경우에도 현재 지자체별로 지원 대상이 연령이 모두 상이한 상황인데, 이를 막내자녀 연령 만 18세 이하로 통일하여 혼선을 줄이고,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표 Ⅵ-4-1〉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연령 조정(안)

구분		현행	조정(안)
보육 및 돌봄 서비스 지원	어린이집 우선입소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 막내자녀 연령 기준으로 조정 (지원 대상 연령에 속한 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 만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	
기타지원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막내가 12세 미만인 가족	- 막내자녀 연령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통일
	국립자연휴양림 이용대금 감면	- 만 19세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족	
지자체	다자녀 카드 지원 사업	- 지자체별로 상이	- 막내자녀 연령 만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통일

자료: 1) 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2017).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연구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중심으로. p.113~115.
2) 생활플러스,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http://life.korea.go.kr/content/contentView.do?tlsSeq=466&svcId=140000000002&menuCode=010000&menuCode2=010100 (2020. 3. 3 인출).
3)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1 (2020. 3. 3 인출).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2 (2020. 3. 3 인출).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인 육아지원, 특히 초등저학년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등에서 확장되어, 자녀의 성장기 전체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될 필요성이 있음.

○ 다자녀 가구의 손위자녀 등에 대한 정서 지원 프로그램 지원이 필요함.

○ 다자녀 가구의 장점은 자녀들 간 상호작용으로 인한 원만한 대인관계 형성 등이 꼽히지만, 반대로 다자녀 가구 자녀들은 본인의 희망만큼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소외를 경험하게 될 위험도 있음.

○ 다자녀 가구의 손위 자녀와 부모 쌍방이 소통 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 및 경우에 따라 손위자녀에 대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 특히 자녀가 사춘기에 접어들거나 하는 시기 등에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부모와 손위자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어린 자녀에 대한 돌봄 지원 등이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음.

□ 의료비 지원(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지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등은 지원 내용 자체가 지원 대상의 연령을 특정해버리는 사업으로 연령 조정 불필요.

○ 주거 안정 지원 정책, 세제 지원의 경우에는 대부분 미성년 자녀의 수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고, 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대학생 자녀까지를 포함하는 정책이 시행 중에 있어 별도의 연령 조정은 불필요.

○ 공공요금 할인은 가구 단위 지원 사업으로 자녀 연령에 대한 기준이 중요한 사안이 아님.

5. 지원 대상 기준 하향 조정 필요 사업

□ 현행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제도별로 지원 대상 아동 수가 다르며, 법상으로도 다자녀 가구의 통일된 기준은 없음.

○ 선행연구나 심층면담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란 현행 유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 자녀수에 따라 지원이 확장되는 양상을 띠는 경우와 자녀수가 복수(2명 이상)인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구분될 수 있음.

○ 통상 유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일 때부터 지원하는 정

책을 자녀가 한명 더 늘어날 때마다 점증 지원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 복수의 자녀가 있을 때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의 경우에는 자녀의 기준을 셋째아 이상으로 보는 경우가 다수임.

□ 자녀수에 따라 점증 지원의 방식으로 지원되는 정책의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유자녀 가구 지원을 기본으로 하되, 자녀수에 따른 지원 폭을 좀 더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

□ 점증 지원이 아닌 출생순위를 기준으로 다자녀 가구 지원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행 3자녀 이상 가구 지원에서 2자녀 이상 가구 지원으로 지원 대상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 다자녀 가구 지원의 정책 목표가 더 이상 출산율 제고를 위한 것은 아니지만, 만혼화 및 고령 출산 등으로 인해 첫째 자녀 출산 이후 후속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즉 유배우 가구의 출산율 저하)이 최근 초저출산의 가장 주된 원인 중 하나라 볼 수 있음.

○ 이러한 후속출산의 감소는 만혼화 및 고령 출산으로 인해 자녀의 성장기를 부모가 오롯이 책임지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바, 후속 출산으로 인한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안정감은 후속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둘째 자녀로의 후속 출산이 이어져야만 셋째자녀의 출산도 동반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전반적인 다자녀 가구 지원의 지원 대상으로 자녀 2명 이하로 하향 조정하여 지원을 크게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지원 대상이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이하 가구로 낮아질 경우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 범위가 크게 확장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됨.

○ 2018년 기준 출생순위가 둘째아 이상인 아동의 비중은 36.6%이며, 영유아 자녀 양육가구 중 자녀가 2명인 비중은 43.6%에 달함.

○ 기존 3자녀이상 가구의 비중이 1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점을 감안할 때, 다자녀 가구 자녀수 기준의 완화는 지원 대상자 범위를 크게 확장하게 될 것임.

□ 다자녀 가구 지원은 전반적으로 현행 3자녀 기준으로 되어 있는 자녀수 기준을 2명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확대하되,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점

증적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의 조정을 병행 실시.

○ 다만, 지원 대상자의 증가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예산 확보 추이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 확대 순서를 정하여 순차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2자녀부터 지원하게 되는 다자녀 가구 지원은 생활밀착형 지원을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이 다자녀 가구 지원정책의 확장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다소 완화하는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생활밀착형 지원은 가구당 지원 금액이 크지 않지만 일상적인 지원으로 실질적인 체감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주거 지원의 경우에는 오히려 자녀수가 4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 추가 지원을 강화하되, 금리 우대 등의 경우에는 2자녀 가구 지원으로 기준 완화를 검토.

○ 주택 공급의 경우 자산 취득과 연결되며 장기에 걸쳐 목돈이 소요되므로, 지원 대상의 대폭 확대는 재정 압박을 초래할 위험이 높음.

- 현행 한차례에 걸쳐 지원하는 주택공급 지원은 자녀수가 4명 이상인 경우에는 공간적 필요를 감안하여 보다 넓은 평수에 대해서 한차례 더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자녀가 3명 이하와 4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 주거 공간 활용이 큰 차이를 보임. 자녀들간 공동사용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4개 이상의 구분된 방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음. 자녀가 4명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3명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와 차별적인 주거 지원 정책 마련 필요.

○ 하지만, 금리우대 등의 혜택은 2자녀 가구부터 지원 대상이 되도록 기준을 완화하여,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

- 육아 가구들은 자녀 출산 후 주택구입 필요성을 크게 느끼며(최효미 외, 2018: 162), 이로 인한 경제적 부담 가중 및 심리적 압박을 느낌.

- 임대주택 등 지원의 경우 위치나 접근성 등에서 다자녀 가구가 거주를 희망하지 않는 지역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인하 등의 방법이 만족도 제고에 긍정적일 수 있음.

□ 교육비 지원의 경우에는 장학금 등 비용 자체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자녀수 증가에 따라 수혜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반면, 대출 및 융자 등 상환을 전제한 사업의 경우에는 2자녀 가구부터 지원하여 교육비 부담 완화에 기여

○ 국공립 대학의 입학금 지원이나 장학금 지원 기준에서 다자녀 가구의 아동에 대한 비율 할당 등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봄 직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확대는 다자녀 가구 지원 대상의 확대에 있어 가장 가시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다자녀 가구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정책 변화에 대한 체감도를 높여 선순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 공공요금 감면, 문화시설 이용 등의 정책과 학자금 융자 등에서 자녀수 기준 완화(3명 → 2명)를 적극적으로 검토.

○ 공공요금 감면은 지원 금액 인상 등에 대한 요구가 높긴 하나, 다자녀 가구 내에서 가장 제도 인지도가 높은 다자녀 가구 지원책이었음.

- 공공요금 감면을 2자녀 가구부터 전면 확대하게 되면,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이 크게 확장되었다는 인식 제고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임.

- 다만, 담당 공공기관과의 협의가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요구될 수 있음.

□ 대중교통비의 경우에도 일상적인 지원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제도 신설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정책 체감도와 만족도가 크게 증진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일부 지자체에서 해당 지자체 내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예: 대구 지하철[119])을 실시 중에 있음.

○ 2자녀이상 가구부터 지원을 하되 할인 상한액 등에서 자녀수에 따른 차등을 주는 방식으로 설계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아니지만 장애인 우대 정책 등에서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및 이용 편의 제공이 시행 중임. 다자녀 가구가 장애인만큼의 이용상 불편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영유아 자녀를 여러 명 동반한 경우 다자녀 가구 부모에 대해서도 이동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지원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짐.

○ 한편, 코레일은 현재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이용요금 할인을 실시하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이미 확대한 상태이며, SRT 등 3자녀이상 가구에

119) 연합뉴스(2019. 8. 26 기사), 대구시 다자녀 가정 도시철도 무료이용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6080100053?input=1195m (2020. 4. 22 인출) : 해당 지원은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제공되는 혜택임.

대해서만 지원하므로 기준 완화를 검토.

□ 기타 여가 및 문화생활과 관련된 지원의 경우에도 2자녀이상부터 지원되도록 제도 개선하되,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편의성 제고를 위한 추가 지원을 강화.

○ 예컨대 국공립 박물관 등 시설에 대해서는 2자녀이상 가구부터 아동 뿐 아니라 자녀 연령 등을 고려하여 동반 부모의 이용요금 할인 등을 실시.

○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족 모두가 해당 시설을 함께 이용해야 해서 이용비용의 부담이 가중되며, 이로 인해 문화생활 향유가 취약해질 위험이 있음.

○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용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혜택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예컨대 이동 편의를 위한 유모차 대여 및 단기 돌봄 서비스 제공 등.

〈표 Ⅵ-5-1〉 다자녀 가구 지원 자녀수 조정(안)

구분		현행	조정(안)
주거 안정 지원	주택특별공급	- 3명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 구성원	- 현행 유지하되, - 자녀수가 4명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국민임대 주택 우선공급	-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장기전세 주택 우선공급	- 미성년 3명 이상의 자녀(태아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소득/자산요건 충족 시	
	금리우대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2자녀 지원으로 확대
	전세자금보증 (특례)	- 미성년 자녀수 3명 이상	
세액 공제	기본공제	- 자녀 수에 따라 차등 - 3자녀부터 지원 증가	- 2자녀부터 점증 지원되도록 조정
교육비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의 가구원인 미혼대학생	- 4자녀이상 가구 소득기준 완화 - 다자녀가구 비율 할당 고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다자녀(3인 이상)가구는 소득구간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이용	- 2자녀 지원으로 확대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소득구간 관계없이 혜택	- 2자녀 지원으로 확대
공공 요금 할인	전기요금 감액	- 가구원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 2자녀 지원으로 확대하되, 가구원 수에 따라 점증 지원 - 3자녀 이상 가구 기준 지원 상한액 인상
	상하수도요금 할인	- 지자체별 각기 다르게 적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 지역사업본부별 각기 다름	

구분		현행	조정(안)
	에너지 복지요금 (난방비 감면)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명이상 또는 손(孫) 3명 이상으로 표시된 다자녀가구	
교통 관련 할인	기차요금 할인	- SRT 다자녀(3명 이상)가구	- 2자녀이상 가구로 확대
	대중교통 할인	- 지자체별 상이	- 3자녀이상 가구 대중교통(지하철, 시내버스)이용요금 할인 신설
기타 지원	문화시설이용	- 제도별 상이	- 2자녀부터 지원하되, - 할인비용 점증지원

자료: 1) 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2017).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연구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중심으로. p.54~57.
2) 복지로, 다자녀가구 특례 전세자금보증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 welInfSno=15276 (2020. 2. 13 인출).
3) 정부 24,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4586 (2020. 3. 3 인출).
4)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5)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6)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난방비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3 (2020. 3. 3 인출).

6. 다자녀 가구 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 강화

□ 자녀들이 점차 성장해감에 따라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점차 가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다자녀 가구의 부모들은 맞벌이 필요성을 더욱 크게 느끼게 됨.

○ 하지만, 통상 오랜 기간 경력단절을 경험한 모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님.

○ 다자녀 가구의 모가 노동시장에 재진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원활히 지원하는 일·가정 양립 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한편, 애초에 모의 노동시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며, 특히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 제도의 활용에 있어서도 점증 지원이 가능한 형태를 고려해 봄 직함.

○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자녀 가구의 육아 휴직 등을 통한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기는 함.

- 프랑스의 경우 육아휴직제도에서 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자녀교

육 분담 수당)과 모성휴가 기간 또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여함.

- 독일은 부모수당 지급에 있어 자녀수에 따라 점증적 차등 지원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스웨덴의 경우에도 아동 당 480일인 부모휴가급여 지급 기간을 쌍둥이의 경우 연장해주는 방식으로 지원함.
-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휴직, 휴가 등의 지원제도이라기보다는 일하는 어머니에 대해 감세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있는데, 감세 비율은 자녀수 수에 따라 소득 공제율이 점증하는 형태를 띰.

○ 하지만, 한국의 경우 현행 육아휴직 제도 내에서 자녀 출생순위에 따라 점증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사업주가 꺼려하여,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육아가구로 하여금 오히려 후속 출산을 기피하는 역효과를 불러올 위험이 높음.

- 육아휴직은 아동 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자녀수가 많은 경우 점증하는 형태의 기간 연장은 이뤄지지 않으나 육아휴직 기간 사용기간은 다자녀 가구가 길 수 있음.

○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과 같이 아동 당 기간으로 동일하게 하되, 육아휴직 급여를 다자녀 가구 여부에 따라 높여주는 방법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봄 직 함.

- 이는 육아휴직 기간 중 돌봄 자녀의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해당 가구의 소득대체율을 높여 양육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최근 남녀고용평등법에 명시된 가족돌봄 휴직과 휴가의 경우에는 자녀수를 고려하여 휴가일수를 연장해 주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임.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에 따르면,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임. 또한 가족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 또한 사용 가능(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3)[120].

○ 자녀수가 증가하면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의 최장 사용일수를 점증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안, 즉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최장 25일 사용 등으로 조정.

120)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287&efYd=20200101# (2020. 4. 22 인출).

〈표 Ⅵ-6-1〉 다자녀 가구 일가정 양립 지원

구분		현행	조정(안)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 아동당 1년 이내	- 현행 유지하되, 육아휴직급여를 자녀수에 따라 점증지원 (독일과 유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35시간 이내(1년 이내)	
가족돌봄 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 직계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필요시 - 휴직은 최장 90일, 휴가는 최장 10일	- 자녀수에 따라 사용 기간을 연장 (프랑스, 스웨덴과 유사)
	가족돌봄휴가 근로시간단축	- 직계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 필요시 - 단축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30시간 이내 (1년 이내, 3년까지 연장 가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0287&efYd=20200101# (2020. 4. 22 인출).

7.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다양화

□ 다자녀 가구 지원 중 다자녀 가구의 체감도가 높은 정책은 출산지원금 등 출산 전후시기 및 영유아기에 집중되어있는 양상을 보임.

○ 이는 영유아기 육아지원이 현금성 지원 정책이 많은 것에 기인하며, 이후 자녀의 연령 증가에 따라 비용지원이 줄어들고 서비스 지원이 증가하는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보임.

○ 문제는 자녀의 연령이 증가할수록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이며, 특히 자녀들의 교육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됨.

○ 즉, 자녀 양육을 위한 비용은 더 많이 소요되는데 정부의 비용지원은 점차 줄어들게 되기 때문에, 다자녀 가구 지원에 대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 자녀에 대한 교육 투자가 증가하는 시기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

○ 다만, 공교육은 이미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며, 교복 지원 등의 교육물품 지원도 다수의 지자체에서 시행되고 있음.

○ 다자녀 가구의 부모들이 교육비 부담이 커진다고 성토하는 것은 결국 사교육비로 인한 부담인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큼.

○ 하지만, 학교 방과후 학교 지원이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예능 수업 등) 등 사교육을 대체하는 교육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을 다자녀 가구에 대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다자녀 가구의 중고등학령기 자녀에 대한 교재비 지원 혹은 급식비 지원 등에 대해서도 전향적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임.

○ 일부 지자체가 다자녀 가구 자녀가 상급학교 진학시 입학금을 지원하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효과성 모니터링을 거쳐 전국적으로 제도 확장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봄 직 함.

8. 취약계층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 다자녀 가구 지원 중에서도 취약 가구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된 지원이 요구됨.

○ 다자녀 가구 지원과 함께 중복 강화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으로 저소득층, 한부모 가구, 조손가구 등을 들 수 있음.

□ 육아지원은 아동수당과 같이 보편 지원이 확대되고 있으나, 보편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 육아가구를 지원하는 지원 정책도 다양하게 수행 중에 있음.

○ 육아 가구 지원 정책 중 소득 수준에 따라 대상을 선별 지원하는 정책으로는 영양플러스, 조제분유지원, 공공주택공급, 전세자금 대출, 공공요금 감면, 출산비용 지원, 산모 신생아 의료비 지원,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 통신요금 감면, 세제 지원 중 자녀장려금 지원 등이 있음(최효미·장혜원·김태우 외, 2019: 116~117).

○ 현재 저소득 가구 육아지원 정책의 상당수가 다자녀 가구 지원과 중첩되는 상황으로, 다자녀 가구이면서 저소득 가구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 선별 기준에서 소득 구간을 상향 조정해주는 등으로의 지원 강화가 가능함.

- 또한 동일 소득 구간에 속한 저소득 가구라면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을 통해 양육부담 완화 및 사회적 형평성 제고에 기여.

□ 한편, 한부모 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에도 양육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과 더불어 다양한 육아 지원을 강화하여 지원.

○ 한부모 가구 중 저소득 가구의 비중이 높기도 하지만,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여러 명의 자녀를 양부모가 아니라 한부모가 양육해야하는 부담을 감안하여 한부모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은 중복 추가 지원이 필요함.

○ 프랑스의 다자녀 지원 정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부모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은 외벌이 양부모 가구에 비해 높게 책정됨.

- 선별 기준이 되는 연소득 구간이 한부모(혹은 맞벌이) 가구인 경우 외벌이 양부모 가구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지원 대상의 범위가 보다 넓음.

○ 앞서 제시된 다자녀 가구 지원에서 한부모 가구 중복 추가 지원은 예컨대 교육서비스 지원 및 돌봄서비스 지원 등에서 최우선 지원 및 지원 수준 확대, 공공요금 추가 할인, 의료비 지원 강화 등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음.

9. 다자녀 카드 전달체계 개선

□ 출산지원금 혹은 출산장려금은 지자체가 실시하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중 가장 대표적 사업에 해당함.

○ 지자체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역적 상황에 따라 출산지원금의 규모와 범위가 각기 다르게 운영 중인 경향을 보임.

○ 해당 사업은 지자체별로 실시되는 지자체 특화사업으로 전국 공통사업의 전환은 어려우며, 지방자치의 기본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음.

□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특화사업이 아닌 모든 광역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으로는 다자녀 카드 지원 정책을 꼽을 수 있음.

○ 다자녀 카드 사업 자체는 현행과 같이 지자체 사업으로 유지하도록 하되, 다자녀 가구의 법적 정의를 명료화하여 다자녀 카드 사업의 지원 대상을 전국적으로 균질화하는 것이 필요해보임.

- 현재 다자녀 카드 지원은 지자체별로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 간 지원 대상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인접한 지역으로 행정구역은 다르지만 동일 생활권에 해당함에도, 행정구역의 구분에 따라 지원 대상자 여부가 달라짐에 따라 다자녀 가구 사이에

서 혼란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음(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 현행 다자녀 카드 사업은 모든 지역이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운영 방식이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등이 모두 지자체별로 차이를 가짐(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 현행 다자녀 카드 지원 사업의 내용은 지원 내용 또한 지자체별로 편차가 크며,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화사업이라고 체감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많음(최효미·김아름·조숙인 외, 2017).
- 하지만, 만족도와 이용 빈도는 낮은 편이지만 현재 지원되는 다자녀 가구 혜택을 위해 대다수의 다자녀 가구가 다자녀 카드를 소지하고 있고, 제도에 대해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임.

○ 다자녀 가구들은 다자녀 카드가 전국 어디에서나 이용할 수 있고 별도의 인증 절차(주민등록증 함께 제시)를 거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함(최효미 외·김아름·조숙인, 2017).

- 이처럼 다자녀 카드의 이용 활용화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국 공통의 지원 대상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서비스 내용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사용 가능한 서비스가 크게 확장될 필요가 있음.
- 즉 다자녀 카드의 운영 등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해 운영하되, 지원 대상 기준 및 다자녀 카드와 매칭되는 전국 공통 지원 사업의 발굴 및 지원은 중앙부처에서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적극적 정책 홍보를 통한 정책 체감도 제고 및 법적 기반 마련

□ 행정자치부의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고 있으나, 이는 출생신고 당시 정책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이미 기 출산이 완료된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기 출산 가구가 원스톱서비스 및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인지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및 유관 공공기관(보건소 등)에서 지속적으로 우편 알림 등을 통한 정책 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 출산이 완료된 다자녀 가구의 경우 자녀가 학교 혹은 어린이집/유치원 등의 기관에 재원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기관을 통한 제도 홍보(리플릿) 제공에 대해 적극적 검토를 요함.

○ 영유아 자녀의 경우에는 보건소 등의 예방 접종 알림과 유사한 방식의 정보 제공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해 봄 직함.

○ 민간 기업인 중앙일보가 '우리동네 다자녀 가구 지원' 사이트를 개설하고, 이를 통해 지역별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을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으며, 폭발적 조회 수를 기록한 바 있음.

○ 정보의 신뢰성 및 공공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서비스가 민간 기업이 아닌 정부 주도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지자체의 예산 상황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이 한정되어 있는 등의 사유로 지자체가 해당 정책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꺼려하는 경우도 일부 발견됨.

○ 결국 다자녀 가구가 정책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부 지원이 선착순으로 종료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기도 함.

○ 예산의 제약으로 모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수 없는 한계는 십분 이해 하는 바이나, 제도 이용의 기회 자체가 정보 습득 정도에 따라 제약되는 것은 제도 활용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임.

○ 수혜 대상자가 최소한 정책 자체를 인지하고 신청 여부를 결정 할 수 있는 기회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보다 적극적인 제도 홍보가 요구되며, 이는 앞서 지자체 알림 사이트를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 혹은 지역사회 현수막, 지자체의 사업 알림 홍보 자료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정책 지원 대상자의 선정을 선착순이 아닌 모집 공고 후 추첨 등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다자녀 가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자체의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에 대한 홍보 및 정보 제공 범위가 확대되는 부가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이 외에 다자녀 가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제고 및 다자녀 가구 편의 시설의 확충이 요구됨.

○ 다자녀 가구들은 사회 전반에 4인 가족을 기본으로 하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특히 이동의 어려움과 여가생활 향유가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음.

○ 4인 가족까지 할인이 적용하고, 5인부터는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등의 문화 등의 개선이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캠페인 실시 등을 고려.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도 다자녀 가구의 법적 정의 및 다자녀 가구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구축이 미비한 바, 이와 관련된 제도 정비가 요구됨.

○ 현행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지자체별, 정책 사업별로 지원 대상이 모두 상이하여 제도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혼선을 야기함.

○ 다자녀 가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다자녀 가구 지원의 법적 기반 마련은 향후 보다 일관되고 형평성 있는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수행을 위한 선결과제임.

○ 또한, 다자녀 가구 지원을 위한 재원 소요 규모 등을 예측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 수행을 위해서는 다자녀 가구의 규모가 보다 면밀히 추계될 필요성이 있으며, 다자녀 가구의 법적 정의(지원 기준)이 명확해진다면 이에 준하는 통계자료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다자녀 가구 현황은 출생 순위를 기준으로 산출하기보다는 가구 현황을 기준으로 가구내 특정 연령 이하의 자녀 수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통계 자료 정비를 통해 보다 정확한 수요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통계청의 인구 동향 조사 혹은 인구주택총조사 등에서 가구 구성 상황을 연령별 자녀수 등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사 문항 추가 및 자료 구성 방식 변환을 통해 현황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문헌

강미나·박미선(2013). 싱가포르 주택정책과 자가소유 지원정책의 시사점. 국토정책 Brief, 1-8

강혜진(2009). 저출산 시대 여성의 다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고승연(2014). 출산율 부진의 배경과 시사점. 현대경제연구원 VIP 리포트, 14(6), 1-23.

교육부(2020. 1). 2020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2019. 5. 16). 임산부, 다자녀가족 등을 위한 SRT(수서발고속열차) 요금할인 실속 강화된다.

권영인·최지은(2015). 다자녀의 부모로 살아가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3(4), 83-104.

김경화·이주연(2012). 저출산 시대 여성의 다자녀 출산을 위한 발전방안. 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8(-), 7-19.

김나영(2018). 아동수당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발전 방안. 육아정책 Brief, 70, 1-4.

김미숙(2015). 자녀가치 국제비교. 보건·복지 Issue & Focus, 284(2015-16), 1-8.

김용미(2016). 다자녀 출산이 가족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자녀의 의미. 아동교육, 25(2), 47-64.

노대명·김대중·김영아·김은경·나병균·박찬용·박혜미·신윤정·심창학·이성애·봉인식(2018). 프랑스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대한민국정부(2015).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

문숙재·양정선·이성은(2007). 다자녀 가족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43-57.

박경자·전혜정·김은영·김지현·장수지(2008).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다자녀 우대 정책 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

박은정(2019). 독일 가족정책 현금급여 분석과 시사점.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9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07-221.

박천규·이영(2011). 다자녀가 주택소비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6(3), 121-131.

방은령(2014). 출산장려정책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셋 이상 자녀를 둔 부모를 중심으로. 놀이치료연구, 17(1), 53-74.

법제처·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2019. 6. 15). 다자녀가구.

보건복지부(2019).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보건복지부(2020). 2020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2019).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 - 결혼/임신/출산/육아.

서안리·정영숙(2009). 한 자녀 가정 아동과 다자녀 가정 아동의 사회성과 어머니 양육방식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3), 49-68.

손동기(2019). [외국정책사례] 출산에서 양육까지 아우르는 프랑스 출산 정책. 월간 공공정책, 163, 72-75.

신윤정(2014). 싱가포르의 'Marriage and Parenthood Package' 현황과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2014(5), 86-95.

신윤정(2017). 프랑스 가족수당의 현황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 2017(가을), 25-34.

신윤정·우해봉·윤자영·임지영(2018).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전략 연구 Ⅰ. 보건사회연구원.

안새롬·송원호(2014).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 전기요금 감액, 자동차 취·등록세 면제를 중심으로. 재정학연구, 7(4), 83-109.

양정선(2017). [외국정책사례] 한국의 저출산 특수성과 스웨덴의 가족 정책. 월간 공공정책, 143, 70-73.

여성가족부(2020). 2020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

염주희·정승은·주영선(2013). 다자녀 가정의 출산배경과 지원정책 욕구 분석에 관한 연구: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여. 보건사회연구, 33(1), 35-77.

유해미·박은정·김영미·김송이·김보미(2019). 성평등 관점의 영유아 돌봄정책의 진단과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이문숙(2016). 프랑스의 저출산 문제 해소 요인.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6(1), 558-567.

이병호·박민근(2017a). 다자녀 출산의 결정요인 연구: 출산장려금 정책의 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37(3), 318-342.

이병호·박민근(2017b). 다자녀가정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이슈&진단, -(298), 1-25.

이병호·최석현·민병길·이은환·김수연·최지혜·박민근·한승수(2017). 경기도 다자녀가구 실태와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경기연구원.

이성용(2009). 출산순위별 출산증가 요인 분석. 한국인구학, 32(1), 51-70.

이영경·연희정·김은주(2017). 다자녀 어머니들의 출산에 대한 인식 연구. 열린부모교육연구, 9(2), 47-70.

이윤수·이기영(2012).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는 가족복지실천과 서비스 방향: 다자녀 어머니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8(-), 139-167.

이현주·김근혜·송지원·신정완·주은선·최연혁·Jonas Edlund(2018). 스웨덴의 사회보장제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혜경(2011).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유아교육학논집, 15(6), 377-406.

장경희·유해미(2019). 일본의 육아지원정책.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18. 12).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2018. 12. 7). 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정은희·최유석(2013).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계획 및 출산과 관련된 요인. 보건사회연구, 33(1), 5-34.

정지선·여은정(2007). 출산장려를 위한 조세제도의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회계와정책연구, 12(3), 137-168.

전혜정(2009). 서울시 다자녀 가족 지원 제도에 관한 분석.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조성호(2016). 일본의 저출산 대응 정책과 시사점. 월간 공공정책, 124, 31-33.

최보람·문예영(2012). 출산장려세제의 실효성 검토와 개선방안: 다자녀 추가공제

를 중심으로. 세무와 회계저널, 13(4), 187-211.

최영진·전일주(2015). 일본 가족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아동수당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3(1), 20-30.

최효미(2017).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통한 다자녀 가구 지원 강화 방안. 육아정책포럼, 54호, 6~15

최효미·김아름·조숙인·윤지연(2017). 다자녀 가구 우대 강화 방안 연구 -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강은진·조미라·조숙인·김태우(2018).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최효미·장혜원·김태우·고영우(2019). 영유아 가구의 소비실태조사 및 양육비용 연구(II). 육아정책연구소.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2016. 12. 25). LH, 신혼부부-다자녀-다문화가족를 위한 임대주택 지원대책 시행.

홍희정(2019). 스웨덴의 일·생활 균형 정책과 시사점, 국제사회보장리뷰(여름호) 9, 109~121.

Andersson, G. (2008). Family policies and fertility in Sweden. In: *CESifo Conference on Fertility and Public Policy: How to Reverse the Trend of Declining Birth Rates,* Munich, Germany.

Andersson, G., & Kolk, M. (2015). Trends in childbearing, marriage and divorce in Sweden: An update with data up to 2012. *Finnish Yearbook of Population Research,* 50, 21-30.

BMFSFJ(2006). Familie zwischen Flexibilität und Verlässlichkeit: Perspektiven für eine lebenslaufbezogene Familienpolitik. Siebter Familienbericht, Baden-Baden: BMFSFJ.

BMFSFJ(2013). *Mehrkindfamilien in Deutschland.*

BMFSFJ(2019). *Elterngeld, ElterngeldPlus und Elternzeit.*

Böhmer, M., Matuschke, M., & Zweers, U. (2008). *Kindergeld in Deutschland-Familien wirksam fördern,* BMFSFJ.

Familienkasse(2020a). *Merkblatt Kindergeld,*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Familienkasse(2020b). *Merkblatt Kinderzuschlag.* Bundeszentralamt für

Steuern.

Gerlach, I. (2008). Familienpolitik: Geschichte und Leitbilder. In: *Informationen zur politischen Bildung*. Nr. 301, 36-53.

Jones, G. (2012).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in Singapore: The limits of policy.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10*(1), 89-101.

Köppen, K., Mazuy, M., & Toulemon, L. (2017). Childlessness in France. In: *Childlessness in Europe: Contexts, causes, and consequences.* Springer, Cham. 77-95.

Rainer, H., Bauernschuster, S., Danzer, N., Hener, T., Holzner, C., & Reinkowski, J. (2012). *Kindergeld,* ifo Forschungsberichte.

【온라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lsInfoP. do?lsiSeq=210287&efYd=20200101# (2020. 4. 22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http://www.law.go. kr/lsInfoP.do?lsiSeq=212777&efYd=20200101#0000 (2020. 4. 20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 27~제100조의 31,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13083&efYd=20200401#0000 (2020. 4. 20 인출).

국립수목원 홈페이지, http://www.forest.go.kr/newkfsweb/html/HtmlPage.do?pg=/rest/rest_0102.html&mn=KFS_15_01_03_01&orgId=kna, (2020. 3. 12 인출).

독일 교육시스템 안내 사이트, https://www.bildungsserver.de/UEber-uns-480-de.html (2020. 2. 19 인출).

독일 연방 정책교육센터 홈페이지, https://www.bpb.de/nachschlagen/zahlen-und-fakten/soziale-situation-in-deutschland/61550/geburten#:~:text=Im%20Jahr%202018%20lag%20die,60%20%E2%80%93%20jeweils%20ohne%20Berlin).&text=Zwischen%202011%20und%202018%20erh%C3%B6hte,2016%3A%202%2C28). (2020. 5. 20. 인출)

독일 통계청 홈페이지, https://www.destatis.de/DE/Themen/Gesellschaft-Umwelt/Bevoelkerung/Geburten/_inhalt.html (2019. 11. 14 인출).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http://ihappy. or.kr/info/intro.php (2020. 3. 20 인출).

복지로, 다자녀가구 특례 전세자금보증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5276 (2020. 2. 13 인출).

복지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041&welInfSno=327&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20. 2. 20 인출).

복지로,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searchIntClId=01&searchCtgId=041&welInfSno=237&pageGb=1&domainName=&firstIndex=0&recordCountPerPage=10&cardListTypeCd=list&welSrvTypeCd=01&searchGb=01&searchWelInfNm=&pageUnit=10&key1=list&stsfCn= (2020. 2. 20 인출).

복지로,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50 (2020. 2. 13 인출).

생활플러스, 국가유공자 등의 국립수목원 관람료 할인 http://life.korea.go.kr/content/contentView.do?tlsSeq=466&svcId=140000000002&menuCode=010000&menuCode2=010100 (2020. 3. 3 인출).

스웨덴 보험기금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privatpers/foralder/nar_barnet_ar_fott/barnbidrag (2020. 1. 21.인출).

스웨덴 보험기금 홈페이지, https://www.forsakringskassan.se/!ut/p/z0/XckxDsIwDEDRszB4ThAbW4W4ACxVl8gFt1htbcsx4fp0YWH7Xy8NqU-DYOMZg1Vw3b__PLazYbzgeOogX1SCJO7XcqNqKpUbQTbnhmHkFfKkjuuTHLKglxFdKMpek0b81NFIhGWG7O_ReSm6lT9KtnSHL3leftE!/ (2020. 1. 21 인출).

싱가포르 사회·가족발전부 홈페이지, https://www.msf.gov.sg/policies/Strong-and-Stable-Families/Supporting-Families/Pages/Baby-Bonus-Scheme.aspx (2020. 2. 20 인출).

싱가포르 가족지원 정보 사이트 heybaby, https://www.heybaby.sg/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m-p-infographic_final_march-20199cb6909ef0cf473b9d92869ec0421ba4.pdf (2020. 1. 29 인출).

연합뉴스(2019. 8. 26 기사). 대구시 다자녀 가정 도시철도 무료이용,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6080100053?input=1195m (2020. 4. 22 인출)

연합뉴스(2019. 1. 24기사). 코레일, 다자녀 가족·임산부 등 KTX 운임 할인 확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98612 (2020. 4. 9 인출).

연합뉴스(2019. 8. 15기사). 코레일 '공공 할인'확대로 상반기 52만명 혜택…60% 늘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1001789 (2020. 4. 9 인출).

이데일리(2020. 3. 25기사). 서형수 "2~3자녀에 대한 지원 보강…차등 지원 필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4604838, (2020. 3. 25 인출).

인천국제공항, 주차 요금, https://www.airport.kr/ap_lp/ko/tpt/parinf/parfeeinf/parfeeinf.do, (2020. 3. 23 인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홈페이지, www.betterfuture.go.kr, (2020. 3. 17 인출).

정부 24, 국민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증 장애인 및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경기 시흥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5789, (2020. 3. 12 인출).

정부 24,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5톤 감면(경기 오산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00000000071, (2020. 3. 12 인출).

정부 24,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경기 부천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386000000184, (2020. 3. 12 인출).

정부 24,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원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4586 (2020. 3. 3 인출).

정부 24,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충남 천안시),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SD0000007463 (2020. 3. 12 인출).

정부24, 다자녀아이사랑카드 발급 서비스 제공,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569000000211, (2020. 3. 12 인출)

정부 24, 저소득층 및 장애인 상수도 요금 감면(강원 정선군),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429000000001, (2020. 3. 12 인출).

정부 24,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제공, https://www.gov.kr/portal/service/ serviceInfo/174000000029, (2020. 3. 23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란?,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난방비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3 (2020. 3. 3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도시가스 요금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2, (2020. 3. 12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아이돌봄 서비스 우선제공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2 (2020. 3. 3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어린이집 이용시 혜택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1&cnpClsNo=1 (2020. 3. 3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수목원 등 이용료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3, (2020. 3. 12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전기료 감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철도운임 할인,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5&cciNo=2&cnpClsNo=2, (2020. 3. 12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다자녀가구 학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4&cciNo=2&cnpClsNo=2 (2020. 3. 3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3&cnpClsNo=2, (2020. 3. 12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녀세액공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2&cnpClsNo=1, (2020. 3. 12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취득세 경감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6&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구입자금 대출,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3&cnpClsNo=1, (2020. 3. 12 인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특별공급 제도안내,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6&ccfNo=3&cciNo=1&cnpClsNo=1, (2020. 3. 12 인출).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la-prime-a-la-naissance-et-adoption-caf (2020. 1. 30 인출).

프랑스 aide-sociale 홈페이지, https://www.aide-sociale.fr/montant-allocation-familiale (2020. 1. 30 인출)

프랑스 가족수당지원국 홈페이지, http://www.caf.fr/allocataires/droits-et-prestations/s-informer-sur-les-aides/petite-enfance/l-allocation-de-base (2020. 2. 10 인출).

프랑스 가족수당지원국 홈페이지, http://www.caf.fr/allocataires/vies-de-famille/futur-parent/grossesse/le-conge-maternite-au-secours-des-mamans (2020. 2. 20 인출)

프랑스 건강보험 관련 사이트, https://www.ameli.fr/assure/remboursements/indemnites-journalieres/conge-maternite (2020. 2. 20 인출).

프랑스 사회보장 정보 웹사이트, https://www.previssima.fr/dossier/quelle-remuneration-pour-un-conge-parental.html#prepare-pour-un-conge-parental-combien-gagne-t-on (2020. 2. 11 인출).

한겨레(2019. 5. 8기사). SRT, 임산부·다자녀 등 30% 할인 열차편 확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8&aid=0002452988 (2020. 4. 9 인출).

한국공항공사, 보도자료, 한국공항공사 다자녀가구 주차요금 자동감면 시스템 도입, https://www.airport.co.kr/www/bbs/boardView.do?id=41&menuId=352&bIdx=3551441&page=1, (2020. 3. 23 인출).

KFW(2019). Baukindergeld. https://www.kfw.de/PDF/Download-Center/F%C3%B6rderprogramme-(Inlandsf%C3%B6rderung)/PDF-Dokumente/6000004381_M_424_Baukindergeld.pdf (2020. 3. 5 인출).

NSP통신(2018. 8. 22기사). 평택시,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http://www.nspna.com/news/?mode=view&newsid=301491, (2020. 3. 12 인출).

SRT 홈페이지, 할인제도. https://etk.srail.co.kr/cms/archive.do?pageId=TK0401010000 (2020. 4. 9 인출).

【통계 자료】

싱가포르 통계청 Database, https://www.tablebuilder.singstat.gov.sg/publicfacing/createDataTable.action?refId=13273 (2020. 2. 20 인출).

싱가포르 통계청 https://www.singstat.gov.sg/-/media/files/publications/population/ssnsep17-pg1-4.pdf (2020. 2. 20 인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부자료(2019).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2020. 1. 14. 인출).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출산순위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

csList/statisticsListIndex.do ?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 1. 14. 인출).

통계청 KOSIS, 인구동향조사, 성/모의 연령(각세)/출산순위별 출생,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 ListIndex. 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 1. 14 인출).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영유아 자녀 양육 가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 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 2. 3 인출).

통계청 KOSIS, 인구총조사, 세대구성 및 가구원수별 가구,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 ListIndex.do?menuId=M_01_01&vwcd=MT_ZTITLE&p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2020. 2. 3 인출).

OECD Family Database,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0. 1. 28 인출).

UN data, http://data.un.org/Data.aspx?d=POP&f=tableCode%3A58 (2020. 3. 5 인출).

【관련 규정 및 지침】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표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목록

다자녀 기준 완화 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 연구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Presidential Committee
on Ageing Society and Population Policy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